✤ 본 매뉴얼 발간 이후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업무 시 반드시 관련 규정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참고용으로 편집·작성된 것이므로 계약담당자는 발주 건별 개별상황, 관련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게 판단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본 매뉴얼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의 업무처리절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타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의 전자 파일은 「서울계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유권해석 및 감사 지적사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www.lo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서울특별시

들어가며

지방계약분야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며, 많은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들이 있어 실무자들이 업무를 숙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계약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약자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유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분야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실무자들의 사회책임 공공조달에 대한 가치 함양과 동시에 업무의 전문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 매뉴얼에는 그간의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역제한입찰 금액 변경, 지방계약 특례 반영, 수의계약 관련 제도 추가 및 보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 제도 신설, 손배보증서 대상 추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자 및 사전절차 유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최신 유권해석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이 서울시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6. 5.

서울특별시 재무국

목 차

※ 계약 진행 절차도 ····· 1

※ 사업 발주 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 2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지방계약이란

1. 지방계약 일반 ····· 4
2. 지방계약의 특성 ····· 5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1. 지방계약법령 관련 주요 행정안전부 예규 ····· 7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 8

제3절 계약의 분류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 9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 14
3. 경쟁 형태별 분류 ····· 26
4. 조달계약 ····· 48
5. 국제입찰 ····· 50

제4절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제도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52
2.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 53

제5절 기간·소수점 계산방법

1.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 55
2. 소수점 처리방법 ····· 59

제2장 발주준비 단계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1. 계약심의위원회 ····· 62
2. 계약법률심사 ····· 64
3.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 65
4. 일상감사 제도 ····· 68
5. 녹색제품 구매 심사 ····· 69
6.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 70
7. 학술용역심의 ····· 71
8. 정보화심의 ····· 72
9.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81
10. 건설기술심의제도 ····· 85
11.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87
1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88

제2절 분리발주 제도

1. 공사 ····· 90
2. 용역·물품 ····· 91
3.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93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 94

제4절 직접생산 확인 제도 ····· 95

제5절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1. 사전규격 공개 ····· 96
2. 발주계획 등록 ····· 97

제6절 공법선정위원회 ····· 98

제7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 100

제8절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제도 등

1. 대행계약 제도 ····· 102

2. 재정합의 제도 ····· 102
3. 직무위임 제도 ····· 103
4.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 104
※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 105
제9절 계약 맞춤형 매뉴얼
1.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 106
2.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 111
3. 적격심사 매뉴얼 ····· 115
4. 협상에 의한 계약 매뉴얼 ····· 120
5. 선금 지급 매뉴얼 ····· 127
6. 변경계약 매뉴얼 ····· 130
7. 검사 및 대가지급 매뉴얼 ····· 133
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매뉴얼 ····· 136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 140
2. 계약목적물·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 141
제2절 적격심사
1. 제도 개요 ····· 142
2. 공사 적격심사 ····· 146
3. 용역 적격심사 ····· 161
3-1 일반용역 적격심사 ····· 162
3-2 기술용역 적격심사 ····· 181
3-3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 195
4. 물품 적격심사 ····· 203
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 ····· 215
제4절 수의계약
1. 제도 개요 ····· 227

2. 1인견적 수의계약 ····· 231
3.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232
제5절 2단계 입찰 ····· 235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제1절 계약의 체결 ····· 240
제2절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1. 보증서 ····· 243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 248

제5장 계약진행 단계

제1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1. 사업의 관리·감독 ····· 252
2. 근로자 권리보호 ····· 253
제2절 주민참여감독제 ····· 256
제3절 하도급 관련 제도
1. 하도급 제도 ····· 261
2. 공사의 하도급 제도 ····· 262
3. 용역의 하도급 제도 ····· 266
제4절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경 ····· 269
2. 공사의 설계변경 ····· 271
3. 계약금액의 변경 ····· 273
제5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선금 지급 ····· 274
2. 검사 및 대가지급 ····· 278
제6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 285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 287
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 289

4. 노임 압류 금지 제도 ····· 292
5.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 293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제1절 계약정보 공개

1. 계약정보 공개 ····· 296
2.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 297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활용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 298
2. 준공도면 전산화 ····· 299

제3절 하자담보 제도

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 300
2. 하자보수보증금 ····· 302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1. 계약의 이행지체 ····· 304
2. 계약의 해제·해지 ····· 306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308
2. 과징금 부과 ····· 310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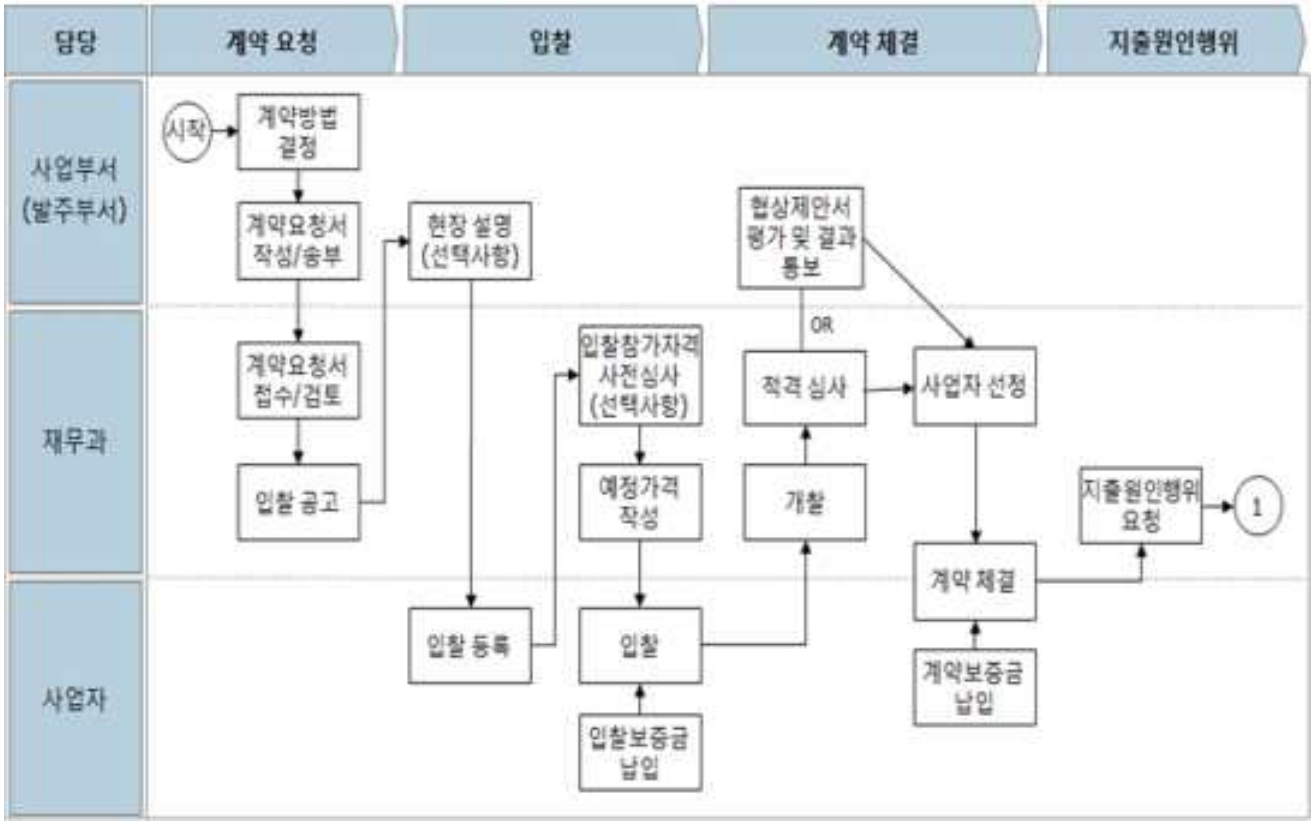
제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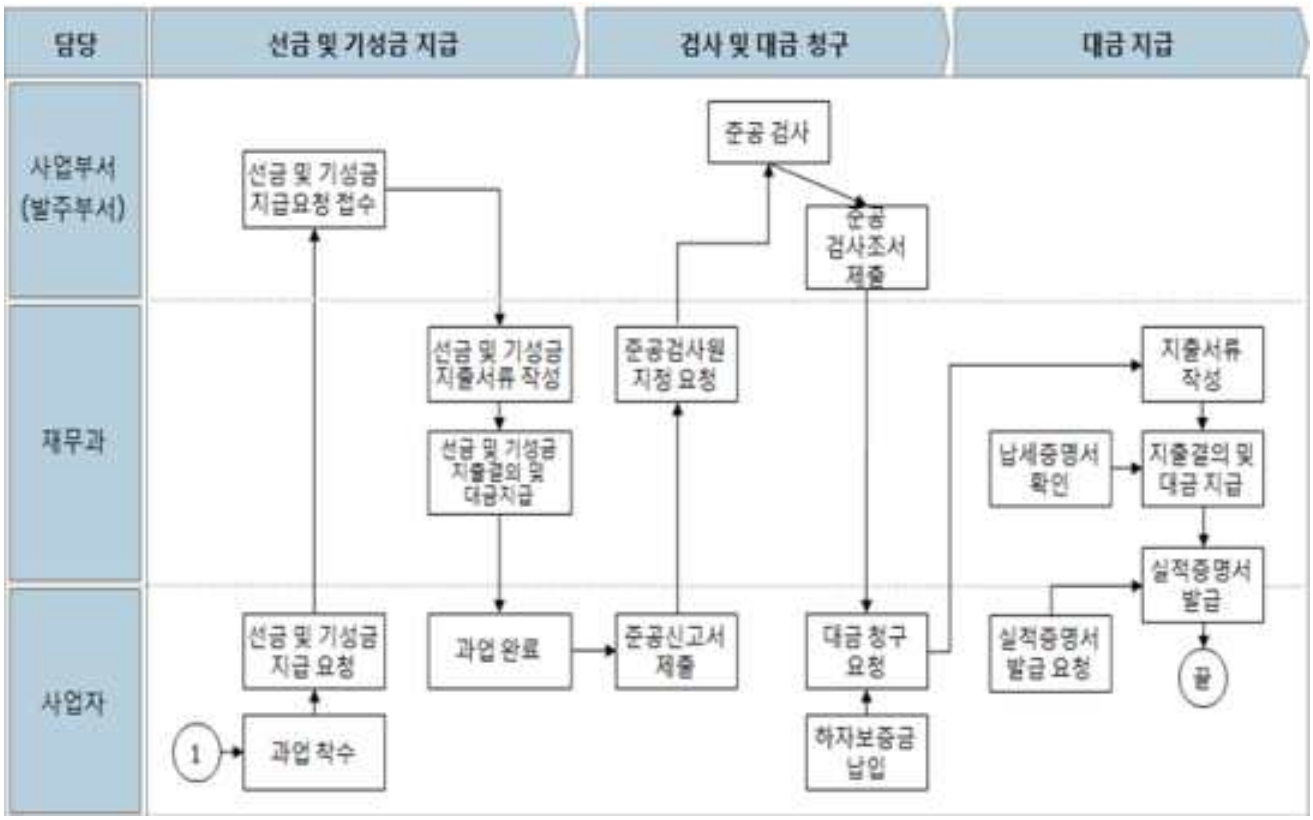
제1절 유권해석 ····· 314
제2절 감사지적사례 ····· 373
제3절 자주하는 계약 질문 ····· 388

부 록 편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 397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 399

계약 진행 절차도


담당
계약 요청
입찰
계약 체결
지출원인행위
사업부서 (발주부서)
재무과
사업자
시작
계약방법 결정
계약요청서 작성/송부
현장 설명 (선택사항)
협상제안서 평가 및 결과 통보
OR
계약요청서 접수/검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선택사항)
적격 심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예정가격 작성
개찰
지출원인행위 요청
1
계약 체결
입찰 등록
입찰
계약보증금 납입
입찰보증금 납입


담당
선금 및 기성금 지급
검사 및 대금 청구
대금 지급
사업부서 (발주부서)
재무과
사업자
준공 검사
선금 및 기성금 지급요청 접수
준공 검사조서 제출
선금 및 기성금 지출서류 작성
준공검사원 지정 요청
지출서류 작성
납세증명서 확인
선금 및 기성금 지출결의 및 대금지급
지출결의 및 대금 지급
실적증명서 발급
선금 및 기성금 지급 요청
과업 완료
준공신고서 제출
대금 청구 요청
실적증명서 발급 요청
끝
1
과업 착수
하자보증금 납입

사업 발주 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1. 사업을 발주하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Tip] 계약의 종류와 성격, 소요예산 등에 따라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름

① 계약목적물별 분류상 어떤 계약인지? (예 : 공사, 용역, 물품)

②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 (예 : 용역이라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등)

③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2. 경쟁형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Tip] 계약의 종류와 성격, 소요예산 등에 따라 **경쟁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① 입찰에 부친다면, 일반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지명입찰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②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3. 낙찰자 결정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Tip] 계약의 종류와 성격, 소요예산 등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종합평가 낙찰제 등 어떤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인지?

제1장 계약총론

순 서

제1절 지방계약이란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제3절 계약의 분류

제4절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제도

제5절 기간·소수점 계산 방법

제1절 지방계약이란

1. 지방계약 일반

1) 개념

- 지방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된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지방계약법 적용(준용) 기관

구 분		세부 적용기관	비 고
직접 적용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청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	
준용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준용
	출자·출연기관	재단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용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명확한 적용범위에 대해 확인 필요

2. 지방계약의 특성

1) 지방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려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결됨
-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됨

2) 지방계약의 주요 특성

(1) 민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법규

- 「지방계약법」 제6조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계약당사자가 서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임
- 따라서, 민법상의 계약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적용되고, 낙찰자결정 등 분쟁 발생 시에도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함
- 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에 의해 해결함

구 분	내 용
민사소송 대상	입찰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및 계약절차(대금지급, 계약해제 등)와 관련한 행위는 사법상 행위
행정소송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 대상

(2) 훈시적 성격의 법규

- 지방계약법은 기관 및 계약담당자에 대한 훈시적 성격으로서 동법에 위반되더라도 원인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 효력에 영향 미칠 수 없음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담당자가 계약조건 등에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3) 절차법적 성격의 법규

- 지방계약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보다 대부분 절차(입찰공고, 입찰 집행, 계약체결 등)를 규정한 것으로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함

(4) 다양한 하위규정을 갖는 법규

- 지방계약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많은 하부 규정을 두고 있음(회계예규, 고시, 계약일반조건 등)

3) 민간계약과 공공계약 비교

구 분	민간계약	공공계약
계약의 원칙	효율성, 경제성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자금의 원천	사적자금의 집행으로 자율적, 신축적 운영가능	세금, 공적자금 등의 국민 부담금이므로 철저한 법준수 필수
계약수익 대상	개인이나 기업에 국한	불특정 다수 국민
시 장 영 향	미미하거나 미치지 않음	신규수요 창출,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
위 험 부 담	개별주체에 미침	불특정 국민에게 미침

《 **판례 체크** 》

〈지방계약법의 법적 성격〉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 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

〈지방계약법의 기본원칙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를 피고시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구 예산회계법과 그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인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4.28. 선고 97다51223 판결)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1. 지방계약법령 관련 주요 행정안전부 예규

연번	예규명칭	구 성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3	고시 등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구 분	종 류	소관부처
기 본 법	**계약결정방법, 입찰 및 계약절차, 계약관련 보증금, 검사, 대가지급 등**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 정 안 전 부
개 별 법	**계약이행 자격, 하도급, 영업정지, 원가계산요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 자연재해대책법	행 정 안 전 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사법 ◦ 건축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 토 교 통 부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환경영향평가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중위생관리법 ◦ 장애인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복지법	보 건 복 지 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 업 통 상 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고용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 용 노 동 부
	◦ 인지세법 ◦ 부가가치세법	재 정 경 제 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 방 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조 달 청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 가 유 산 청 문화체육관광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재 정 경 제 부

※「지방계약법」제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법령)을 우선 따르고, 그 외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제3절 계약의 분류

구 분		내 용	
계약목적물별		공사	건설공사(종합·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환경관련공사 등
		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
		물품	제조·구매
계약체결 형 태 별	계약금액형태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입찰금액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계약기간·예산편성형태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단년도차수계약	
	계약상대자	단독계약, 공동계약	
	기타	회계연도개시전계약, 종합계약 등	
경쟁형태별		경쟁입찰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낙찰자결정방법별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종합평가 낙찰제, 희망수량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유사물품복수입찰, 설계공모 등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1) 공사계약 종류

(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개 념	종 류
종합 (5)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전문 (1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실내건축공사업,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④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⑥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⑦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⑧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⑨철도·궤도공사업, ⑩철강구조물공사업, ⑪수중·준설공사업, ⑫승강기·삭도공사업, ⑬기계설비·가스공사업, ⑭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2)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공사

(4)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공사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영업의 범위가 구분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모든 소방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

구 분	내 용
기계분야	총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	총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6) 환경관련공사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

(7) 기타 산지복구공사, 지하수개발공사 등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2) 용역계약 종류

(1)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조사, 관리 등 기술과 관련되는 용역

(2) 학술용역

-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분류 예시 >

① 인 문 학 : 역사, 철학, 종교, 언어, 문학, 기타 인문학
② 사회과학 : 정치, 외교, 경제, 경영, 무역, 사회, 사회복지, 지역, 인류, 교육, 법, 행정, 지리, 지역개발, 관광, 신문방송, 군사, 심리, 기타 사회학
③ 자연과학 : 수학, 통계, 물리, 천문, 화학, 생물, 지질, 대기, 해양, 생활,
④ 공 학 :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고분자, 생물, 제어계측, 전기, 재료, 환경,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토목, 건축, 산업, 원자력, 조선, 해양, 섬유, 자원, 금속, 교통, 의료, 농업, 산림
⑤ 의 약 학 : 해부, 생리, 생화학, 병리, 약리, 미생물, 기생충, 예방, 직업환경, 면역,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학, 산부인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임상, 이비인후과, 피부, 비뇨기, 방사선, 마취,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 신경, 임상병리, 가정의, 응급의, 치의, 수의, 간호, 한의, 약학
⑥ 농수해양 : 농학, 임학, 조경, 축산, 수산, 해상운송, 식품
⑦ 예술체육 : 음악, 미술, 디자인, 의상, 미용, 연극, 영화, 체육, 무용
⑧ 복 합 학 : 과학기술, 기술정책, 문헌정보, 여성학, 인지과학, 뇌과학, 감성과학

※ 학술연구분야분류표 : 학술 관련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학술표준분류체계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하는 분류표를 따름

(3)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

〈용역계약 종류별 구분표〉

구 분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정 의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에 관한업무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 상	공사를 전제로 한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조사, 감리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시정 정책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분야, 보험, 행사대행용역, 교육, 의료서비스, 건설폐기물 등
사전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	-
총괄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조직담당관	각 사업부서
사전심의 근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물품계약 종류 : 물품의 구매, 제조구매, 수리, 가공 등

-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 가능
- 물품 제조계약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되므로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 입찰 참여 가능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3조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 제조계약 구분 가능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① 발주자(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규격서, 시방서, 도면(승인도면 포함)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
② 시중유통물품(기성규격)을 상당부분에 걸쳐 별도의 가공,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
③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작성하는 물품
④ 기타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 더 알아보기 》

〈사업 발주시 자주 활용되는 면허 자격 등과 근거 규정〉

구 분		면허명	근거규정
공사	건 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전 기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소 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	국가유산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용역	건설기술	계획·조사,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측량 (측지, 공공, 일반, 연안조사,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 지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 축	건축사업무신고	건축사법
	전 력	전력 설계 및 감리업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사업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청소 등 일반용역	위생관리용역업, 경비업, 저수조청소업, 근로자파견사업	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법, 수도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 기 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보 험	보험업	보험업법
물품	유 류	석유판매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법
	인쇄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면허제도는 아니나, 공장 등 직접생산요건 반드시 필요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1) 계약금액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

-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지방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 체결
- 확정계약이 체결되면 사후에 정산한다는 조건을 정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 유권해석, 행정안전부(2019) 》

〈질의〉 준공대가 지급 후 학술용역 경비 사후정산 가능 여부

〈답변〉

○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과업 내용 변경 없이 일부항목을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개산계약 〈지방계약법 제27조, 시행령 제81조~제86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중앙행정기관 등과 체결하는 계약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결 가능
-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률(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함

〈개산계약과 확정계약의 비교〉

구 분	확정계약	개산계약
예정가격 작성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확정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개산
물량 증감	설계변경 방식	사후정산 방식
입찰 순서	설계 입찰 → 설계 계약 → 설계납품 완료 후 시공입찰	설계입찰과 시공입찰을 7일 시차로 동시 진행
정 산	별도 정산절차 없음	설계가 끝나면 개산금액과 확정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정산하고 확정계약으로 전환
턴키입찰과 차 이 점	턴키입찰은 대형공사에 적용되며 설계자와 시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면 개산계약은 시공자와 설계자를 각각 선정하되, 업체선정시점을 비슷하게 진행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 입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한 후 계약 이행 이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더 알아보기 》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의 차이점〉

개산계약은 시제품, 시험·조사·연구용역 등 전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금액 전체를 사후정산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입찰 전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예정가격 비목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하고 확정이 불가능한 일부 비목에 대하여만 사후 정산

2) 입찰금액에 따른 분류

(1)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가격협상하여 체결하는 계약

(2) 단가계약 〈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 제79조〉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단가에 대해 미리 체결하는 계약
- 실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시설물의 보수·복구,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등임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지방계약법 제26조, 시행령 제80조〉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나,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제3자인 수요기관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ping.g2b.go.kr/)에 상품을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요구하여 납품받는 절차로 운영됨

  ※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4) 다수공급자계약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 제3자 단가계약은 입찰을 통해 1개 품목에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반면, 다수공급자계약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모든 업체와 계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계약기간·예산편성형태에 따른 분류

(1)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 시행령 제78조〉

- 임차, 운송, 보관,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

(2) 계속비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 시행령 제78조〉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 총 예산이 시의회의결을 거쳐 확보된 경우로서 동 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은 총액(연부액)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이며 매년마다 연차별 계약 체결하는 것은 아님

(3) 단년도계약

-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4) 단년도차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2〉

-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체결할 수 있는 계약

〈형태별 계약체결 방법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단년도차수계약
사업내용	확 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 산	미확보 (당해연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미확보 (당해연도 내 이행분 확보)
계약체결	총 금액으로 입찰,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 금액으로 입찰, 계약하며 매년 연차별별도 계약 체결하지 않음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입찰, 계약	총 금액으로 입찰, 당해연도 내 시기별로 나누어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4) 계약상대자에 따른 분류

(1)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2) 공동계약 〈지방계약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① 개념

- 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업체가 결합함으로써 도급 한도액·면허·기술·경험 등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업체의 참가기회 확대,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 효과 발생

〈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분류〉

구 분	내 용
공 동 이행방식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2인 이상의 업체가 같은 일을 나누어서 수행)
분 담 이행방식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 (2인 이상의 업체가 다른 일을 각각의 면허 등에 따라 각각 수행)
혼합방식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을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②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 자격요건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만, 분담하

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

구 분		입찰참가 여부 결정(통과기준)
시공능력공시액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함
시공실적	공동이행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자가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분담이행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공동+분담이행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주계약자관리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주계약자가 보유한 경우
기술보유상황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구성원 수

- **5인 이내**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해야 함

  ※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시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선 안 됨 (참가 시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전)에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예시 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 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계약체결방법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함

(공동계약)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1) 개념

- 지역 제한이 아닌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는 제도

  ※ 다만, 지역 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와 용역·물품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유권해석, 행정안전부(2015) >

<공동계약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 여부>

〈질의〉 공동계약에서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업체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한지?

〈답변〉

○ 계약담당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 이하로 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와 같이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 이하로 조정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음

(2) 기준

- 입찰공고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입찰공고해야 함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9%까지 정할 수 있음

  ※ 일부 공정을 제외한 주공정 금액을 기준으로 40%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예) 건축공사(주된 업종, 90억원) + 전기공사(종된 업종, 10억원)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까지 포함하여 40억원 이상이면 조건충족

  ※ 지역업체와 지역업체 이외의 업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와는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음

(공동계약)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1) 개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고, 전문건설업자 또는 주계약자가 아닌 종합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
- 입찰참가자격 공동체 구성방식이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는 지정방식으로 변경(2024. 1. 1.)

〈주계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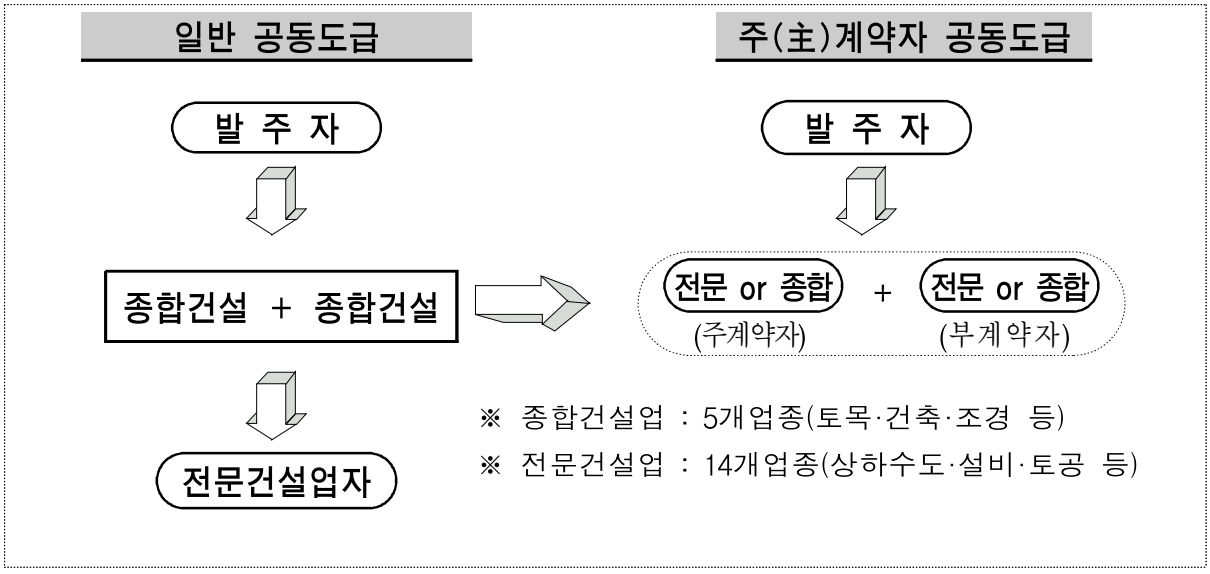
·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부계약자 시공 부분에 대한 전문공사업도 등록해야 함)

〈부계약자〉

·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전문공사업 등록한 업체

·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적용대상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 중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공사

  ※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음

〈공동도급 형태별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구 성 방 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가능)	○주계약자 종합조정 · 관리 ○구성원 분담내용으로 구성
대 표 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하 자 책 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최종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다만, 하자책임이 곤란한 경우 관련구성원 연대책임
하 도 급	구성원 전원동의시 하도급가능	각자 책임 하에 일부 하도급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실 적 인 정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낙찰자 결정 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름 ○부계약자-분담시공부분
지 연 배 상 금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납부	공사 지체를 야기시킨 자가 납부	분담이행방식과 동일
현 장 대 리 인 선 임	구성원간 협의하여 선임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	구성원이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되 주계약자가 총괄하여 현장대리인 배치
안전관리 및 산재보험 등 관리	안전관리는 출자비율로 부담하여 공동운영하고 산재보험 등은 대표자가 가입 납부 (수급체간 협의 통해서 결정 가능)	안전관리는 분담내용별로 구성원 각자가 책임지고 산재보험 등도 각자 가입납부	안전관리는 구성원이 공동부담하여 주계약자가 관리하고 산재보험 등도 주계약자가 가입납부
적용분야	○하자 불분명공사에 유리 ○건축, 동일구조물공사 등	○분할 용이한 공사에 유리 ○토목, 면허분담공사 등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건설공사 등

5)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지방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6조〉

- 긴급한 재해복구, 임차·운송·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주민의 생명과 안전·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체결하는 계약
-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6) 종합계약 〈지방계약법 제28조, 시행령 제8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7장〉

(1) 개념

- 동일 장소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2) 절차

①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종합계약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
-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 장 선임해야 함
  (대표 관련기관 장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함)

② 관련기관 협정서 작성

-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 결정 후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함

③ 종합 집행계획서 작성

- 관련기관 협의체는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이 가짐
  (전체 사업개요, 설계서 및 설계금액, 예상 사업기간 등 포함)

④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입찰공고 시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해야 함

(3) 집행방식에 따른 처리 절차

구분	대표기관 집행방식	공동집행방식
책 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한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해 단독 책임	입찰 실시,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체결은 대표 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각 관련기관은 공동으로 종합계약 발주자가 되며,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
감 독 및 검 사	대표 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
대 가 지 급	선급금·대가 등은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각 관련기관이 각자 분담, 각자의 분담 분을 대표 관련기관에게 지급하고 대표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선급금·대가 등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분을 지급,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우선 일괄 지급하고 각 관련기관에 대해 지급 요청 가능
하 자 담 보 책 임	관련기관 협의체 해산 후 하자 발생시 대표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지시	관련기관 협의체 해산 후 하자 발생시 공통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지시

3. 경쟁 형태별 분류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종류

(1) 일반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제13조〉

① 개념

- 일반입찰계약이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라는 입찰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 됨

  ※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업 등록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한이 아님

② 입찰참가자격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함

《 유권해석, 조달청(2006) 》

〈질의〉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 해당 여부

○ □□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해당 공사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답변〉

○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체크 》

〈계약의 방법〉

구 예산회계법(1995.1.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1995.7.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5935 판결)

(2) 제한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① 개념

- 제한경쟁입찰이란 지역, 시공능력, 계약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체결하는 계약

② 제한기준

구 분	목적물	제한요건
해당계약 목적물과 동일한종류의 실적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3억 원 이상 전문·그밖의 공사 ○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별표〉 추정가격 **2.3억 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되는 물품제조 ○ 추정가격 **2.3억 원** 이상 특수한 기술 요구되는 용역
기술보유 상황	공사	○ 〈별표〉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 〈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용역
시공능력 평가액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3억 원 이상 전문 · 그 밖의 공사
지 역	공사	○ 추정가격 15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10억 원 미만 전문 및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5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설비 제한	물품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물품납품능력	물품	○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 여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품질 인증 받은 재활용 제품 등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 「판로지원법」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지정·고시한 제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물품	○ 「판로지원법」 제7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구 분	목적물	제한요건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③ 제한 기본원칙

- 계약목적물 난이도, 규모,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범위 결정
- (원칙) 중복제한 금지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 가능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 》

① 터널공사 ② 활주로공사 ③ 지하철공사 ④ 저수 · 유조 하천공사,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 댐 축조공사 ⑥ 취수장 · 정수장 · 유수지 ·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 송 · 배수관공사 ⑧ 수중관 · 사이폰 · 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 매립지 등 연약지반 파일 · 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 독크 축조공사 ⑪ 간척(방조제) · 매립공사 ⑫ 항만법 제2조 항만시설공사, 어촌 · 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공사 ⑬ 장대교(길이 100m 이상) 제작 · 가설공사 ⑭ 철도 · 철도궤도공사 ⑮ 정밀 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 발전 · 변전 · 송전 · 배전설비공사 ⑰ 전기철도 · 전차시설공사 ⑱ 정밀시공 · 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 신호집중제어 · 특수제어장치 설치공사 ⑳ 자동신호 · 연동장치공사 ㉑ 원형차량감지기 설치공사 ㉒ 국가유산수리공사 ㉓ 차선도색공사 ㉔ 도로봉합제 이용 신축이음 · 균열보수공사 ㉕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㉖ 하수도 흡입준설공사 ㉗ 심정공사 ㉘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는 군사시설공사 ㉙ 하천환경정비사업 ㉚ 그 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④ 제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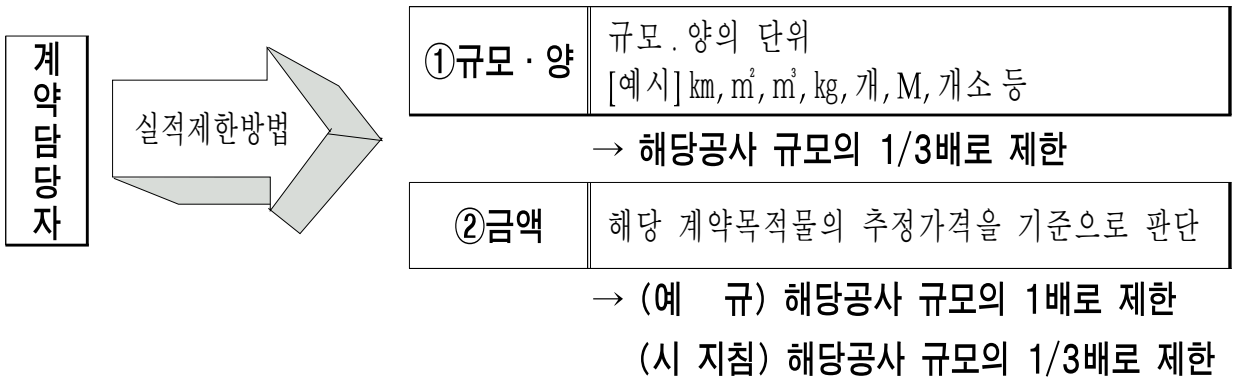
㉮ 지역제한

- 지역제한 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용역 최종 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제한 기준임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적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주의사항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접 시·도까지 제한을 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발주 전 나라장터, 관련 협회 통계자료 등을 통해 관내 입찰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지역제한을 해야 할 것임

㈏ 실적제한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함
  (단, 용역과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추정가격이 재경부 장관 고시금액〔추정가격 2.3억 원〕 이상이어야 함)
-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
  ※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함

《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규정 비교 》

- 금액으로 실적제한 하는 경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다른 내부지침을 두고 있음

구분	서울시	행정안전부
기준	(원칙) 해당사업 규모의 1/3 이내 (예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배 이내 제한 가능	해당사업 규모의 1배 이내 제한 가능
근거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 방안 (서울시, 20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 참가 가능

㉮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 '기술의 보유상황'은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함

※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구분	기준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 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 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함

-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을 직접 참여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 발주담당자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를 해야 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 용역·물품제조계약에서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준용함

㈏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사업부서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 발주 담당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제한입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판로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 개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용역·물품 및 일정금액 미만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3) 적용대상

① 대상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참가자격</th><th colspan="2" rowspan="2">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th></tr>
<tr><th>금액
(추정가격)</th><th>자격</th></tr>
<tr><td rowspan="3">〈품목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td><td rowspan="3">금 액 에
상관없이</td><td rowspan="3">중 기 업
소 기 업
소상공인 중
직접생산
확인 받은 자</td><td>경쟁입찰</td><td>금액에 상관없이 ○</td></tr>
<tr><td rowspan="2">수의계약</td><td>1천만원 이상 : ○</td></tr>
<tr><td>1천만원 미만 : ×</td></tr>
<tr><td rowspan="3">〈금액기준〉
非경쟁제품
* 물품, 용역</td><td>1억원 미만</td><td>소 기 업
소상공인</td><td rowspan="3">모든 구간</td><td rowspan="3">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의무 없음</td></tr>
<tr><td>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td><td>중소기업자</td></tr>
<tr><td>2.3억원 이상</td><td>제한없음</td></tr>
</table>

※ 단,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음

② 예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내 용
1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해 위탁하는 용역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3호.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호.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 국가연구개발 평가사업의 추진 시 전담체계, 조사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안체계를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제한입찰)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1) 관계규정

- 판로지원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 개념

-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중소기업자에게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3) 적용대상

- 종합공사 :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 공사
-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공사

(4) 적용방법

- 상기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구매는 다음 구분에 따름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적용방법</th></tr>
<tr><td rowspan="3">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경우</td><td colspan="2">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 가능)</td></tr>
<tr><td rowspan="2">다음 어느 하나의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td><td>국민 재산과 신체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품목</td></tr>
<tr><td>특별한 성능·규격·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품목</td></tr>
<tr><td colspan="3">상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접 구매 가능</td></tr>
</table>

(제한입찰)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1) 관계규정

- 판로지원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2) 개념

-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 가능
  ·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입찰
  · 공공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 납품 가능한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3)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함
  ·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제한입찰)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도급하한제도

(1) 관계규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개념

- 일정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위한 육성 기회 마련

(3) 적용대상

- 매출액 일정 이상인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일정 사업금액의 사업 참여 불가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 사업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
  -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금액으로 적용

《 계약담당자 주의사항(행정안전부 예규) 》

①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 ·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 입찰공고 ·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 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② 특수한 기술 ·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③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④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⑥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⑦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 ·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⑧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⑨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⑩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계약담당자 주의사항(행정안전부 예규) 》

⑪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⑫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⑬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다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⑭ 현장대리인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⑮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참고

⑯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 · 용역 · 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⑰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⑱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⑲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 · 안전성 ·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⑳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㉑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㉒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 계약담당자 주의사항(행정안전부 예규) 》

㉓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㉕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㉖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㉗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㉘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㉙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㉚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㉛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㉝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㉞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㉟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3) 지명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2조~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

① 개념

- 지명입찰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격,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체결하는 계약

②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음
  · (1호)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 입찰대상자 10인 이내
  · (2호)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그 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용역 추정가격 2억원,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 (7호)「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단서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10호)「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12호)「판로지원법」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등

③ 지명기준

-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기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구 분	기 준
공사	·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명할 것

구 분	기 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
물품 용역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④ 지명방법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받아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함

2) 수의계약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2) 개념

-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것이 아니라 경쟁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수의계약의 필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야 함
- (1인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3) 적용범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table>
<tr><th>구분</th><th>유형</th><th>공사</th><th>용역</th><th>물품</th></tr>
<tr><td rowspan="3">1인견적
수의계약</td><td>금액
기준</td><td colspan="3">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td></tr>
<tr><td colspan="3">·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물품만)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청년창업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td></tr>
<tr><td>법적
기준</td><td colspan="3">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공법,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한 경우
· 해당 물품 제조·공급한 자가 그 물품 설치·조립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판로지원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상이를 입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용역, 물품 등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재공고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 후 단독 응찰로 1회 유찰(~'26.6.30. 종료)
▸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계약 해제·해지된 경우
▸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td></tr>
<tr><td>2인 이상
견 적
수의계약</td><td>금액
기준</td><td>·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기 등 그밖의 공사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td><td colspan="2">추정가격
1억원 이하</td></tr>
</table>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 가능
-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제 5호는 제외), 제26조, 제27조
- 2천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

(4) 유의사항

① 수의계약 가능 금액 확인

- (원칙) 공사·용역·물품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 (예외) 희망기업과의 소액 계약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까지 가능

구 분	금 액 기 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모든 금액 (직접 생산·수행 물품·용역)
장애인기업·여성기업·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②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무 발주 제도(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무 발주 시범 사업 연장 계획)

- 1인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의무 발주
- 폐기물 처리 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대상
- (예외) 불가피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할 경우, 실·국장님 방침을 득한 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

③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 계획)

- 서울시 실·본부·국, 사업소별 연간 4회 초과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금지 (연 4회까지), 서울시 전체 연간 9회 초과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금지 (연 9회까지)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자치구 계약은 횟수에 미포함)

- (예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 특허 업체 등 이행 가능업체가 1인인 경우, 시행령 26조 공고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 명시)

※ 사업소 기준 : 실·국·본부 산하 사업소는 실·국·본부 기준으로 횟수 산정

예) 도로사업소는 재난안전실 산하 사업소로 재난안전실 수의계약 횟수에 포함

예) 수도사업소는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사업소로 서울아리수본부 수의계약 횟수에 포함

- 동일업체 초과여부 확인 확행
  - (1차)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발주담당자 확인 후, (2차)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와의 계약 건수 직접 확인
  - 업체에 계약 건수 9회 초과 시 계약체결이 안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담당자 최종 확인 시 횟수 위반될 경우 반려 및 재의뢰 요청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 강화(분기별)

④ **계약금액 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사업담당자는 1인견적 수의계약 진행시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최종 계약금액 결정

⑤ **수의계약 체결 위해 분리발주 금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수량 분할 금지

⑥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35조〉

-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규정을 준용함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보안측정 등 조사 필요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⑦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고,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확인서 징구 여부 체크하여 재무과에 수의계약 의뢰 (단,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낙찰자 선정 시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동 확인서를 징구토록 조치·확인 후 계약체결)

《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업무 절차 》

▶ **1인 수의계약**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발주부서)** ⇨ 수의계약 의뢰 (수의계약 사유서 체크 必)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계약부서)**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뢰 **(발주부서)** ⇨ 안내공고 (관련 규정 안내) **(계약부서)** ⇨ 낙찰자 통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안내) **(계약부서)** ⇨ 확인서 징구* 산출내역서 제출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계약부서)**

* 낙찰자가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산출내역서 계약부서 제출 및 계약 체결**
* 낙찰자가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 **발주부서가 계약부서에 통보 후 후순위자 계약 진행**

⑧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유착비리 적발업체 확인(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 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국·본부·사업소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퇴직일로부터 2년간 1인 수의계약 제한
-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정·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와 수의계약 제한

※ 경쟁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는 예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등에서 확인 후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확인 여부 체크하여 수의계약 의뢰

⑨ **수의계약 금액 변경 제한(1인 수의계약의 변경계약 개선계획)**

- 수의계약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 가능, 범위 초과 변경계약 불가

⇒ 소액 수의계약 2,200만원, 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5,500만원 내에서 금액 변경 가능

- (예외) 불가피하게 변경계약을 해야할 경우, 실국장 방침 및 행정1부시장 보고
  · 행정1부시장 보고 시 사전에 재무과 및 예산담당관 참석 안내 요망
  · 실·국·본부 산하사업소는 각 실국본부장 방침을 득한 후 행정1부시장 보고

(수의계약)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

(1) 관계규정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2) 개념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 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 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3) 추천방법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내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대상업체 추천 요청 (5인 이상 추천 원칙, 2천 미만은 2인 이상)

(4) 절차

공공기관	→	중소기업	→	협동조합	→	공공기관
추천요청		정보검색 추천신청		적격심사 추천		수의견적공고 견적접수, 계약

4. 조달계약

1) 개요

(1) 관계규정

-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적용대상

- (의무조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해당 규격의 물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구매 의무

- (임의조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 의무조달 외의 계약

2) 처리절차

구 분	처리절차
공사·용역	조달계약요청(서울시) → 계약체결(조달청) → 조달수수료 납부(서울시) → 감독관 지정 및 사업 이행(서울시)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서울시)
물 품	조달계약요청(G2B) → 계약체결(조달청) → 물품검사 및 수령(서울시) → 대금·수수료 청구(조달청) → 대가지급(조달청) → 청구금액 입금(서울시)

3) 조달계약 수수료

(1) 관계규정

- 조달사업법 제16조, 시행령 제20조

(2) 조달수수료율

- 조달청 고시(조달수수료 고시) 참고

《 **물품 조달**계약 처리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업무)》

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절차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업체	발주부서
구매의뢰→계약부서	⇨ 나라장터 쇼핑몰 주문 → 분할납품 요구	⇨ 납품 → 분할납품통보 → 검사·검수요청	⇨ 물품인수 및 검사·검수

②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업체	발주부서
구매의뢰→계약부서	⇨ 나라장터 쇼핑몰 주문 → 분할납품 요구	⇨ 납품 → 분할납품통보 → 검사·검수요청	⇨ 물품인수 및 검사·검수

③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대상 절차

발주부서	조달업체	계약부서	발주부서
업체선정 요청 → 계약부서	⇨ 제안서 제출	⇨ 납품업체 선정	⇨ 납품요구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대상 구분

구분	2단계 경쟁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 요구대상 금액 1억원 이상 물품(의무), 용역(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납품요구대상 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의무), 용역(의무) ※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물품의 제조에 한정) - 물품: 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선택) - 용역: 1억원 이상(의무)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대상물품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여야 함(조달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5. 국제입찰

1)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2) 적용대상

대상기관		조달대상	국제입찰 대상금액('25년～'26년)	비 고
지방	광역지자체	공 사	추정가격 **265억원**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16개 시·도
		용역·물품	추정가격 **3.5억원** 이상	
	기초지자체	공 사	추정가격 **265억원** 이상	서울, 부산, 인천 산하 51개 구·군
		용역·물품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지방공기업	공 사	추정가격 **265억원** 이상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용역·물품	추정가격 **7.1억원** 이상	

(3) 적용예외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2) 적용방법

- 국제입찰 적용 대상인 경우 입찰공고 시 영문입찰공고문 첨부

※ 국제입찰 적용 예외인 경우 공고 의뢰 시 국제입찰제외사유서 첨부

Summary Notice (영문입찰공고문 샘플)

1) Description of Project

Project name	In-depth inspection of Jeongneungcheon viaduct
Location	From : Seongsu-dong Seongdong-gu Seoul in Korea To : Wolgok-dong Seongbuk-gu Seoul in Korea
Project outline	• Width of the structure : 7.5~33.7m • Length of the structure : 10,039m
Budget	Total 879,592,000 Korean Won (including VAT)
Project period	240days from starting date

2) Submission of document for Pre-qualification

○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 Detail Contents can view or download in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https://www.g2b.go.kr)

○ Date of Submission

- 09:00 a.m ~ 18:00 p.m, April 19(Fri), 2024 (Korean Standard Time)

○ Place of Submission

- The bridge maintenance division of Seoul Seongdong roads & bridges maintenance office
- Address : 41, jadongchasijang-ro,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 Tel / Fax : 82-2-2210-1583 / 82-2-2210-1587

* All documents must be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and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April. 10. 2024.

제4절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제도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1) 제정목적 및 적용기관

(1) 제정목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희망기업의 자생력 제고
- 기업의 근로자 권리 보호, 계약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조달 조례 제정

(2) 적용기관

-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자치구 및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본 조례 준용 가능

2) 주요내용

구 분	조문 내용
제6조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준수
제7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입찰참가기회 확대, 우선구매 촉진
제8조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 가능 ▸ 기업의 사회적책임 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
제9조	서울시와 계약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정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함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내용 확인·지도
제10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전 과정 공개

2.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1) 제도 개요

(1) 희망기업 정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장애인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희망기업 (사회적약자기업)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2조

(2) 개념

-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희망기업의 생산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희망기업의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실적 확대 방안

(1)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금액 범위에서 희망기업 제품 우선 구매

구 분	기업 유형	금액 범위
1인견적 수의계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모든 금액 수의계약 가능 (직접 수행·생산하는 용역·물품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여성기업은 조례에 따른 희망기업은 아니나 편의상 위 분류표에 포함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근거 조문〉

구 분	개별법	조 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①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①「판로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①「판로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기간 · 소수점 계산방법

1.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1) 기본원칙

(1) 기본원칙

- 지방계약법령에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기간에 관한 규정 준용
- 소수점 계산방법은 특히 적격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며, 세부적인 계산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2)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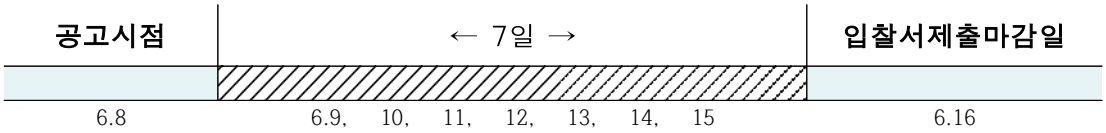
조 문	내 용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지방계약법령상 기간계산

(1) 입찰공고시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서울시, 2017)〉

① 산정방법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입찰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낙찰자결정방법·계약금액 등에 따라 공고기간이 다름



② 유형별 공고 기간

구 분		세부 구분	일반공고	긴급공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기존사업	3일 이상 (공휴일, 토요일 제외)	
		신규사업	5일 이상 (공휴일, 토요일 제외)	
적격심사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5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265억원(국제입찰대상) 미만	30일	
		추정가격 265억원(국제입찰대상) 이상	40일	
	용역물품	기존사업	7일	5일
		신규사업	10일	
협 상 에 의한 계약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0일
		기존사업	10일	
		신규사업	15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 신규사업 : 과거에는 수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의미함

(2) 입찰참가등록시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임
  (단,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공고내용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판단 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①「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외의 제한요건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4) 각종 보증기간

구 분	산정방법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함. 다만,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가 되도록 함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착공일이 아님)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하자보수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5) 적격심사 평가기준일

-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6)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구 분	제출기한
심사서류 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 보완	기제출서류의 미비·오류 등 불명확하거나 미제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완 또는 추가 가능
적 격 심 사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은 4일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이내 →3일 이내
재 심 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
심사기간 연장	불가피한 한 경우 3일 연장가능(수해복구공사는 2일 이내)

※ 상기 제출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원문 확인 필요

(7) 계약의 체결

-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함

(8) 검사

- 검사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다만,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 검사기간 연장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야 함

(9) 대가지급

-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 지급

2. 소수점 처리방법

1) 공통사항 (원칙)

- 입찰가격 평가 시 낙찰률 계산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입찰가격 산식(예시)〉

○ $8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각각 400,000천원, 350,980천원일 경우
0.87745(350,980천원 ÷ 400,000천원, 일명 낙찰율 87.745%)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0.8775를 입력하여 계산

2) 계약목적물별 사항

(1) 공사

-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 그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함
  · 시공비율·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으로,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킴
- 하도급 직불 관련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 공동수급체 기술능력평가
  ·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용역·물품

-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소수점 처리 방법 준용

제2장 발주준비 단계

순 서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제2절 분리발주 제도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제4절 직접생산 확인 제도

제5절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제6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제7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건설업 규제폐지)

제8절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제도 등

제9절 계약 맞춤형 매뉴얼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1.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3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제109조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1) 심의대상

①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의 다음 사항
-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관련 업체가 지방계약법 제9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②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④ 당초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 추가하는 설계변경 (서울시 조례)

(2) 심의내용 :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
- 그 밖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① 구성인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호선)

② 위원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중인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임기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2) 위원회 운영

① 개최일자 :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정례회의 개최
(부득이한 경우 일정 변경 가능)

② 운영방법

- 심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함
-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 및 현황 설명은 안건상정 부서의 담당팀장이 하고, 사업소의 경우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여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정안건 관계 공무원 이외 설계자 등을 참석시켜 현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음
- 입찰참가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재무과에 통보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제도는 제6장 제5절 참고

2. 계약법률심사 (법률지원담당관)

1) 관계규정 및 운영배경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서울시 예규)

(2) 운영배경

- 서울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주요 계약 및 협약의 공정한 체결 및 장래 서울시의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협약 및 계약 추진 시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계약법률심사팀의 법률·재무검토를 경유하여 분쟁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심사대상 및 시기

심사대상	심사시기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최종심의 30일 전
민간위탁사업	서울특별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20일 전 (수의계약의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된 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가 완료된 후 계약체결 20일 전 - 금액기준 : 공시지가 기준 20억원 이상 - 토지면적기준 : 6천m^2이상의 취득 / 5천m^2이상의 처분
임대차계약	서울시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으로서 계약체결 20일 전
기타 계약(협약, MOU 등) 중 계약법률심사팀이 자체판단 또는 부서 요청에 따라 법률·회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은 심사 대상에 포함	

3) 계약법률심사팀 구성 및 기능

(1) 계약법률심사팀 구성

- 법률지원담당관 내 계약법률심사팀장 및 법률전문관, 계약전문관

(2) 계약법률심사팀 기능

-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계약,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협약) 체결 전 법률·재무적 적정성 심사

3.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1) 관계규정 및 운영배경

(1) 관계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 운영배경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및 불필요한 공정제거 등을 통해 심층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방지

2) 심사대상

(1) 심사대상 기관

- 시 본청 과·담당관, 합의제 행정기관, 시 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사무처
-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연기관
- 자치구(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

(2) 심사대상 금액(추정금액, 시·도 기준)

공 사		용 역	물품 제조·구매	민간위탁사업 대행사업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사업

※ 추정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부가가치세+관급자재
※ 설비공사 : 승강기·삭도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 가스·난방공사

① 설계변경 대상 공사 중 심사대상 사업

- 계약금액(최초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② 민간위탁 심사대상 사업

- 수탁자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비용 심사 〈인건비, 경비(운영비), 사업비〉
- 계속사업의 경우 위탁금이 전년도 편성액 대비 5% 이상 증액되지 않은 경우 계약심사 면제
- 단, 계약체결 전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사업비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발주 전 추가 심사요청

(3) 심사제외 대상

①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발주사업

②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 2억원 미만의 용역
-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③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2%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2% 미만인 사업

④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조·구매 사업
-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 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장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사업은 계약심사과에서 연 1회 통보

3) 심사방법 및 심사내용

(1) 심사방법

구분	심사방법
공사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적용 심사 - 도면 및 설계서 검토, 불필요한 공정 제거, 현장확인, 착오시정 및 신공법 등 적용
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
물품	-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조사 및 업체 견적서 징구를 통한 심사

(2) 심사내용

-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 ·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
  -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4) 계약심사 업무흐름도



4. 일상감사제도 (공공감사담당관)

1) 관계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2) 감사대상 및 의뢰방법

(1) 감사대상

구 분		대 상	
계 약	일반 경쟁	공사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종합공사, 10억원 이상 그 외 공사
		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협상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은 5억원 이상 ※ 협상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용역은 1억원 이상 축제·행사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지명 경쟁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수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 재공고 유찰, 설계공모 당선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장애인·여성기업,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 요건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은 제외	
설 계 공 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 계약 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 결정하며, 학술용역은 일상감사 비대상임

※ 시 본청,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대상(시의회 비대상)

(2) 의뢰시기

- 입찰 및 설계공모 공고 전, 지명 통지 및 수의계약 체결 전

  ※ 계약 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 사업추진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 가능

(3) 의뢰방법

- 공문으로 공공감사담당관에 의뢰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시방서·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원가산출서, 일상감사 의뢰서, 자체점검표(서식은 일상감사 규정 참조)

5. 녹색제품 구매심사 (기후환경정책과)

1) 관계규정

(1) 관계규정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2) 심사대상 및 방법

(1)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2) 심사대상 ※ 계약금액 무관

- 모든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
- 용역의 경우는 물품구매와 관련 있는 용역만 심사 대상

물품 구매와 관련 있는 용역	물품 구매와 관련 없는 용역
청소(세탁·세척·소독) 관련 용역, 시설물 관리·운영, 시설·장비의 수리·보수·정비·설치·교체·유지관리 용역 (시스템 유지관리 제외) 등	설계·감리, 검사·점검·안전관리, 기술지도, 연구용역, 제작·홍보, 조사·평가, 프로그램 운영, 행사·전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대행, 컨설팅, 보험, 임대차 등

(3) 심사절차

① 녹색제품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

②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첨부

- 물품: 구입물품 모든 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구입가능 또는 미구매사유) 기재
- 공사·용역: 녹색제품이 있는 물품의 품목과 검토결과 기재

③ 계약의뢰시 결재경로 추가

- (기안)담당자→(협조)기후환경정책과→(협조)계약담당팀장→(결재)부서장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재정합의와 병행

※ 물품구매와 관련 없는 용역계약은 검토서 작성 및 협조결재 생략

(4) 심사내용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검토결과 확인
-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사유 타당성 검토 등

6. 홍보물 · 영상물 · 간행물 심의 (홍보담당관)

1) 관계규정 및 심의대상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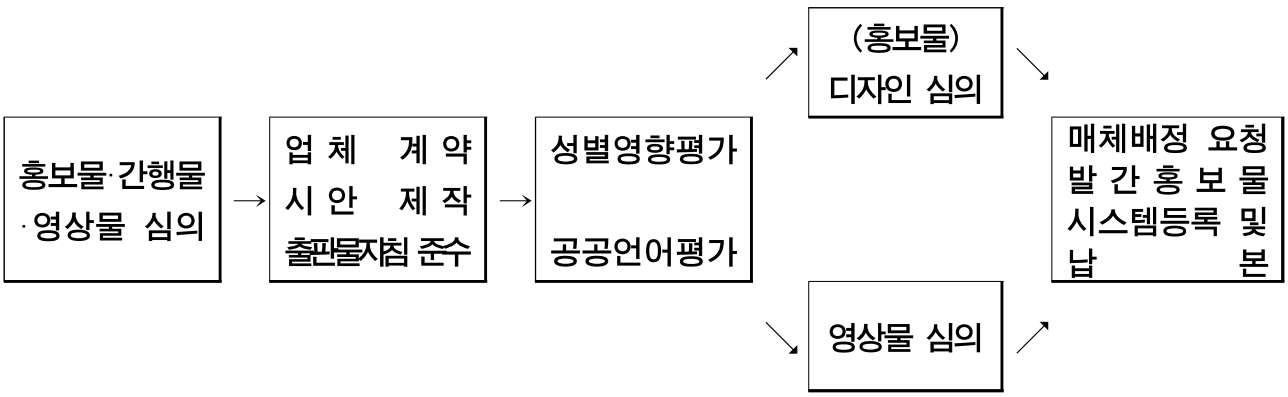
(2) 심의대상

- 총 제작비 1,000만원 이상 시민 대상 홍보물(포스터, 지하철 및 버스 광고물, 리플릿, 브로슈어, 소책자, 전단지 등), 영상물, 간행물(책자, 백서)

  ※ 심의제외대상

  - 총 제작비 1,000만원 미만 홍보물(영상물, 인쇄물 각각)
  - 책임운영기관(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한양도성도감(세계유산등재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 직원 대상 교육 교재 및 영상물
  - 투자출연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등

2) 심의절차



3)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부위원장은 호선

(2) 심사 내용

- 제작 필요성 여부, 유사·중복 제작의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
- 공공성 침해 여부,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

7. 학술용역심의 (조직담당관)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1) 심의대상 : 학술용역

《 학술용역의 정의 》

○ **조례상 정의**

- 서울시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자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

○ **행정안전부 예규상 정의**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1) 위탁형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과업지시 내용 등 적정성
-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관리,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등

(3) 재심의 사항

-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
- 학술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4) 심의시기

- 학술연구용역 입찰공고(계약) 의뢰 전
- 학술연구용역 주요 내용 추가 또는 변경,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30% 이상 증가로 인한 계약변경 의뢰 전
- 학술연구용역 계약 해지 의뢰 전

8. 정보화심의 (정보시스템과, 정보보안과)

1) 관계규정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제2절 보안성 검토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및 지침

2) 사전심의

(1) 심의대상 : 사전심의 각 규정에 따라 심사(검토) 시기, 대상 기관, 대상 사업의 유형·규모 등이 상이하니 개별 규정 확인 필요

(2) 심의종류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 참고

구 분	내 용
▌예산심사 전, 예산편성 기관(부서) 수행	
예산타당성 심사	·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심사 - 대상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SW 개발·재개발을 포함하는 사업 - 심사 : 정보시스템과(市 관련부서 기술검토 병행)
▌사업발주 전, 계약체결 등 사업발주 기관(부서) 수행	
사전협의	· 중앙부처 및 타 기관과의 유사·중복, 연계·통합 등 검토 - 대상 : 신규 및 2억 이상 계속 사업 - 주관 : 행정안전부(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서 의뢰)
SW사업 과업심의	· SW사업 과업내용, SW개발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심의 - 대상 : 모든 SW사업 - 주관 ┌ 市 SW사업 : 市 상설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정보시스템과) └ 공사·공단/출자·출연 SW사업 : 각 기관에서 위원회 구성·심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보안대책의 적정성 등 검토 - 대상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제2절 보안성 검토 확인 - 주관 : 정보보안과 (국가정보원 검토대상 확인 必)

3) 사전심의 운영 관련 정보시스템

- **서울시**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시립대·투출기관 : qms.seoul.go.kr)
  ☞ 예산타당성 심사, 제안요청서 검토, SW사업 과업심의, 정보화 관련 규정 등 확인
- **행안부**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www.irm.go.kr)
  ☞ 사전협의 신청, 정보자원 관리 등

4) 사전심의 주요내용

〈 예산타당성 심사 〉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2)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 市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포함

(3) 대상사업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재개발 포함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외대상】 운영·유지관리, HW/SW 구매, DB구축, ISP·컨설팅, 전체 사업비 대비 SW 개발비 7% 미만 사업,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SW(컴퓨터, 프린터, 행정사무용SW) 등의 구매,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경우 등

※ 그 밖에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 및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확인 필요

(4) 심사주관 : 디지털도시국(정보시스템과)

(5) 심사내용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유사·중복 방지 및 통합·연계 방안 검토
- 市 정보화 정책·기술 총괄부서 기술검토

(대시민 웹·앱, 데이터 분야, 공간정보 분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6) 심사시기

- 정기 : 매년 6월~10월, 다음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심사대상 사업
- 수시 : 추경예산 편성 또는 예산변경(전용·이용)을 추진하는 심사대상 사업

(7)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세부 산출내역서, 예산타당성 심사 자가검토서 등

※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에서 확인

(8) 심사신청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심사자료 등록 후 공문요청

(9) 심사결과

구 분	심사결과	비 고
적 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예산 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 검 토	사업계획 등의 재검토 필요, 보완하여 재요청 가능	보완신청 가능
부 적 정	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 등 추진보류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1)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공사·공단, 자치구(공사·공단 포함)

(3) 대상사업

- 계속사업 : 2억 이상 계속사업 ※ 자치구(區 공사공단 포함)는 1억 이상 계속사업

(주의) 2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
기능개선(개발비)이 전체 규모(사업비)의 7% 이상인 경우 **사전협의 대상**임.

- 신규사업 : 사업비 무관, 신규 과업을 추진 또는 포함하는 사업
  - 정보시스템 구축 목적의 BPR/ISP, ISP, ISMP 사업
  - 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 신규 웹사이트, 모바일웹, 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 클라우드 전환 사업

※ 제외대상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확인

(4) 검토주관 : 행정안전부(시·도), 서울시(자치구)

(5) 신청시기

- 사업 발주 전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 (검토 소요기간 : 30일)

(6) 신청방법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사업관리〉사전협의〕 메뉴에서 신청
- 제출자료
  - 사전협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자체검토 결과서
  - (해당시) SW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해당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처리 절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

사업부서에서 사전협의 신청자료 등록 후 검토요청
→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자체점검 후 협의기관으로 검토요청
→ 협의기관에서 검토결과를 각 기관(부서)로 통보(공문)

신청기관		자제점검 기관		협의기관
市(공사공단 포함)	⇒	市 정보시스템과	⇒	행정안전부
區(공사공단 포함)		區 정보화 담당부서		市 정보시스템과

(7) 협의기관 검토사항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 사업내용의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웹사이트·모바일, 데이터 표준·품질
- 정보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요구사항 상세화 등

(8) 검토결과 유형

검토결과	결과 내용
추 진	사업추진 원안인정
보완 추진	타 기관과의 연계 검토, 제도 및 규정 준수 필요
보완 후 협의	타 기관과의 일부 중복 또는 연계성 검토 필요로 사업내용 일부 조정 후 협의기관 재검토(승인) 후 발주 필요
추 진 보 류	타 기관(시스템)과의 중복 또는 중앙부처 보급예정
신 청 반 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9) 검토결과 이의제기

- 결과접수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명 자료 작성, 협의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 협의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재검토 결과 통보

(10)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등록

- 검토결과에 따라 **반영계획 등록 후 사전규격 공개** 등 사업 발주(30일 이내)
- 사전협의 검토결과 '**보완후 협의**' 사업은 검토의견을 이행하여(반영결과 등록) 협의기관 점검을 받은 후 승인된 사업에 한해 발주
- '**보완 추진**' 사업은 검토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고, **반영결과 등록 후 사전규격 공개** 등 발주
- 사업이 종료되면 이행점검 자료(검토의견 반영계획에 대한 이행결과, 사업추진 산출물 등 증빙자료) 등록.

※ 행안부(협의기관)가 이행실태 점검 후 미준수 사항에 대해 기관 감사실에 통보할 수 있음

〈 SW사업 과업심의 〉

(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28조

(2)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

※ 제외대상 : 단순 H/W 도입·설치, 단순 동영상 제작, 인프라 수수료 등 제외

(3) 심의내용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해당시) SW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해당시)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해당시) SW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자체평가 결과 관련 외부 이의제기 등 발생 시)

☞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 에서 심의서식 등 참고**

(4)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통합 운영 : (市 추진) 모든 SW사업 ※ 전문성·특수성 있는 사업은 부서 자체 운영 가능

- 서울시 상설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등록,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확인**
- 상용SW 구매
  - ▸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심의대상은 해당 위원회(담당부서 운영)에서 일괄심의
  - ▸ 상용SW 구매만 추진하는 경우 분기별 일괄심의(정보시스템과)에 심의요청

- 자체 운영 : (공사·공단/출자·출연 추진) 모든 SW사업

- 사업부서(기관)에서 구성한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참고)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위원장(1명) 포함 5~10명이내(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소화 심의 운영: 위원 2인 이상 출석, 3개월 이내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

《 간소화 심의 대상사업 》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의 사업 ②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
③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④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⑤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⑥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사업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1) 관련근거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4조~제18조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4조~제18조

(2)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자치구(소속 산하기관 포함)

(3) 대상사업

- 홈페이지, 직원용 업무시스템, 콜센터시스템, 원격근무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인터넷전화시스템, 백업시스템, 관제시스템, CCTV 시스템 등 모든 정보시스템 구축(신설, 개편 등 포함) 사업
- 유무선 정보통신망(네트워크) 구축 사업
-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등 전산장비 도입·교체 사업
- CCTV, IP카메라 설치·교체 사업
- 상용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 도입·교체 사업
- 정보통신기반시설 제어시스템 도입·교체 사업
-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 전산망 등 외부망과 연동하는 사업
- 스마트폰·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
-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사업
- 국가용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보수,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 그 밖에 시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4) 검토주관 : 디지털도시국(정보보안과)

구 분	심사 내용
국 정 원 검 토 대 상	전자제어시스템 구축,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10억 이상), 최신 IT 기술 적용 등
서 울 시 검 토 대 상	홈페이지 구축, CCTV 구축, 전산·통신장비 도입 등 기존 정형화된 정보화사업, 단일기능의 정보시스템구축,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전산·통신장비 도입·교체 등

(5) 검토내용

-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정 여부

(6) 검토시기

- 사업 계획 단계 (※ 발주 공고전)

(7) 검토자료

- 보안성검토요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 자체 보안대책 강구 사항

※ 자체 보안대책 작성시 유의사항

- 보안대책 작성시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지침 제4조~제47조 참고
- 서버, 네트워크 장비가 데이터센터 등 별도 장소에 도입될 경우 '~의 보안대책에 따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실제 보안대책을 확인하여 기재할 것
- 자체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성검토요청서 작성 후 공문 발송 전 필요한 경우 사전 검토요청(메일)

(8) 검토요청

- 자체 보안대책 강구 후, 정보보안과에 공문 의뢰

(9)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사업 추진 시 검토결과 반영, 준공 전 1주일 이내 보안점검표 작성 제출 (보안점검표 제출시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9.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1) 관계규정 및 운영배경

(1) 관계규정

- 시장방침 제 738호(2004.11.25.)
- 행정2부시장 방침 제59호(2024.3.15.)
- 기술심사담당관 제9630호(2025.5.12.)

(2) 운영배경

-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심사대상 및 내용

(1)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출연기관
- 자치구(전액 시비 또는 시비·국비 지원 용역사업)

(2) 심사대상

- 토목, 도시계획분야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건축분야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기계, 전기, 조경 등 기타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 심사대상 금액이하는 발주부서 자체 심사

《 **타당성심사 대상 용역의 구분** 》

○ **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시행하는 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및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등에 의한 대가 산정 (설계, 건설사업관리, 도시계획 등)

○ **개별법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엔지니어링기술 분야 기술인인 용역**
- 정밀안전점검·진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 **기타 개별법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건축설계(건축사법), 전기 설계·감리(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 설계·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

(3) 심사내용

- 용역 시행의 타당성
-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3) 심사절차

(1)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당해연도 사업은 용역발주 전)
- 설계공모 기술용역 : 공모전

(2) 심사절차

심사요청

〈발주부서〉
- 심사요청(구비서류 포함)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공문 시행

↓

용역 시행 필요성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 상위계획,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검토
- 용역 필요성,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검토
- 유사용역 사례 및 기존자료 활용 가능여부 검토
-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 설계 요율 적정 여부, 개략공사비 산정 적정 여부
- 표준품셈 적용 등 적정 대가 반영 여부, 추가업무 산정의 적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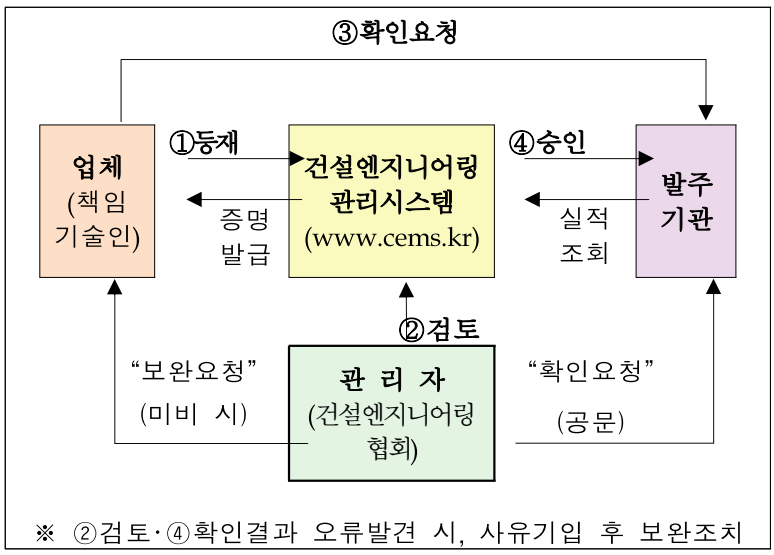
↓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적 정 : 기술용역 시행이 타당
- 조건부 : 기술용역 시행은 타당하나 과업항목 및 물량조정, 개략공사비 및 요율조정, 단가 조정, 기존자료활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
- 재심사 : 기술용역의 시기 미도래, 연계사업 미반영 서류 미비 등으로 재심사

[기술용역 추진 시 사전 확인사항]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발주 전	1.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추가(첨부) 등록	- 용역발주 전 최종 수정된 **설계내역서** 및 **과업내용서**를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사후관리)**에 추가 등록 ※ 기술심사담당관-600호('13.1.14) : 용역관리 시스템 개선
	2. 유관부서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시 T·F팀 구성 등 관련부서 참여여부 확인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요청 전 유지관리부서 및 관련(유관)부서 의견 조회 등 **의견수렴**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T·F팀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사업참여 유도** · 유지관리부서 선정여부 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3호('13.5.22) : 준공예정시설물 점검관련 매뉴얼 작성
	3. 과업내용서 명시 - 지장물 현황 비교검토 - 내진대상 시설물 내진 반영	- 설계용역 등 추진 시 공사구간 내 또는 인접구간의 지하매설물도는 우리 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 내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아울러 지반조사, 현황 측량시에도 수치지형도를 최대한 이용 - 모든 공공건축물(규모관계 없이)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수문, 교량 · 터널 등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작성확인 철저(구조기술사)
	4.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 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발주부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입찰 시행 전에 반드시 건설기술 심의절차 이행 · 단, 서울시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과 모든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 서면 협의로 건설기술심의 대체

확 인 항 목		세 부 내 용
착수 시	5. 용역실적 등재·관리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재·확인(www.cems.kr) – 담당자는 착수보고서 접수 시 "건설엔지니어링실적확인서" 첨부 확인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감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 ②검토·④확인결과 오류발견 시, 사유기입 후 보완조치
준공 시	6.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이행철저 – 성과품공개 및 자료제공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이행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의 '해당 건의 시홈페이지결과물 공개(버튼)을 이용하여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 용역보고서 : PDF파일 변환하여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USB(PDF파일) 1부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성과품은 반드시 비공개할 것(용역준공시 용역사 보유 성과품 파기) ※ 시장방침 제135호('13. 5. 24.) :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방안

10. 건설기술심의제도 (기술심사담당관)

1) 관계규정 및 운영배경

(1) 관계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 시행규칙

(2) 운영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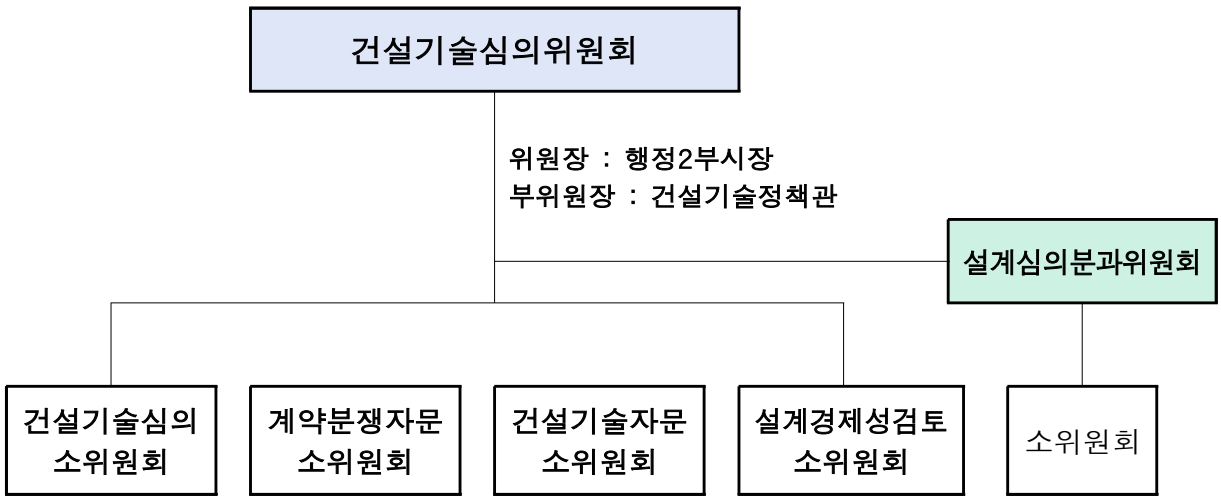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건설기술정책관 · 위 원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00명 이내	· 소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자문소위원회는 안건별 자문 주관부서 4급 이상 공무원 · 간 사 : 회의 주관 소관부서 5급 공무원 · 위 원 : 위원회별로 소위원장 포함 5~40인 이내 관련 전문가

(2) 운 영 : 5개 소위원회로 구분 운영



3) 심의 절차

심사요청서 접수	발주기관(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 소위원회 개최	- 발주기관(부서)는 위원 지적사항 반영 여부를 명기하여 제출 - 발주기관(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 토의 - 심의위원 지적사항 최종 확정 및 심의·의결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중 택 1)
↓	
심의결과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기관(부서)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발주기관(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4) 건설사업 단계별 심의 종류

구 분	심의종류	내 용
기획단계	용역발주심의	▸ 대상 : 토목·건축분야 2억원 이상, 전기·기계·조경분야 1억원 이상 용역 ▸ 내용 : 용역발주 타당성, 과업방향·내용의 적정성
	입찰방법심의	▸ 대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등 ▸ 내용 :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일괄, 대안, 기술제안)의 적정성
	입찰안내서심의	▸ 대상 : 일괄입찰(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기본·실시)입찰공사 ▸ 내용 :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조건 등 입찰안내서 내용의 적정성
설계 및 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심의	▸ 대상 : 2.3억원 이상 설계·건설사업관리, 1억원 이상 정밀안전진단(점검) ▸ 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시 서면협의로 대체(조례 시행규칙 제6조)
	설계경제성(VE)검토	▸ 대상 :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내용 :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
	설계심의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전기·조경의 경우 20억원 이상 ▸ 내용 :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 대상 : 100억원 이상(자치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내용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내용의 적정성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대상 : 100억원 이상 구조물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내용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 시행계획의 적정성(방식, 배치 등)
유지관리단계	정밀안전진단심의	▸ 대상 :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내용 :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및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

11.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1) 관계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시행령 34조
-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부시장방침 제51호, '21.3.25.)
-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부시장방침 제231호, '24.8.27.)

2) 위원회 기능 : 신기술 관련 사항 심의 · 자문

- 설계에서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정 여부, 설계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심의
- 발주청에서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신기술 관련 필요사항 등에 관한 자문

3)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단계	**신기술 설계반영 검토** (발주부서)	(건진법 시행령 제34조, 조례 제10조) - 기존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설계반영
	공사 계약방법 검토 (발주부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5조) - 일반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상정 (발주부서→기술심사담당관)	(조례 제5조, 제6조) ※ 발주부서 요청시 - 설계 반영 신기술의 적정성 등
	심의(자문)결과 반영·조치 (발주부서)	(조례 제9조, 규칙 제7조) - 심의(자문)결과 반영하고 조치결과 제출
시공단계	**신기술 시공중 평가** (외부전문가)	(부시장방침 제231호, '24.8.27,)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공법 자체점검
	신기술 실명제 실시 (발주부서)	(조례 제12조, 규칙 제12조) - 신기술 시공위치에 표찰부착
사후관리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발주부서→ 국토교통부·기술심사담당관)	(건진법 시행령 제34조, 부시장방침 제231호, '24.8.27.) - 대상확대(건설신기술 → 건설신기술 +20억원 이상 특허, 모든 신기술) - 준공후 1개월 이내(국토교통부 제출) - 준공후 1개월 이내, 사후평가 3년간 (연1회 실시, 서울시홈페이지 등록)
	자료축적 및 활용 (발주부서)	(조례 제14조) - 건설신기술 개요, 심의결과, 유익한 정보 등

1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미래공간담당관)

1) 관계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

2) 심의대상 및 방법

(1) 대상기관

-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2) 심의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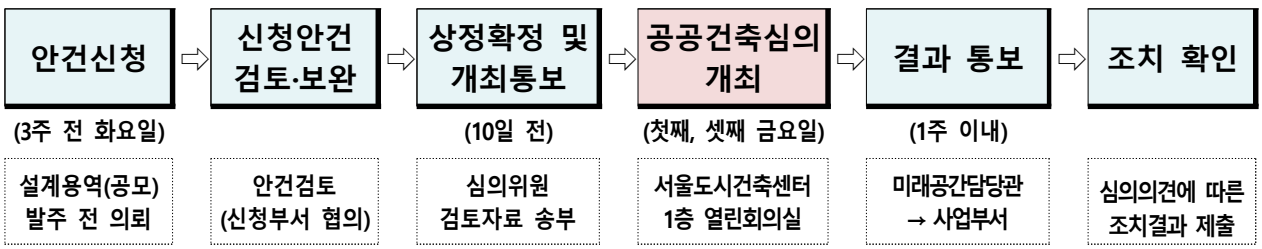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부가세 제외) 공공건축사업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수행 사업은 계약심사 제외 사업임

(3) 제출자료

- (필수 제출) 신청서, 심의발표자료(PPT), 건축기획 자료, 설계지침서(설계공모시) 또는 제안요청서(입찰진행시), 과업내용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방침서
- (해당 시 제출) 사전검토 의견서 조치결과, 사전절차결과(타당성조사/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도시계획시설 변경관리심의 또는 사전협의/건축사업 적정성 검토 등)

3) 업무흐름도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사항 심의, 자문

-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음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
-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함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제2절 분리발주 제도

《 분리발주의 원칙적 금지 》

○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가능

①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1. 공사

1) 전기공사

(1) 관계규정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2) 주요내용

- (원칙)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공사

(1) 관계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2) 주요내용

- (원칙)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됨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3) 소방공사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2) 주요내용

- (원칙)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함
-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하지 않아도 됨
  ·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그밖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용역 · 물품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관계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2)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국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이라 하더라도 추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여 100톤 이상이 된다면 추가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분리발주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 선택 가능하나, 분리발주 권고 이행
이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분리발주 권고 이행

2) 소프트웨어 제품

(1) 관계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2)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인 사업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금액기준없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포함)
	단일 5천만원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구매로 5천만원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품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제품(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기술(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직접구매 비 대 상	·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또는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하거나 직접 공급시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직접 공급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물품 · 용역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 주요내용

-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아래의 사항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 검토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물품·용역·공사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 유권해석, 행정안전부(2019) 》

〈질의〉 용역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용역으로 통합발주 가능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①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②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③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④ 계약이행 관리의 효율성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를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 목적물의 유형, 하자 책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1) 관계규정 및 추진배경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6조
- 甲乙관계 혁신대책(서울시, 2014)
- 산하기관 계약분야 갑을관계 혁신 위한 부당계약 모니터링 시행 계획(서울시, 2016)

(2) 추진배경

- 서울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지시,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간혹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갑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계약 근절 제도 시행

2) 주요내용

(1)「부당계약 체크리스트」시행

- 서울시 전기관의 부당계약 사례를 유형화하여 10가지 항목의 발주부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제작
- 사업담당자는 사업 발주 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부당계약 포함 유무를 자가진단한 후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

제4절 직접생산 확인 제도

1) 개요

(1) 관계규정

- 판로지원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낙찰 후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2) 대상 및 방법

(1) 대상

- 대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대상계약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주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 **용역**
- 건물청소, 승강기유지보수, 도로여객운송, 행사·축제 기획및대행,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 소프트웨어사업, 측량, 디자인, 시설물경비, 동영상제작 서비스 등

○ **물품**
- 인쇄물, 도서, 포스터, 현수막, 조명기구,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2) 방법

-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
  ※ www.smpp.go.kr 〉 정보조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회
-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쟁계약 : 계약 의뢰 공문에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재
  ② 수의계약 :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여부 확인

제5절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1. 사전규격 공개

1)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서울시, 2017)

(2) 주요내용

-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

2) 대상 및 방법

(1) 대상

- (원칙)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신규사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이어도 공개 대상
-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공개절차 생략 가능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 포함) 또는 농·축·수산물

(2) 방법

-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은 5일(긴급 3일),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물품은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용역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내용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제출된 의견이 공사 추정가격 70억원, 용역·물품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서울계약마당〉을 통해서도 사전규격공개 정보 확인 가능

2. 발주계획 등록

1)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업 발주계획을 미리 등재하여 계약에 대한 업체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

2) 대상 및 방법

(1) 대상

- 모든 계약

(2) 시기

- (원칙) 분기별 등록
- (예외) 누락 자료는 계약 의뢰 전까지 등록

(3) 방법

- 부서별 서무 담당자가 발주계획 수합하여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등록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 상단메뉴 '계약정보관리'
⇒ 좌측 '발주계획관리' ⇒ 발주 예정사업 리스트 업로드 후 저장

제6절 공법선정위원회

1)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부시장방침 제51호, '21.3.25.)
-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부시장방침 제231호, '24.8.27.)

(2) 주요내용

-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공법선정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2) 대상 및 방법

(1) 심의대상

- (원칙)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음

- 공법선정 전담부서 운영 : 사업부서(정량평가)+기술심사담당관(정성평가)
  · 신기술·특허 공종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법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용시기

계획단계	설계단계	보상 및 공사발주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설계 입찰공고 ‣ 기본·실시설계	‣ 토지보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공사발주	‣ 공사시행, 준공 ‣ 운영 및 유지관리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주요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공고

- (방법)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 (기간) 최소 7일(긴급공고 또는 재공고 5일)

(2)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예비명부)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 작성
- (위원선정) 해당분야 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제안참여자 추첨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위원회) 공법의 안전성·디자인 등 정성적 평가
- (평가)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중위평가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결과 공개

- 평가 위원명단, 위원별 세부평가점수 공개(평가점수에 위원명 미공개 가능)

(4) 업무처리 흐름도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발주부서)**	·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발주부서 및 외부전문가)**	·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토(필요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	
평가기준 확정 **(발주부서)**	·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발주부서)**	·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7일 이상(긴급 5일)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 기술보유자가 선정공고에 따라 제안서 제출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발주부서 및 참여업체)**	· (위원) 국가·타지자체 공무원, 해당분야 계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7인 이상 외부위원 · (위원선정)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3배수 중 제안참여자 추첨으로 선정 · (위원회) 제안참여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 평가
↓	
공법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 (위원회)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	
평가결과 공개 **(발주부서)**	· 제안서를 제출한 공법의 평가점수 공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발주부서)**	· 최고점인 자와 사용협약 체결

제7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설업역 규제폐지]

(1) 관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2) 주요내용

-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함

· (전문→종합)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전문공사 업종간 분담이행방식은 '27년부터 시행 예정

· (종합→전문) 종합업체는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27년부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이 허용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

* 주요부분의 대부분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 각 동의 건축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해 '22년부터 종전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 운영

《 전문건설업 업종통폐합(대업종화) 》

○ **주요 내용(세부 내용 참고)**

- 종전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2년부터 14개로 통합 운영 및 주력분야 제도 도입

※ 주력분야 제도

-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전문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 선택 가능 (발주부서에서 계약 의뢰시 선택)

(3)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세부내용('25. 6. 2. 기준)

현업종 · 주력분야 명칭	현재 전문업종 등록기준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1. 토공사	2인	1.5억	1.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2인	1.5억
2. 포장공사	3인	2억			
3. 보링·그라우팅 · 파일공사	2인	1.5억			
4. 실내건축공사	2인	1.5억	2.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1.5억	3.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	1.5억			
7. 도장공사	2인	1.5억	4. 도장·습식 · 방수·석공사업	2인	1.5억
8. 습식·방수공사	2인	1.5억			
9. 석공사	2인	1.5억			
10. 조경식재공사	2인	1.5억	5.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	2인	1.5억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1.5억			
12. 철근·콘크리트공사	2인	1.5억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인	1.5억	7. 구조물해체 · 비계 공사업	2인	1.5억
14. 상·하수도설비공사	2인	1.5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
15. 철도·궤도공사	5인	2억	9. 철도·궤도공사업	5인	1.5억
16. 철강구조물공사	4인	2억	10.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1.5억
17. 수중공사	2인	1.5억	11. 수중 · 준설공사업	2인	1.5억
18. 준설공사	5인	7억			
19. 승강기설치공사	2인	1.5억	12. 승강기 · 삭도공사업	2인	1.5억
20. 삭도설치공사	5인	2억			
21. 기계설비공사	2인	1.5억	13.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	2인	1.5억
22. 가스시설공사(1종)	3인	1.5억			
23. 가스시설공사(2종)	1인	-	14. 가스 · 난방공사업	1인	-
24. 가스시설공사(3종)	1인	-			
25. 난방공사(1종)	2인	-			
26. 난방공사(2종)	1인	-			
27. 난방공사(3종)	1인	-			

제8절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제도 등

1. 대행계약 제도

1) 개요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2) 주요내용

-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본청 재무과에서 대행하여 체결하는 제도

  ※ 수의계약(1인견적, 전자공개) 및 변경계약은 사업소 자체 진행

- 사업소 소속 사업담당자는 대행계약 대상 사업 발주 시, 계약의뢰 공문을 본청 재무과로 송부(대행계약은 체결 후 각 사업소로 이관)

2) 대상

- 전자공개 수의계약 범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초과 입찰

구분	대행계약 범위
공사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재정합의 제도

1) 개요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2) 주요내용

- 사업담당자는 예산 집행을 위한 지출품의 시 한도액 구분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를 받아야 함

- 사업담당자는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 계약담당자의 소속 팀 팀장(계약1·2팀장)의 협조결재를 받아 재정합의 추진

※ 장기계속계약 : 총차 계약금액 기준으로 재정합의

2) 대상

구 분	대 상	
공 사	건당 10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용역 또는 제조	건당 5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5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물 품	건당 2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2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 계약 재정합의 방법

- 합의권자가 재무과장인 경우: 계약담당사무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재무과장 합의
- 합의권자가 계약담당사무관인 경우: 계약담당사무관의 합의

3. 직무위임 제도

1) 개요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2) 주요내용

-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에 대해 재무관의 직무를 위임하는 제도

2) 대상(본청 기준)

구 분	대상	
공 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재무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분임재무관
용역 또는 제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재무관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분임재무관
물 품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재무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분임재무관

4. 계약의뢰 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 사업담당자는 계약 의뢰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재무과) 공문 의뢰

구 분	첨부서류	확인사항
1인견적 수의계약	-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기재) - 사업 시행 방침서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 산출기초조사서 -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견적서 등)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각서 -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 -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등록증	① 부서별 사전 절차 ② 발주계획 〈서울계약마당〉 등록 ③ 부당계약 여부 확인 ④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 실·국·본부 및 사업소 기관별 동일업체와 4회 초과 및 시 전체 9회 초과 체결 여부 ⑤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⑥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기재, 견적서 제출 자격 명시) - 사업 시행 방침서 - 과업지시서, 시방서, 안내공고문(안) - 산출기초조사서 -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견적서 등) -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 -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① 부서별 사전 절차 ② 발주계획 〈서울계약마당〉 등록 ③ 부당계약 여부 확인 ④ 용역·물품 사전규격 공개 (신규사업의 경우) ⑤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적격심사	-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기재, 입찰참가 제출 자격 명시) - 사업 시행 방침서 - 과업지시서, 시방서, 공고문(안) - 산출기초조사서 -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견적서 등) -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 긴급공고사유서 (긴급공고시) - 제한·지명경쟁사유서 (제한·지명경쟁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 -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① 부서별 사전 절차 ② 발주계획 〈서울계약마당〉 등록 ③ 부당계약 여부 확인 ④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사전규격 〈나라장터〉 공개
협 상 에 의한 계약	-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기재, 입찰참가 제출 자격 명시) - 사업 시행 방침서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안) - 산출기초조사서 -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견적서 등) -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 긴급공고사유서 (긴급공고시) - 제한·지명경쟁사유서 (제한·지명경쟁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 -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① 부서별 사전 절차 ② 발주계획 〈서울계약마당〉 등록 ③ 부당계약 여부 확인 ④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사전규격 〈나라장터〉 공개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table>
<tr><th>단계</th><th>확인사항</th></tr>
<tr><td>사 업
기본구상</td><td>〈사업의 기본적 개요 작성〉
① 사업 관련 개별법령 검토 (예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② 과업 내용 검토
③ 사업 예산 검토, 추정가격 작성</td></tr>
<tr><td>부 서 별
사전절차</td><td>〈사업의 특성, 금액 등에 따른 사전심의 절차〉
- 기술용역타당성(기술심사담당관)
- 정보화심의(정보시스템과)
-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 계약심의위원회(재무과)
- 공법선정위원회(발주부서)
-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 홍보물·영상물·간행물(홍보담당관)
- 원가심사(계약심사과) 등</td></tr>
<tr><td>발주계획
등 록</td><td>〈사업 발주계획 「서울계약마당」 등록〉
- (원칙) 분기별, (예외) 수시</td></tr>
<tr><td>계약발주
방침수립</td><td>〈계약방법 검토〉
① 경쟁방법 검토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추정가격 기준)</th></tr><tr><td rowspan="2">수의
계약</td><td>1인견적</td><td>공사·용역·물품 2천 이하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법적 사유</td></tr><tr><td>2인이상견적
(전자공개)</td><td>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기타공사 1억 6천,
용역·물품 1억 이하</td></tr><tr><td rowspan="3">경쟁
계약</td><td>일반경쟁</td><td>타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 등 기본 요건만 필요</td></tr><tr><td>제한경쟁*</td><td>지역, 실적, 기술, 중소기업자 등 별도 요건 필요</td></tr><tr><td>지명경쟁</td><td>설비, 기술 등 보유한 사전 지명자만 입찰 가능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적용)</td></tr></table>*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참고
② 낙찰자결정방법 검토 : 적격심사, 협상계약, 2단계입찰 등
③ 계약체결방법 검토 : 단독계약, 공동계약 (공동, 분담, 혼합)
〈과업내용 검토〉
-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통해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검토</td></tr>
<tr><td>사전규격
공 개</td><td>〈사전규격 「나라장터(G2B)」 공개〉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및 신규 용역·물품 (수의계약 제외)</td></tr>
<tr><td>지출품의
계약의뢰</td><td>〈이호조 지출품의〉
〈재무과 재정합의〉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참고하여 계약의뢰 시 협조결재</td></tr>
</table>

제9절 계약 맞춤형 매뉴얼

1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 **개념**
- 경쟁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발주자가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3조, 제33조의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 수의계약 업체 선정과정 개선 추진계획

1. (발주부서) 사전준비단계

1) 부서별 사전절차 (※ 매뉴얼 제2장 제1절 참고)

구분	부서	구분	부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심의	정보시스템과
학술용역심의	조직담당관	홍보물·영상물·간행물심의	홍보담당관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재무과	기타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2) 발주계획 등록 (※ 매뉴얼 제2장 제5절 참고)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등록 (원칙 : 분기별, 예외 : 계약의뢰 전까지 등록)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 상단메뉴 '계약정보관리' ⇒ 좌측 '발주계획관리' ⇒ 발주 예정사업 리스트 업로드 후 저장

3) 부당계약 문구 검토 (※ 매뉴얼 제2장 제3절 참고)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활용)

4) 수의계약 배제 사유 등 검토

5) 해당업체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여부 확인

- 1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증명서 보유 여부 확인

2. (발주부서)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1) 법적 가능 여부 확인

(1)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구분	공사	용역	물품
일반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물품만)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충족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계약이 아닌 소규모 지출건 처리 방법 》

○ 일상경비로 가능한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등

-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일상경비로 부서 내 집행 가능(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 제외)

○ 300만원 이하(부가세 포함) 물품·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일반지출 가능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32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외)

- 천재지변, 특허공법, 생산자·소지자 1인 등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2) 특정업체 5회 이상 계약 여부 확인

- (원칙) 실·국·본부 및 기관별 동일업체와 연 4회 초과 수의계약 금지, 시 전체 동일업체와 연 9회 초과 수의계약 금지(※ 자치구는 횟수제한에 포함 안함)
- (예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 특허 업체 등 이행 가능업체가 1인인 경우, 시행령 26조 공고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 (1차)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발주담당자 확인 후, (2차) 계약상대자로부터 市와의 계약 건수 직접 확인
- 업체에 계약 건수 9회 초과 시 계약체결이 안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계약체결 전 계약담당자 최종 확인 시 횟수 위반될 경우 반려 및 제외 요청

3)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무발주 대상 확인

- 폐기물 처리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의 경우 1인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무발주 대상

3. (발주부서) 계약 의뢰 (발주부서 → 계약부서)

1) 구비서류 확인

① 기안문 (e-호조 품의번호 반드시 기재)	⑧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② 사업 시행 방침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③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⑩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④ 산출기초조사서	⑪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⑤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 (견적서 등)	⑫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⑥ 수의계약 사유서	⑬ 수의계약 각서 등
⑦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2) 문서 발송

(1) 재정합의

- 결재경로 설정 시 하단에 따라 협조 결재

구분	금액	합의자
공사	건당 10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용역, 제조	건당 5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5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물품	건당 2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2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2) 녹색제품 구매 심사

- '녹색제품 구매·적용가능검토서' 첨부하여 기후환경정책과 협조

(3) 수신자 : 재무과장

4. (계약부서) 가격협의(수의시담)

- (원칙)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원가심사금액, 예산 등 고려하여 업체와 가격협의를 통해 최종 계약체결 금액 결정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획」(서울시, 2009)

- (예외)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가격조정 금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17. 9. 1. 이후 공모 공고분부터 시행)

5. (계약부서) 나라장터에 업체명, 가격협의 금액 입력

※ 생략가능

6. (계약업체) 나라장터에 가격협의 금액 제출

※ 생략가능

7. (발주부서) 최종 산출내역서 확인

- 업체가 가격협의로 조정된 계약금액에 맞게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는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부서로 산출내역서 송부

8. (계약부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송신

9.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1) 계약보증서

구분	보증금액
원칙	· 공사·용역·물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행안부 고시) 적용기간에는 5% 이상(~'26.6.30.종료)
예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2) 인지세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10. (계약부서) 계약체결

11. (계약업체) 착수계 제출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 발주부서 1부, 계약부서 1부 제출 (전자제출 원칙)

2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매뉴얼

○ **개념**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명칭은 '수의'지만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성격이 유사함. 다만,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없이 계약 체결한다는 점, 공고기간이 짧다는 점 등임.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1. (발주부서) 사전준비단계

1) 부서별 사전절차 (※ 매뉴얼 제2장 제1절 참고)

구분	부서	구분	부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공법선정위원회	발주부서
정보화심의	정보시스템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재무과
학술용역심의	조직담당관	홍보물·영상물·간행물심의	홍보담당관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기타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2) 발주계획 등록 (※ 매뉴얼 제2장 제5절 참고)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등록 (원칙 : 분기별, 예외 : 누락 자료 수시 등록)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 상단메뉴 '계약정보관리'
⇒ 좌측 '발주계획관리' ⇒ 발주 예정사업 리스트 업로드 후 저장

3) 부당계약 문구 검토 (※ 매뉴얼 제2장 제3절 참고)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활용)

4) 사전규격 공개 (※ 매뉴얼 제2장 제5절 참고)

- 용역·물품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2. (발주부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주요내용(추정가격 기준)			
유 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 준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6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 (발주부서) 계약 의뢰 (발주부서 → 계약부서)

1) 구비서류 확인

① 기안문 - e-호조 품의번호 반드시 기재 - 견적서 제출 자격 기준 명시 (면허 등) ② 사업 시행 방침서 ③ 과업지시서, 시방서, 안내공고문(안) 등	④ 산출기초조사서 ⑤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 (견적서 등) ⑥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⑧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2) 문서 발송

(1) 재정합의

- 결재경로 설정 시 하단에 따라 협조 결재

구분	금액	합의자
공사	건당 10억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용역, 제조	건당 5억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5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물품	건당 2억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2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2) 녹색제품 구매 심사

- '녹색제품 구매·적용가능검토서' 첨부하여 기후환경정책과 협조

(3) 수신자 : 재무과장

4. (계약부서) 나라장터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기간

구 분	기 간
원 칙	3일 이상 (공휴일·토요일 제외)
예 외	신규사업의 경우 5일 이상 (공휴일·토요일 제외)

※ 기간은 공고문 게시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2) 첨부서류

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②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③ 설계물량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 ④ 입찰유의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⑤ 계약 일반조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⑥ 서울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⑧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5. (계약업체/계약부서) 나라장터 투찰/개찰

- 1순위 업체부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계약법 제33조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상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필요

※ 제1장 제3절 계약의 분류. 3.경쟁형태별 분류. 2)수의계약 참고

6. (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9.745%, 용역·물품은 88%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7. (발주부서) 최종 산출내역서 확인

- 업체가 투찰한 계약금액에 맞게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는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부서로 산출내역서 송부
-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징구 후 계약부서로 제출

8. (계약부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송신

9.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1) 계약보증서

구분	보증금액
원칙	· 공사·용역·물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는 5% 이상(~'26.6.30.종료)
예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2) 인지세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비고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10. (계약부서) 계약체결

11. (계약업체) 착수계 제출

- 발주부서 1부, 계약부서 1부 제출 (전자제출 원칙)

3 적격심사 매뉴얼

○ **개념**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이행실적, 재무상태 등)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제4장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

1. (발주부서) 사전준비단계

1) 부서별 사전절차 (※ 매뉴얼 제2장 제1절 참고)

구분	부서	구분	부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공법선정위원회	발주부서
정보화심의	정보시스템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재무과
학술용역심의	조직담당관	홍보물·영상물·간행물심의	홍보담당관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기타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2) 발주계획 등록 (※ 매뉴얼 제2장 제5절 참고)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등록 (원칙 : 분기별, 예외 : 누락 자료 수시 등록)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 상단메뉴 '계약정보관리'
  ⇒ 좌측 '발주계획관리' ⇒ 발주 예정사업 리스트 업로드 후 저장

3) 부당계약 문구 검토 (※ 매뉴얼 제2장 제3절 참고)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활용)

4) 사전규격 공개 (※ 매뉴얼 제2장 제5절 참고)
- 용역·물품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2. (발주부서) 적격심사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주요내용		
유 형	공사	용역	물품
기 준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일반적으로 상기 금액범위인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상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경우에도 적격심사 가능

3. (발주부서) 계약 의뢰 (발주부서 → 계약부서)

1) 구비서류 확인

① 기안문 - e-호조 품의번호 반드시 기재 -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시 (면허 등) ② 사업 시행 방침서 ③ 과업지시서, 시방서, 공고문(안) 등 ④ 산출기초조사서	⑤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 (견적서 등) ⑥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⑦ 긴급공고 사유서 (긴급공고시) ⑧ 제한, 지명경쟁 사유서 (제한, 지명경쟁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⑩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2) 문서 발송

(1) 재정합의

- 결재경로 설정 시 하단에 따라 협조 결재

구분	금액	합의자
공사	건당 10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용역, 제조	건당 5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5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물품	건당 2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2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2) 녹색제품 구매 심사

- '녹색제품 구매·적용가능검토서' 첨부하여 기후환경정책과 협조

(3) 수신자 : 재무과장

4. (계약부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

1) 기간

구 분	세부 구분		기 간
공사	일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국제입찰대상 미만	30일
		국제입찰대상 이상	40일
	긴급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용역	일반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긴급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물품	일반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긴급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 기간은 공고문 게시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2) 첨부서류

① 입찰공고문	⑥ 공사·용역·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②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⑦ 서울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③ 설계물량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④ 공사는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⑤ 입찰유의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5. (계약업체/계약부서) 나라장터 투찰/개찰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 나라장터를 통해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

6. (계약부서) 적격심사

1) 1순위 업체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① 각서 ② 적격심사신청서 ③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④ 수행능력평가 증빙자료 - 경영상태, 이행실적 등	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 ⑦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등

※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는 다를 수 있음

2)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원칙) 7일 이내 (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 (예외)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 15일 이내 (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7일 이내 (1회 가능) (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평가	(원칙) 7일 이내 (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 3일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재난복구공사는 2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 받은 자 ② 선 순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7. (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8. (발주부서) 최종 산출내역서 확인

- 업체가 투찰한 계약금액에 맞게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는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부서로 산출내역서 송부

9. (계약부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송신

10.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1) 계약보증서

구분	보증금액
원칙	· 공사·용역·물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는 5% 이상(~'26.6.30.종료)
예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2) 인지세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11. (계약부서) 계약체결

12. (계약업체) 착수계 제출

- 발주부서 1부, 계약부서 1부 제출 (전자제출 원칙)

4 협상에 의한 계약 매뉴얼

○ **개념**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강화 대책

1. (발주부서) 사전준비단계

1) 부서별 사전절차 (※ 매뉴얼 제2장 제1절 참고)

구분	부서	구분	부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공법선정위원회	발주부서
정보화심의	정보시스템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재무과
학술용역심의	조직담당관	홍보물·영상물·간행물심의	홍보담당관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기타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2) 발주계획 등록 (※ 매뉴얼 제2장 제5절 참고)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등록 (원칙 : 분기별, 예외 : 누락 자료 수시 등록)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 상단메뉴 '계약정보관리'
  ⇒ 좌측 '발주계획관리' ⇒ 발주 예정사업 리스트 업로드 후 저장

3) 부당계약 문구 검토 (※ 매뉴얼 제2장 제3절 참고)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활용)

4) 사전규격 공개 (※ 매뉴얼 제2장 제5절 참고)
- 용역·물품의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5) 제안요청서 작성

2. (발주부서)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주요내용
용역·물품	예술성,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단순노무용역, 단순물품구매 제외)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지식기반사업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지식기반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사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3.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 자격요건

-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서울시 본청·사업소 공무원은 위원 자격 없으나,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위원 자격 있음)
· 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구성방법

(1) 위원회 구성

- 위원 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장 포함),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함

(2) 예비명부 구성

① 구성 기준

- 위원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30인 이내)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함

② 구성 방법

-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

※ 외부 기관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해야 함

-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후 비치하여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보안각서는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4. (발주부서) 공고 의뢰 (발주부서 → 계약부서)

1) 구비서류 확인

① 기안문 - e-호조 품의번호 반드시 기재 -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시 (면허 등) ② 사업 시행 방침서 ③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공고문(안) ④ 산출기초조사서	⑤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 (견적서 등) ⑥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⑦ 긴급공고 사유서 (긴급공고시) ⑧ 제한, 지명경쟁 사유서 (제한, 지명경쟁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⑩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2) 문서 발송

(1) 재정합의

- 결재경로 설정 시 하단에 따라 협조 결재

구분	금액	합의자
공사	건당 10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용역, 제조	건당 5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5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물품	건당 2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재무과장
	건당 2억원 미만	담당사무관(계약1·2팀장)

(2) 녹색제품 구매 심사

- '녹색제품 구매·적용가능검토서' 첨부하여 기후환경정책과 협조

(3) 수신자 : 재무과장

5. (계약부서) 입찰공고 게시

1) 기간

구 분	세부 구분			기 간
일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원칙	일반사업	10일
		예외	신규사업	15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긴급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0일

※ 기간은 공고문 게시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2) 첨부서류

① 입찰공고문 ②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③ 설계물량서 등 그 외 필요한 서류 ④ 입찰유의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⑤ 계약 일반조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⑥ 서울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⑧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6. (계약업체) 나라장터 가격 투찰

7. (계약업체) 제안서 등 제출

1) 제출방법

- 발주부서에 제안서, 가격제안서(밀봉) 직접 제출

  ※ 가격제안서상 금액은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2)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름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구성인원 정수의 2명 이상을 추가 선정해야함

※〈예〉위원 수 7인일 경우 예비평가위원 2명 선정 필요

8. (발주부서) 정량평가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에 정량평가 실시

9.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 개최요건

- 위원장 포함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는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2) 위원장

-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위원장도 제안서 평가 참여 가능

3) 평가위원 사전 교육 및 보안각서 징구

- 발주담당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 유의사항 사전 교육 및 보안각서 징구

4)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실시

- 업체의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 정성평가 시행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해야 함
-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필요시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 가능

5) (발주부서) 가격평가 실시

- 밀봉해두었던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6) (발주부서) 최종점수 산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가격평가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정

7)(발주부서) 회의록 작성

-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 작성

10. (발주부서) 제안서평가결과 등록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 등록

11. (발주부서)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정 통보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위와 일정 통보

12. (발주부서) 1순위 협상적격자와 기술협상 실시

- 과업 내용에 대해 협상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불성립시, 2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13. (발주부서) 1순위 협상적격자와 가격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제안내용 가감에 따라 가격조정
-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능하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조정 불가
- 협상가격서 및 협상입찰조서 징구

14.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및 협상 결과 통보 (발주부서 → 계약부서)

- 구비서류 확인

① 기안문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방침
③ 협상서 및 협상 결과가 반영된 과업지시서 등

15. (발주부서) 최종 산출내역서 확인

- 업체가 가격 협상한 계약금액에 맞게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는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부서로 산출내역서 송부

16. (계약부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송신

17.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1) 계약보증서

구분	보증금액
원칙	· 공사·용역·물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는 5% 이상(~'26.6.30.종료)
예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2) 인지세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18. (계약부서) 계약체결

19. (계약업체) 착수계 제출

- 발주부서 1부, 계약부서 1부 제출 (전자제출 원칙)

5 선금 지급 매뉴얼

○ **개념**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부분준공) 대가 지급 전에 미리 지급되는 대금의 일부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1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 선금 지급한도 확대에 따른 세부기준 시행계획(서울시, 2024)

1. (계약업체) 선금 신청

1) 선금 신청 가능 여부 판단

(1) 지급대상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계약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선금 불가)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 계약목적 달성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의무지급률 산정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함

(2) 신청 금액

-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30%)은 의무적으로 지급. 다만, 계약상대자가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최초 선금 신청시 일정률(30%)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신청 서류 (전자제출 원칙)

① 선금신청서	
② 각서	⑥ 대가청구서
③ 선금사용계획서 (발주부서 경유)	⑦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④ 선금보증서	⑧ 세금계산서
⑤ 선금전용계좌 사용확약서	

※ 선금 보증서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2. (계약부서) 선금 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3. (계약업체) 선금 정산

1) 선금정산식

- 기성(부분준공)·기납 대가지급시, 이미 선금이 지급되었다면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 후 기성(부분준공)·기납 대가지급이 가능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이 100원인 계약에서,
선금이 40원 지급되었고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80원이라고 한다면,
선금정산액 = 40원 × (80원/100원) = 32원이므로, 계산식에 따라 선금정산액 최소 32원 이상 정산해야 함. 만약 32원을 정산 시 선금정산액을 제외한 금액 48원(=80원 - 32원) 대금 지급

2) 선금정산방법

- 선금정산은 지급된 선금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것으로,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6 변경계약 매뉴얼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7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1. (발주부서)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구 분		세 부 구 분	
공사	설계 변경	설계서의 정정·보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상태 상이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
		발주기관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추가공사 발생, 특정공종 삭제 등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관급 → 사급, 사급 → 관급
	계약 금액 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전쟁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
용역	과업 내용 변경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계약 금액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구 분		세 부 구 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전쟁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소, 검침,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물품	수량 조절	(원칙)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 (예외)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 동의 얻어 100분의 10 범위 초과	
	계약 금액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전쟁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발주부서) 사전절차 확인 및 이행

구분	부서	심의대상(심의시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재무과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원가심사(계약심사)	계약심사과	계약금액(최초계약금액) 20억원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정보화심의 (SW과업심의)	정보시스템과	SW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학술용역심의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의 주요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학술용역의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경우
기타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3. (발주부서) 계약업체와 합의각서 작성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4. (발주부서) 변경계약 의뢰 (발주부서 → 계약부서)

- 구비서류 확인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① 기안문 ② 방침서 ③ 합의각서	④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기간 변경시) ⑤ 산출내역서(금액 변경시) ⑥ 과업내용서(과업 변경시) ⑦ 공동수급협정서(비율 등 변경시) ⑧ 사전심의 결과(사전절차 대상인 경우)

5. (계약부서) 나라장터 변경계약서 초안 송신

6.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1) 계약보증서

구 분	보증금액
원 칙	· 공사·용역·물품 : 계약금액의 10% 이상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는 5% 이상(~'26.6.30.종료)
예 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2) 인지세 : 증액된 계약금액만큼 산정하여 징구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7. (계약부서) 변경계약체결

☞ 제5장 제3절 계약의 변경

7 검사 및 대가지급 매뉴얼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17조~제1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1. (계약업체) (부분)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업체 → 계약부서)

1) 제출기한

- 준공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준공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함

2)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부분)준공신고서 (발주부서 경유)
- 대가청구서 (제출일자 공란으로 하여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3) 유의사항 : 기존에 선금이 지급되었던 경우

- 기존에 선금이 지급되었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 후 (부분)준공금 지급이 가능함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 이 경우 (부분)준공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대가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름. (부분)준공신고서에는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는 결과물만큼의 금액을 기재하고, 대가청구서에는 (부분)준공액에서 선금정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재

※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이 100원인 계약에서, 선금이 40원 지급되었고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80원이라고 한다면 선금정산액 산식에 따라 선금정산액은 최소 32원임. 32원을 정산하는 경우 (부분)준공신고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80원이고, 80원에서 선금정산액 32원을 빼면 대가청구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48원임

2. (계약부서)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계약부서 → 발주부서)

1)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2) e-호조 상 검사(수) 요청 등록

- 선금정산 내역이 있다면 정산 금액 기재

(※ 계약관리 → 검사(수)관리 → 검사(수)요청 → 검사(수)요청 등록)

3. (발주부서) 검사 및 준공검수조서 발송 (발주부서 → 계약부서)

1) 검사

- 계약업체의 준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물을 검사해야 함

2) (부분)준공검수조서 발송

(1) 기관별 검사 공무원

구분	공사·용역		물품	
	금액	검사	금액	검사
본 청	2억원 미만	·주관담당자 6급이하 2명	2천만원 미만	·주관담당자 6급이하 2명
	2억원 이상	·주관담당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2천만원 이상	·주관담당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본 부	1억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하 2명	2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하 2명
	1억~10억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상 1명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2천~5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상 1명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10억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담당주사 ·주관부서 6급이하 1명	5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직속기관·사업소	2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직원 2명	1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직원 2명
	2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 ·주관부서 직원 1명	1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 ·주관부서 직원 1명
시의회 사무처	2억원 미만	·주관과 담당자 6급이하 2명	2천만원 미만	·주관과 담당자 6급이하 2명
	2억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2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2) 검수조서 발송 및 e-호조 상 등록

- 준공검수조서(기성부분검수조서)를 재무과로 발송
- e-호조상 검사(수) 등록 및 다중분개

(※ 계약관리 → 검사(수)관리 → 검사(수) → 검사(수) 조회 및 등록)

4. (계약부서) 대가 지급 (계약부서 → 계약업체)

1) 지급 기한

- (부분)준공검수조서 확인 후, 계약업체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 지급

2) 확인 서류

① 대가청구서 ② 세금계산서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G2B 조회) -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④ 4대보험 완납증명서(G2B 조회)	⑤ (하자보증 필요 시) 하자보증서 ⑥ (선금, 보증금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⑦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입증서류 ⑧ (하도급의 경우)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 ⑨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매뉴얼

○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제7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37조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

1) 제한 대상

- 계약상대자, 입찰자, 견적서 제출자

※ 계약상대자, 입찰자,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

2) 제한 기준

(1) 제한 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가중사유

- 부정당업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 해당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유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 가능

(3) 경감사유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가능
-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 제한기간 1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제한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참고

2. (발주부서)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1)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사전통지

2) 청문 실시 ※ 행정절차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3. (발주부서)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1) 위원회 개최일

-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제출서류

- 제안이유, 사업개요, 계약상대자 인적사항, 추진경위, 제재 요청기간, 청문 증빙자료 등

  ※ 매월 전 부서로 시행하는 재무과 공문에 첨부된 제안서 샘플 참고하여 작성

4.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계약심의위원들이 발주부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제재기간 심의

5. (발주부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 발주부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지

1) 본청

- 발주부서에서 부정당업자에 제한 처분 통지 공문 시행 후 G2B 직접 게재
- 제한처분 통지 및 G2B 게재 후 그 결과롤 본청 재무과로 통보

2) 사업소

- 발주부서에서 부정당업자에 제한 처분 통지 공문 시행 및 G2B 직접 게재 (처분서에 반드시 시장 직인 날인한 후 통지)

  ※ 사업소장 명의로 처분하는 것은 취소 사유이므로 주의

- 제한처분 통지 및 G2B 게재 후 그 결과롤 본청 재무과로 통보

6. (발주부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후관리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청구된 경우 즉시 재무과로 통보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순 서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제2절 적격심사

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

제4절 수의계약

제5절 2단계 입찰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구 분		개 념	근 거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이행실적, 재무상태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안전성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종합평가 낙찰제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희망수량입찰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7조
2단계 입찰	2단계 경쟁입찰(원칙)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한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1단계로 규격(기술)입찰 실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해 2단계로 가격입찰 실시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예외)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가능한 결정 방법으로 유사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
설계공모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2. 계약목적물 · 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공 사</th><th>용 역</th><th>물 품</th></tr>
<tr><td colspan="2" rowspan="2">1인견적 수의</td><td colspan="3">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td></tr>
<tr><td colspan="3">(예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물품만)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2">제한
최저가 낙찰제
(전자공개수의)</td><td>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td><td colspan="2">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이하</td></tr>
<tr><td colspan="3">※ 일반적으로 상기 금액범위인 경우 전자공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가능</td></tr>
<tr><td colspan="2" rowspan="2">적격심사 낙찰제</td><td>(종합)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td><td colspan="2">추정가격 1억원 초과</td></tr>
<tr><td colspan="3">※ 일반적으로 상기 금액범위인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나, 상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경우에도 적격심사 가능</td></tr>
<tr><td colspan="2">종합평가 낙찰제</td><td>추정가격 300억원 이상</td><td>없음</td><td>없음</td></tr>
<tr><td colspan="2">협상에 의한 계약</td><td>없음</td><td>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해당하는 경우
(단순노무 제외)</td><td>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해당하는 경우
(단순물품구매 제외)</td></tr>
<tr><td colspan="2">희망수량입찰</td><td>없음</td><td>없음</td><td>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9조 해당하는 경우</td></tr>
<tr><td colspan="2">유사물품의
복수입찰</td><td>없음</td><td>없음</td><td>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 해당하는 경우</td></tr>
<tr><td rowspan="2">2단계
입찰</td><td>2단계
경쟁입찰
(원칙)</td><td rowspan="2">없음</td><td rowspan="2">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해당하는 경우
(단순노무 등 제외)</td><td rowspan="2">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해당하는 경우</td></tr>
<tr><td>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예외)</td></tr>
<tr><td colspan="2">설계공모</td><td>없음</td><td>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해당하는 경우</td><td>없음</td></tr>
</table>

※ 수의계약은 낙찰자 결정방법이 아니지만 편의상 상기 구분표에 포함

제2절 적격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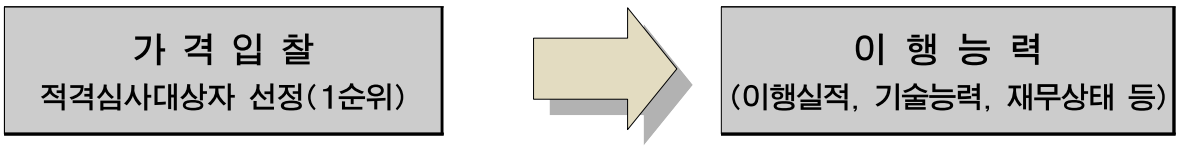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개념

-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 외에 비가격요소인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우선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1순위 적격대상자의 이행능력(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임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3) 적용범위

구 분	적 용 범 위
공 사	-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
용 역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물 품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물품

※ 일반적으로 상기 금액범위인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나, 상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경우에도 적격심사 가능

4) 심사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만약 1순위 최저가격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달이면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실시

2. 사업별 적격심사 기준

구 분		적용기준
공 사	일 괄 입 찰 등 (일괄, 대안, 기술제안)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종합평가 낙찰제 (300억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PQ공사(18종)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공 사 (300억원 미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용 역	기 술 · 학 술 용 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일반폐기물처리용역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 반 용 역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교통신호제어기 유 지 보 수 용 역	-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하수도 검침용역	-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검침관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 품	일 반 물 품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중 소 기 업 자 간 경 쟁 물 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3. 낙찰하한율의 이해

1) 개념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의미함

2) 계약목적물·금액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기준)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유 형</th><th>하한율</th><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유 형</th><th>하한율</th></tr>
<tr><td rowspan="25">행정안전부</td><td rowspan="5">공사</td><td colspan="2">· 300억미만 100억이상</td><td>81.995</td><td rowspan="3">중소벤처기업부</td><td rowspan="3">물품</td><td colspan="2">10억이상</td><td>89.995</td></tr>
<tr><td colspan="2">· 100억미만 50억이상</td><td>87.495</td><td colspan="2">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td><td>89.995</td></tr>
<tr><td colspan="2">· 50억미만 30억이상</td><td>88.745</td><td colspan="2">고시금액 미만</td><td>89.995</td></tr>
<tr><td colspan="2">·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td><td>88.745</td><td rowspan="6">환경부</td><td rowspan="6">건설폐기물처리용역</td><td colspan="2">100억이상</td><td>72.995</td></tr>
<tr><td colspan="2">·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td><td rowspan="4">89.745</td><td colspan="2">100억미만 30억이상</td><td>77.995</td></tr>
<tr><td colspan="2">·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td><td colspan="2">30억미만 15억이상</td><td>82.995</td></tr>
<tr><td colspan="2">· 2억원 미만</td><td colspan="2">15억미만 5억이상</td><td>85.495</td></tr>
<tr><td rowspan="10">기술용역</td><td rowspan="3">PQ</td><td colspan="2">5억미만 2억이상</td><td>86.745</td><td colspan="2">2억미만</td><td>87.745</td></tr>
<tr><td colspan="2">10억이상</td><td>79.995</td><td rowspan="14">서울시</td><td rowspan="6">일반폐기물처리용역</td><td colspan="2">30억이상</td><td>72.995</td></tr>
<tr><td colspan="2">10억미만 5억이상</td><td>85.495</td><td colspan="2">30억미만 10억이상</td><td>77.995</td></tr>
<tr><td colspan="2">5억미만</td><td>86.745</td><td colspan="2">10억미만 5억이상</td><td>85.495</td></tr>
<tr><td rowspan="4">비PQ</td><td colspan="2">10억이상</td><td>79.995</td><td colspan="2">5억미만 2억이상</td><td>86.745</td></tr>
<tr><td colspan="2">10억미만 5억이상</td><td>85.495</td><td colspan="2">2억미만</td><td>87.745</td></tr>
<tr><td colspan="2">5억미만 2억이상</td><td>86.745</td><td colspan="3">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평가시
금액 관계 없이 87.745</td></tr>
<tr><td colspan="2">2억미만 1억이상</td><td>87.745</td><td rowspan="8">일반용역</td><td colspan="2">30억이상</td><td>72.995</td></tr>
<tr><td colspan="2">1억미만</td><td>87.745</td><td colspan="2">30억미만 10억이상</td><td>77.995</td></tr>
<tr><td rowspan="3">학술용역</td><td colspan="3">2억이상</td><td>80.495</td><td colspan="2">10억미만 5억이상</td><td>85.495</td></tr>
<tr><td colspan="3">2억미만 1억이상</td><td>80.495</td><td colspan="2">5억미만 2억이상</td><td>86.745</td></tr>
<tr><td colspan="3">1억미만</td><td>80.495</td><td colspan="2">2억미만</td><td>87.745</td></tr>
<tr><td colspan="2">보험용역</td><td>47.995</td></tr>
<tr><td rowspan="4">물품</td><td colspan="3">10억이상</td><td>80.495</td><td colspan="2">단순노무(금액 무관)</td><td>87.745</td></tr>
<tr><td colspan="3">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td><td>80.495</td><td rowspan="3">(참고)전자공개수의</td><td>공사</td><td>공사</td><td>89.745</td></tr>
<tr><td colspan="3">고시금액 미만</td><td>84.245</td><td>용역·물품</td><td>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td><td>88</td></tr>
<tr><td colspan="3">간행물평가기준</td><td>89.995</td><td>물품</td><td>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td><td>90</td></tr>
<tr><td colspan="6"></td><td>물품</td><td>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td><td>90</td></tr>
</table>

※ 상기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적격심사 기준 원문의 산식 확인 바람

《 더 알아보기 》

〈낙찰하한율 89.745%는 어떻게 도출되었을까?〉

<추정가격 5억원인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수행능력 평가 배점(2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80점)
*적격통과점수 95점

상기와 같은 공사 건이 있고, 현재 낙찰하한율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낙찰하한율은 기본적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기 건에서 수행능력 평가 배점이 20점이므로 20점 만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적격통과점수는 95점이므로 입찰가격평가에서는 75점을 받아야 적격심사에 통과하게 됩니다. 입찰가격평가에서 75점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입찰가격 산식을 풀었을 때 75점이 나오도록 투찰율(입찰가격/예정가격)을 구하면 됩니다.

<추정가격 5억원인 건설공사의 경우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80(\text{입찰가격평가 배점})-20(\text{수행능력평가 배점}) \times \left|\left(\frac{90}{100}-\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right)\times 100\right| = \text{평점}$$

평점에 75점을 넣고 풀어보면, (입찰가격/예정가격)은 0.8975가 나옵니다.
(입찰가격/예정가격)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넷째 자리에서 숫자 하나를 낮추고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가능한 최소의 수인 5를 넣어주면, (입찰가격/예정가격)은 0.89745가 됩니다.
이를 백분율로 바꿔주면, 낙찰하한율은 89.745% 가 됩니다.

2. 공사 적격심사

1) 입찰공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2) 입찰공고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원칙,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병행 가능
- (취소 후 신규공고)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변경 시에는 원래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 (정정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시 공고 기간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3)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구 분	기 준	공 고 기 간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국제입찰대상 미만	30일
	국제입찰대상 이상	40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사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지 않는 공사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긴 급 공 고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1일) = 9일

(4) 입찰공고 내용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사항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 장소 및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 이행예정기간, 입찰무효, 공동계약 등

② 보험료 사후정산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서울시, 2013)〉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공고문에 명시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

《 입찰공고문 예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000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000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00원)	안전관리비 (000원)	퇴직공제 부금비 (000원)	품질관리비 (000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④ 하도급지킴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사항 명시

⑤ 하도급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의무
-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 하도급 규정 위반 또는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명시
-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찰공고문
- 시방서(과업내용서)
- 공사설명서
- 공내역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심사결과 요약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유권해석, 행정안전부(2014) 》

〈질의〉 입찰공고문과 G2B가 상호 다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에는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으나, G2B에는 계약담당자의 착오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잘못 명시하고 이에 따라 개찰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올바른 평가기준인 입찰공고문 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시 개찰하여 적격심사 대상자 순위를 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고,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잘못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순위를 결정하였다면, 위 시행규칙 36조에 의거 우선하여 적용되는 입찰공고문 상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순위를 올바르게 다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2) 현장설명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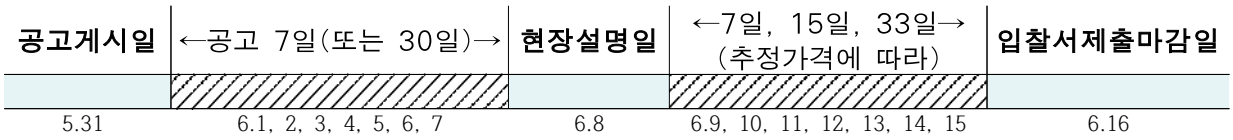
(2) 현장설명 대상

- (원칙) 모든 공사
- (예외)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 가능

(3) 현장설명 시기

기 준	현장설명 시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7일 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15일 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33일 전

〈현장설명 대상 공사의 현장설명 시기 및 공고일자〉



3) 입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

(2)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참고)

(3) 입찰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재입찰)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4)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예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② 제한입찰(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자
(예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6)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사항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017)** 》

〈질의〉 개명 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 입찰자가 입찰 전에 개명된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변경하였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개명 전 대표자의 성명으로 입찰한 것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아니함

○ 따라서 입찰 전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것은 입찰무효에 해당함

《 **판례 체크** 》

〈입찰취소〉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0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금 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조달청장)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함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

4) 개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2) 개찰실시

-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g2b)

※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시 '계약서류 무방문 온라인 제출' 문구 기재

적격심사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는 별도의 방문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찰조서

입찰공고번호	20240123456-00				
공고명	서울시청 청사내 인테리어 보수공사(가칭)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5-123호	입찰분류	0	재입찰번호	0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		
개찰일시	2024/05/01 11:00	입찰집행관	홍길동		
개찰여부	개찰완료				
유의사항	판정사유중 적격점수미달 항목은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수행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자재및인력조달가격의적정성평가 예상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입니다.				

순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입찰 참여자	투찰금액	판정결과	예가비율	입찰점수
1	1234567890	㈜서울사랑	김서울	김희망	253,591,500		87.754	75
2	2345678910	함께서울(주)	박함께	이서울	253,615,447		87.762	75.2
3	3456789121	서울모아	이모아	이모아	253,812,640		87.831	76.6
4	4567891230	서울건설	김지방	김계약	251,130,546	낙찰하한선 미달	86.903	58
5	5678912345	주식회사 서울	김입찰	이참가	251,925,000	낙찰하한선 미달	87.178	63.6

※ 낙찰하한선 미달의 가격을 투찰한 자는 비가격요소가 만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입찰점수에서 감점이 되어 적격통과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더 알아보기 》

〈적격심사에서 업체 순위를 결정짓는 예정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1순위가 되려면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 이하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투찰율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업체의 순위를 결정짓는 예정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① 기초금액의 작성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사업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등 그 사업에 소요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② 기초금액의 공개

계약담당자는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상에 공개합니다.

③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④ 입찰업체의 복수예비가격 추첨

입찰업체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⑤ 예정가격의 결정

입찰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적인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적격심사

(1)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원칙) 7일 이내 (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 (예외)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 15일 이내 (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7일 이내 (1회 가능) (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평가	(원칙) 7일 이내 (재난복구공사는 4일 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이내 → 3일 이내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재난복구공사는 2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 받은 자 ② 선 순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찰자 결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2)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각서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시공실적증명서
- 기술보유증명서
- 경영상태 확인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는 다를 수 있음

(3) 적격심사 항목

- 공사의 추정가격대별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대에 맞는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적격심사를 해야 할 것임

구 분 (추정가격)	300억 미만 100억 이상 P·Q 이외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수행능력평가	44	30	25	30	20	10	10
시공경험	14	15	15	15	10	종합:4.8 전문:5	4
경영상태	15	15	10	15	10	5	5
접근성	-	-	-	-	+1	종합:0.2 전문:+1	1
신인도	±2	±2	±1.2	-	-	-	-
특별신인도	-	-	-	-	+1	+1	+1
기술능력	15	-	-	-	-	-	-
직접사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12~△3	10~ △2.5	5~ △1.3	-	-	-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14	10	-	-	-	-	-
입찰가격	30	50	70	70	80	90	90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15	△15	△15	△15	△15	△15
적격통과점수	92점	95점	95점	95점	95점	95점	95점
관련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 공사 금액대별로 〈별표1〉~〈별표11〉로 구분된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확인필요 (※ '21년부터 전문공사 등 낙찰하한율을 종합공사와 일치)

(4) 적격심사 방법

〈시공경험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①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평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을 의미하며,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실적인정범위는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70%까지 하향 조정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함

<점수계산방법>

$$\frac{\text{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합계}}{\text{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times 100 =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② 최근 3년간(5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이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의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의미함
  (예시) '교통신호기 보수공사' - 전기공사업, '도로포장공사' - 포장공사업

<점수계산방법>

$$\frac{\text{최근 3년간(5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text{해당 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times 100 =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구 분	평가방법
관련 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는 경우	- 관련 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
관련 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 연도단위별로 관련 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 협회의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 합산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

③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의 의미는 ②를 참고

<점수계산방법>

$$\frac{\text{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text{해당 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times 100 =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구 분	평가방법
관련 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는 경우	- 관련 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을 합한 실적금액
관련 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 연도단위별로 관련 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 협회의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 합산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

※ 시공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별표1~11 참고

〈경영상태 평가방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재무+신용)가 존재하며,
  (원칙) 세 가지 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예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①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 \ 공사규모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부 채 비 율	8	10	7	8	5	5
유 동 비 율	8	10	7	7	5	5
차 입 금 의 존 도	4	-	-	-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 배 율	4	-	-	-	-	-
매 출 액 순 이 익 율	3	-	-	-	-	-
총 자 산 순 이 익 율	1	-	-	-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 름 비 율	2	-	-	-	-	-
자 산 회 전 율	3	-	-	-	-	-
영 업 기 간	2	1	1	-	-	-
계	35	21	15	15	10	10
환 산 점 수 (배 점 한 도)	**15**	**15**	**10**	**15**	**10**	**5**

▶ 평가요소가 “0”인 경우 처리방법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②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금액별 평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4억원미만
AAA		㉠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5.0	10.0	10.0
AA+, AA0, AA-	A1	㉠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5.0	10.0	10.0
A+, A0, A-	A2+, A20, A2-	㉠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5.0	10.0	10.0
BBB+, BBB0, BBB-	A3+, A30, A3-	㉠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5.0	10.0	10.0
BB+, BB0	B+	㉠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5.0	10.0	10.0
BB-	B0	㉠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20.0	14.0	14.0	9.8	9.8
B+, B0, B-	B-	㉠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34.0	19.0	13.0	13.0	9.6	9.6
CCC+ 이하	C 이하	㉠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16.0	10.0	10.0	6.0	6.0
환산점수 (배점한도)			**15.0**	**15.0**	**10.0**	**15.0**	**10.0**	**5.0**

③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 신용평가방법)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로 평가

공사규모 / 심사항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4억원미만
계	35	21	15	15	10	10
환산점수	15	15	10	15	10	5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의 실적 인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실적 구분	상대시장 참여	인정 기준
2020.12.31. 이전	종합이 전문에 참여	종합 실적을 전문공사분야별로 분개 후 2/3만 인정
	전문이 종합에 참여	전문 실적을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을 모두 인정
2021.01.01. 이후	상대시장 참여	상대시장 실적을 모두 인정

※ 예) 20.12.31.이전 실적이 토공 30억, 철콘 60억, 도장 90억인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업종: 토공) 진출 시 20억(30억 X 2/3)을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예) 종전 실적이 토목(토공 10억, 철콘 20억) 30억, 건축(도장) 25억인 전문업체가 종합공사(토목) 진출 시 30억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요령 》

구분	전문건설사업자 → 종합공사 참여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공사 참여
기술능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참여시와 동일
자본금	·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 ※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 **1년**	해당 없음
시설·장비 보유 여부	해당 없음	· 자기소유인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서류조사로 확인가능, 현지조사는 필요시 점검

6) 낙찰자 결정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2)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판례 체크 》

〈입찰 및 낙찰규정의 법적성격〉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낙찰자결정 및 계약무효 요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위법한 낙찰자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여부〉

낙찰자결정 및 계약무효의 정도에 이루지 않은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을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03나 83988 판결)

3. 용역 적격심사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세부구분</th><th>적용기준</th><th>관련내용</th></tr>
<tr><td rowspan="6">일반용역</td><td colspan="2">일반용역
(단순노무·보험 등)</td><td>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예규)</td><td rowspan="6">3-1
일반용역
적격심사
참고</td></tr>
<tr><td rowspan="2">폐기물
처리용역</td><td>건설폐기물처리용역</td><td>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td></tr>
<tr><td>일반폐기물처리용역</td><td>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예규)</td></tr>
<tr><td colspan="2">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td><td>서울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예규)</td></tr>
<tr><td colspan="2">상·하수도 검침용역</td><td>서울시 상·하수도 검침관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예규)</td></tr>
<tr><td colspan="2">정보화용역</td><td>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예규)</td></tr>
<tr><td>기술용역</td><td colspan="2">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타당성조사용역 등</td><td>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행안부 예규)</td><td>3-2
기술용역
적격심사
참고</td></tr>
<tr><td>학술용역</td><td colspan="2">정책 수립·개발, 사업 자문
등을 위해 시행하는 연구용역</td><td>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행안부 예규)</td><td>3-3
학술용역
적격심사
참고</td></tr>
</table>

※ 상기 계약 중에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능

3-1. 일반용역 적격심사

1) 입찰공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2) 입찰공고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원칙,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병행 가능
- (취소 후 신규공고)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변경 시에는 원래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 (정정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시 공고 기간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3)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구 분	기 준		공 고 기 간
일반공고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긴급공고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1일) = 9일

(4) 입찰공고 내용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사항

② 보험료 사후정산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금여충당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공고문에 명시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
-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단순노무용역 등)에 한해 적용

《 입찰공고문 예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526,44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482원)	국민연금보험료 (1,700,50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④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용역의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 9.)〉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적용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 명시
- 근무인원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용역인원 00명)

⑤ 하도급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의무
-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 하도급 규정 위반 또는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명시
-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과업이행요청서)
- 산출내역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2) 입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

(2)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참고)

(3) 입찰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재입찰)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4)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예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업체

② 제한입찰(실적제한, 지역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자
(예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6)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사항

3) 개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2) 개찰실시

-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g2b)

※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시 '계약서류 무방문 온라인 제출' 문구 기재

4) 적격심사

4-1)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대상 용역

-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 및 보험용역
  - 일반용역 :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
  - 보험용역 :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7일 이내 (1회 가능)
적격심사 서류 평가	(원칙) 7일 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 3일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 받은 자 ② 선 순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찰자 결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4)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각서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경영상태 확인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단순노무용역)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근로자 근로보건 보호지침(2019)〉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적격심사 항목

- 적격심사 항목은 크게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평가로 구성됨

구 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수 행 능 력		70	70	50	30	10
이 행 실 적		37	37	17	7	-
경 영 상 태		30	30	30	20	10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3	-
신 인 도		+13.5 ~ -22	+13.5 ~ -22	+13.5 ~ -22	+13.5 ~ -22	+13.5 ~ -22
입 찰 가 격		30	30	50	70	90
적 격 통 과 점 수	단순노무외	85점	90점	95점	95점	95점
	단순노무	95점	95점	95점	95점	95점
낙 찰 하한율	단순노무외	72.995	77.995	85.495	86.745	87.745
	단순노무	87.745	87.745	87.745	87.745	87.745

(6) 적격심사 방법

〈이행실적 평가방법〉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
-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
-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은 발주기관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함

<점수계산방법>

$$\frac{\text{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text{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times 100 =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 공동수급체의 경우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재무+신용)가 존재하며, 세 가지 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① 재무비율 평가방법

용역규모 / 심사항목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부 채 비 율	8	8	6	5
유 동 비 율	8	8	6	5
매출액 순이익율	6	6	4	-
자 산 회 전 율	8	8	4	-
계	30	30	20	10

- 재무비율 평가는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의 최근연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자산회전율 등으로 평가
- 이 때, '기준비율'이란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업종별 비율을 적용함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해당 업종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입찰공고문 예시 》

○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가) 경영상태(10점)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 기준비율(2022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N.753 경비·경호 및 탐정업 - 유동비율(148.63), 부채비율(147.79)

②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금액별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AAA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A^{+}, AA_{0}, AA^{-}	A1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_{0}	$A2_{0}$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_{0}	$A3_{0}$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 BB_{0}	B^{+}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19.6	9.8
BB^{-}	B_{0}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19.2	9.6
B^{+}, B_{0}, B^{-}	B^{-}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16.0	6.0
없음	없음	없음	0	0	0	0

③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 신용평가방법)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로 평가

〈신인도〉

-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 심사분야 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심사분야	심사항목
희 망 기 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소 기 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기업
지 역 업 체	사업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일 자 리 창 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당해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자, 청년창업기업
계약질서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임금체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유착비리 적발업체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기 타	모범납세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안전보건확보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가점)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이력업체(감점)

※ 가산점 원문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 필요

〈보험용역 적격심사〉〈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기준)		비고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 비율	40	3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가.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40	30
	100%이상~150%미만	38	

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2) 1)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3)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2)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예규)

(2)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7일 이내 (1회 가능)
적격심사 서류 평가	(원칙) 7일 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3일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 받은 자 ② 선 순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 찰 자 결 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3)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각서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 장비 보유현황
- 용역 이행 평가등급 증명서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적격심사 항목

구 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수행능력	70	70	50	30	10
이행실적 및 능력	55	55	40	20	5
경영상태	15	15	10	10	5
신인도	+9.1 ~ -10				
입찰가격	30	30	50	70	90
적격통과점수	**85점**	**90점**	**95점**	**95점**	**95점**

(5) 적격심사 방법

〈이행능력 평가방법〉

구 분	평가항목		
이행능력	최근 3년내 용역실적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 능력	기술인력 확보	중간처리
			최종처리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 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경영상태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등 급	금액별 평점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8.0	5.0	5.0	2.5
	B) 120% 이상~210% 미만	7.0	4.4	4.4	2.2
	C) 210% 이상~300% 미만	5.9	3.7	3.7	1.9
	D) 300% 이상	4.8	3.0	3.0	1.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7.0	5.0	5.0	2.5
	B) 75% 이상~100% 미만	6.3	4.5	4.5	2.25
	C) 50% 이상~ 75% 미만	5.6	4.0	4.0	2.0
	D) 25% 이상~ 50% 미만	4.9	3.5	3.5	1.75
	E) 0% 이상~ 25% 미만	4.2	3.0	3.0	1.5

〈신인도〉

구 분	평가항목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 신규 채용(0.3) ◦ 모범 납세자 등 (0.3)
중소기업	◦ 중소기업(0.5) ◦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고용안정	◦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 신인도 원문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 필요

4-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1) 관계규정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 적용대상 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건설폐기물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유리, 건설오니 등이 있음

(3)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7일 이내 (1회 가능)
적격심사 서류 평가	(원칙) 7일 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3일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 받은 자 ② 선 순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 찰 자 결 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4)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각서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 장비 보유현황
- 용역 이행 평가등급 증명서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적격심사 항목

- 적격심사 항목은 크게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여부로 구성됨

구 분 (추정가격)	100억 이상	10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수 행 능 력	70	70	70	50	40	30
이 행 능 력	50	50	50	35	30	20
경 영 상 태	20	20	20	15	10	10
입 찰 가 격	30	30	30	50	60	70
적 격 통 과 점 수	85점	90점	95점	95점	95점	95점
낙찰하한율(%)	72.995	77.995	82.995	85.495	86.745	87.745

(6) 적격심사 방법

〈이행능력 평가방법〉〈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평가항목</th></tr>
<tr><td rowspan="8">이행능력</td><td rowspan="2">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td><td colspan="2">수집·운반</td></tr>
<tr><td colspan="2">중간처리</td></tr>
<tr><td rowspan="6">당해용역 수행능력</td><td colspan="2">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td></tr>
<tr><td rowspan="5">중간처리</td><td>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td></tr>
<tr><td>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td></tr>
<tr><td>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td></tr>
<tr><td>순환골재 품질인증</td></tr>
<tr><td>용역 이행능력 평가</td></tr>
<tr><td colspan="2">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td></tr>
</table>

〈경영상태 평가방법〉〈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해 평가함

신 용 평 가 등 급		금액별 평점			
회사채·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15억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AAA	-	20.0	15	10	10
AA^+, AA_0, AA^-	A1	20.0	15	10	10
A^+	$A2^+$	19.85	15	10	10
A_0	$A2_0$	19.70	14.88	10	10
A^-	$A2^-$	19.55	14.76	9.91	10
BBB^+	$A3^+$	19.40	14.64	9.82	9.94
BBB_0	$A3_0$	19.25	14.52	9.73	9.88
BBB^-	$A3^-$	19.10	14.40	9.64	9.82
BB^+, BB_0	B^+	18.95	14.28	9.55	9.76
BB^-	B_0	18.80	14.16	9.46	9.70
B^+, B_0, B^-	B^-	18.65	14.04	9.37	9.64
CCC^+ 이하	C 이하	18.50	13.92	9.28	9.58

〈신인도〉〈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구 분		평가항목
신인도	부 적 정 처리가능성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 받은 자나 행정처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
	기 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가족친화인증 기업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인증
		공제조합 가입
결 격 여 부	부 실 수 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재 무 위 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인도 원문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 필요

5) 낙찰자 결정

(1) 관계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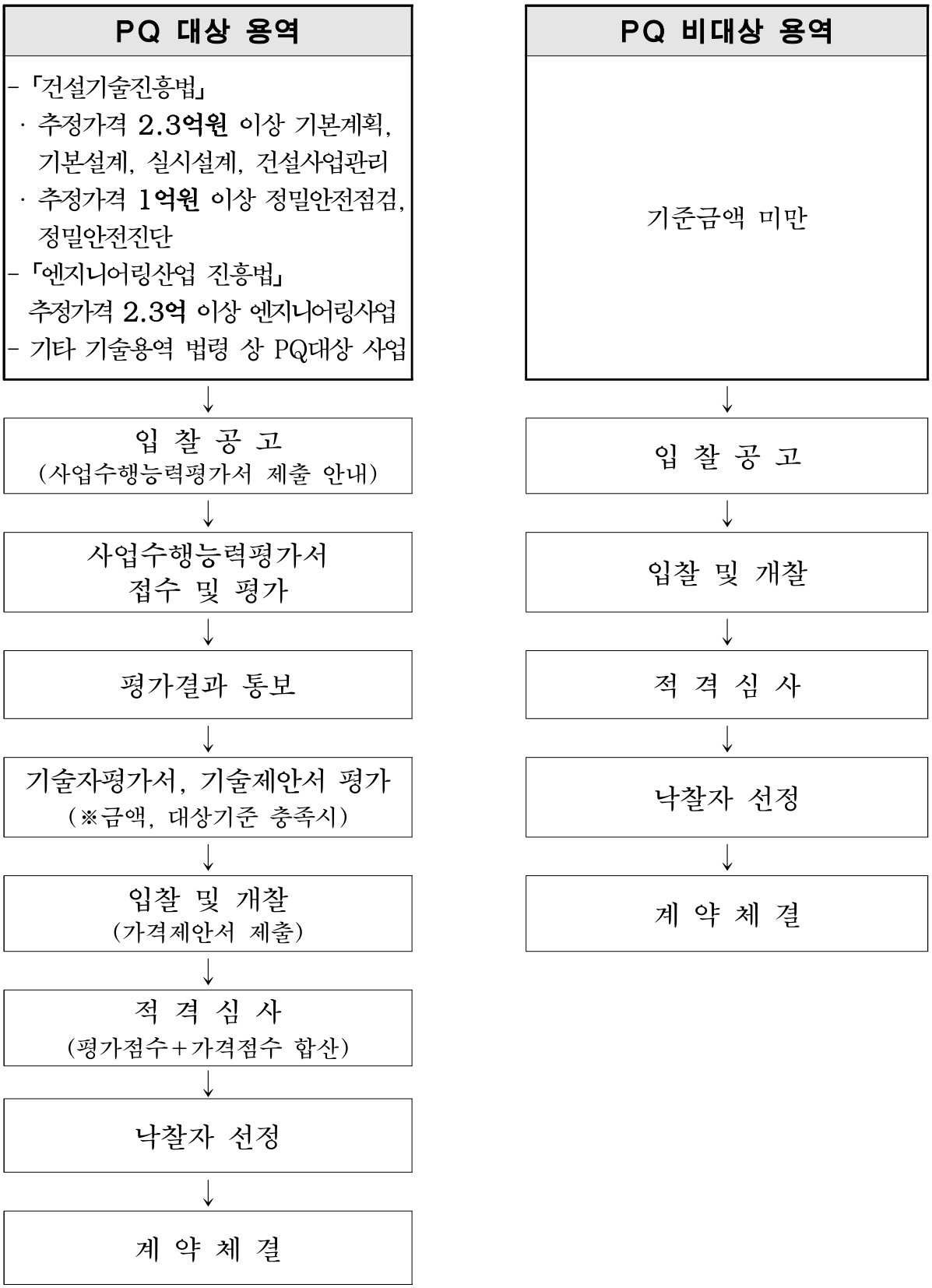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2)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3-2. 기술용역 적격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과 비대상 용역 적격심사 절차》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

1) 입찰공고(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관계규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2) 입찰공고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원칙,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병행 가능
- (취소 후 신규공고)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변경 시에는 원래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 (정정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시 공고 기간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3)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구 분	기 준		공 고 기 간
일반공고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긴급공고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4) 입찰공고 내용

① 용역 집행계획(용역명, 시행기관명, 사업주요내용, 총사업비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등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④ 하도급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의무
-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 하도급 규정 위반 또는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명시
-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과업이행요청서)
- 용역설명서
- 산출내역서(공내역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SOQ, TP 기준(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술인평가서 평가(SOQ)	기술제안서 평가(TP)
기본계획, 기본설계	추정가격 10억 이상 30억 미만	추정가격 30억 이상
실시설계	추정가격 15억 이상 40억 미만	추정가격 4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추정가격 20억 이상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및 평가

(1) 관계규정

구 분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고시	서울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2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입찰참가자는 사업 발주부서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접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

3)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통보

-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입력·공시하여야 함

4) 입찰 및 개찰

(1) 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만 가격 투찰 가능

(2) 개찰

-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g2b)

※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시 '계약서류 무방문 온라인 제출' 문구 기재

5) 적격심사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2)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7일 이내 (1회 가능)
적격심사 서류 평가	(원칙) 7일 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3일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 받은 자 ② 선 순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 찰 자 결 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3)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4) 적격심사 항목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PQ 대상 기술용역과 PQ 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항목이 각각 다름
  (PQ 대상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적격심사 단계 전에 시행한 PQ 심사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등의 평가를 이미 거쳤기 때문임)
- 적격심사 항목은 크게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으로 구성됨
- 용역의 추정가격대별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대에 맞는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적격심사를 해야 할 것임

구 분 (추정가격)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수 행 능 력	65	45	35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경 영 상 태	2	2	2
입 찰 가 격	30	50	60
기술인력보유상황	△10	△10	△10
계 약 질 서 준 수	△1	△1	△1
적 격 통 과 점 수	92	95	95
낙찰하한율(%)	79.995	85.495	86.745

(5) 적격심사 방법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하여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선택 적용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신용평가)으로 평가
-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함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사업수행능력평가(PQ) 비대상 용역〉

1) 입찰공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2) 입찰공고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원칙,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병행 가능
- (취소 후 신규공고)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변경 시에는 원래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 (정정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시 공고 기간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3)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구 분	기 준		공 고 기 간
일반공고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긴급공고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4) 입찰공고 내용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사항

② 보험료 사후정산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공고문에 명시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 입찰공고문 예시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526,446원)	(65,482원)	(1,700,50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의무
-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 하도급 규정 위반 또는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명시
-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과업이행요청서)
- 산출내역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2) 입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

(2)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참고)

(3) 입찰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
- (재입찰)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4)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예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업체

② 제한입찰(실적제한, 지역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자

(예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6)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사항

3) 개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2) 개찰실시

-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g2b)

※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시 '계약서류 무방문 온라인 제출' 문구 기재

> 적격심사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는 별도의 방문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2)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7일 이내 (1회 가능)
적격심사 서류 평가	(원칙) 7일 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3일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 받은 자 ② 선 순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찰자 결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3)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경영상태 확인서
-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용역기술자 보유 현황표

-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적격심사 항목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PQ 대상 기술용역과 PQ 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항목이 각각 다름
- 적격심사 항목은 크게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으로 구성됨

구 분 (추정가격)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경우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수 행 능 력	70	50	50	20	10
이 행 실 적	27	17	22	10	-
지역업체 참여도	3	3	3	-	-
기 술 능 력	10	10	5	-	-
경 영 상 태	30	20	20	10	10
특 별 신 인 도	-	-	-	-	2
기 술 인 력	△10	△10	△10	△10	△10
계 약 질 서 준 수	△1	△1	△1	△1	△1
입 찰 가 격	30	50	50	80	90
적 격 통 과 점 수	92점	95점	95점	95점	95점
낙찰하한율(%)	79.995	85.495	86.745	87.745	87.745

(5) 적격심사 방법

〈이행실적 평가방법〉

①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평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을 의미함 (실적인정범위는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70%까지 하향 조정 가능

<점수계산방법>

$$\frac{\text{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합계}}{\text{해당 용역의 평가기준규모}} \times 100 =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②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평가

-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의미함
-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구 분	평가방법
관련 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는 경우	- 관련 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
관련 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 연도단위별로 관련 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 협회의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 합산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

※ 실적 인정범위, 인정기준, 실적증명방법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선택 적용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기술능력 평가방법〉

〈경영상태 평가방법〉

- (원칙)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신용평가)으로 평가
- (예외)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은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① 재무비율 평가방법

용역규모 / 심사항목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자기자본비율	15	10	10	5
유동비율	15	10	10	5
계	30	20	20	10

- 재무비율 평가는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의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로 평가
- 이 때, '기준비율'이란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업종별 비율을 적용함

②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			금액별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AAA		㉠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20.0	10.0
AA+, AA0, AA-	A1	㉠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20.0	10.0
A+, A0, A-	A2+, A20, A2-	㉠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20.0	10.0
BBB+, BBB0, BBB-	A3+, A30, A3-	㉠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30.0	20.0	20.0	10.0
BB+, BB0	B+	㉠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0	20.0	20.0	10.0
BB-	B0	㉠의 BB-에 준하는 등급	28.0	19.0	19.0	9.0
B+, B0, B-	B-	㉠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18.0	18.0	8.0
CCC+ 이하	C 이하	㉠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4.0	15.0	15.0	6.0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3-3.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입찰공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2) 입찰공고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원칙,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병행 가능
- (취소 후 신규공고)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변경 시에는 원래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 (정정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시 공고 기간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3)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구 분	기 준		공 고 기 간
일반공고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긴급공고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1일) = 9일

(4) 입찰공고 내용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사항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③ 하도급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의무
-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 하도급 규정 위반 또는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명시
-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과업이행요청서)
- 산출내역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2) 입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

(2)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참고)

(3) 입찰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재입찰)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4)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예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② 제한입찰(실적제한, 지역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자
(예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6)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사항

3) 개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2) 개찰실시

-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g2b)

  ※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시 '계약서류 무방문 온라인 제출' 문구 기재

4) 적격심사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2) 적용대상 용역

-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정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3)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7일 이내 (1회 가능)
적격심사 서류 평가	(원칙) 7일 이내 ※ 적격심사 기간 단축(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 7일 →3일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부적격 통보 받은 자 ② 선 순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찰자 결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4)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 경영상태 확인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적격심사 항목

- 적격심사 항목은 크게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평가로 구성됨

구 분 (추정가격)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수 행 능 력	70	40	35
이 행 실 적	30	-	-
기 술 인 력	20	20	15
경 영 상 태 (신 용 평 가)	20	20	20
신 인 도	△3.0~4.5	△3.0~4.5	△3.0~4.5
입 찰 가 격	30	60	65
적 격 통 과 점 수	85점	85점	85점
낙 찰 하 한 율	80.495%	80.495%	80.495%

(6) 적격심사 방법

〈이행실적 평가방법〉

-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이 원칙,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가능
-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입찰공고 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학술진흥법 제12조) 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동일종류 용역과 유사용역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함.

※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과업내용이 많거나 과업내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과업내용 또는 평가대상 과업내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음

<점수계산방법>

$$\frac{\text{최근 3년간 동일(유사)종류 용역이행실적}}{\text{당해용역 추정가격}} \times 100 =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기술인력 평가방법〉

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추정가격별 차등 적용)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
-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과업내용의 실적을 곱하여 평가할 수 있음.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일종류 이행실적 (이행실적 / 추정가격)	A. 100% 이상	10	10	5
	B. 70% 이상 ~ 100% 미만	9	9	4.5
	C. 40% 이상 ~ 70% 미만	8	8	4
	D. 10% 이상 ~ 40% 미만	7	7	3.5
	E. 10% 미만	6	6	3

②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인정 기준을 명시(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 가능)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10	
	B. 80% 이상 ~ 100% 미만	9	
	C. 60% 이상 ~ 80% 미만	8	
	D. 60% 미만	7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신인도〉

- 지역업체 참여도, 고용창출, 계약질서 준수 등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 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배점한도를 환산적용(공고문 명시 필요)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지역업체 참여	지역업체 참여 합산 비율	2.0
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규채용, 청년고용)	1.5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1.0
계약질서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부정당업자 등	-2.0

※ 가산점 원문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확인 필요

5) 낙찰자 결정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2)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4. 물품 적격심사

세부구분	적용기준	관련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물품 적격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4-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적격심사

1) 입찰공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2) 입찰공고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원칙,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병행 가능
- (취소 후 신규공고)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변경 시에는 원래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 (정정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시 공고 기간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3) 입찰공고 기간

구 분	기 준		공 고 기 간
일반공고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긴급공고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4) 입찰공고 내용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사항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③ 하도급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의무
-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 하도급 규정 위반 또는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사항 명시
-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찰공고문
- 규격서
- 과업지시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2) 입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

(2)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참고)

(3) 입찰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재입찰)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4)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예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용기제조업 등록업체

② 제한입찰(실적제한, 지역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춘 자

(예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6)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사항

3) 개찰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2) 개찰실시

-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g2b)

※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시 '계약서류 무방문 온라인 제출' 문구 기재

4) 적격심사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물품 적격심사

(1) 관계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 적용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이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부쳐야 함

(3)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3일 이상, 통상적으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평가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재심사	부적격 통보 받은 자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3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찰자 결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4)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이행능력심사 신청서
-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구매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

○ 다음의 서류들은 계약담당자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함 (www.smpp.go.kr)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확인서
- 기술평가등급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

(5) 적격심사 항목

- 적격심사 항목은 크게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로 구성됨

구 분 (추정가격)	10억원이상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고시금액 미만
계	100점	100점	100점
납품이행능력	45	40	30
납품실적	5	5	-
기술능력	10	5	-
경영상태	30	30	30
입찰가격	55	60	70
신인도	+3 ~ -2	+3 ~ -2	+3 ~ -2
결격사유	-30	-30	-30
적격통과점수	88점	88점	88점
낙찰하한율	87.995	87.995	87.995

(6) 적격심사 방법

〈납품실적 평가방법〉

기업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본점수	등급	평점
중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5.0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5.0	2.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5.0	3.0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 심사항목과 '나' 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소기업·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
-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

〈기술능력 평가방법〉

①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배점한도 10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②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배점한도 5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5
T2	매우우수	4.9
T3	우수수준	4.8
T4	양호수준	4.7
T5	보통이상	4.6
T6	보통수준	4.5
T7	보통정도	4.4
T8 이하	보통이하	4

〈경영상태 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함

신 용 평 가 등 급			
회 사 채 신용평가 등 급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 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신인도〉

구 분	심 사 항 목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 창출정도 - 부처별 정책지원(조달업무우수업체, 혁신형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부품국산화 중소기업
계약이행 성 실 도	- 납품지연(지체일수) - 불공정 하도급 거래(하도급법 위반정도)

※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4-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적격심사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2) 적용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 구매

(3)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구 분	기 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추정가격 **2.3억 원**(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이상은 5일 이내 추정가격 **2.3억 원**(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은 3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보완·추가 제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통상적으로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평가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재심사	부적격 통보 받은 자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3일 이내 재심사 실시
낙찰자 결정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로 통보

(4) 적격심사 제출서류 (전자제출 원칙)

- 적격심사 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물품이행실적 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허증 사본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계약담당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장애인·창업기업 확인서는 나라장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통해 확인 가능

※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

(5) 적격심사 항목

- 적격심사 항목은 크게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로 구성됨
- 물품의 추정가격대별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물품의 추정가격대에 맞는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적격심사를 해야 할 것임

구 분 (추정가격)	10억 이상	10억 미만 2.3억 이상	2.3억원 미만 (재경부장관 고시금액)
계	100점	100점	100점
납품이행능력	70	40	30
이행실적	30	-	-
기술능력	10	10	10
경영상태	30	30	20
입찰가격	30	60	70
신인도	+2 ~ -2	+2 ~ -2	+2 - -2
결격사유	-40	-40	-40
적격통과점수	85점	85점	85점
낙찰하한율	80.495	80.495	84.245

(6) 적격심사 방법

〈이행실적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1)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양)	$\left(\frac{\text{이행실적}}{\text{평가기준규모}}\right)$
	나)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left(\frac{\text{이행실적}}{\text{추정가격}}\right)$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양)	$\left(\frac{\text{이행실적}}{\text{평가기준규모}}\right)$
	나)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left(\frac{\text{이행실적}}{\text{추정가격}}\right)$

-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 후 합산 적용하되 배점한도 초과 불가
- (원칙)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 (예외)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양)으로 평가 가능
-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left(\frac{\text{이행실적}\times 1.1}{\text{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right)$$

- 규모·양으로 실적 평가시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금액별 평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2.3억원이상	2.3억원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29.7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29.5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29.0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28.5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28.0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5.0	15.0
없음	없음	없음	20.0	20.0	10.0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술능력 평가방법〉

- 기술인력 보유 정도와 생산시설 보유 정도 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

〈신인도 평가방법〉

구 분	심 사 항 목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 중소(제조)기업, 고용창출 등 -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계 약 이 행 성 실 도	- 이행지연, 품질하자
계약질서 준수정도	- 불공정하도급 거래, 임금체불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사고사망만인율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서울시, 2015)
-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 계획(서울시, 2022)

2) 개념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3) 적용대상

구 분	적 용 대 상
용역·물품	예술성,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단순노무용역, 단순물품구매 제외)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지식기반사업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지식기반사업)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산업 ④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⑥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⑦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⑧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4) 진행절차

정보화심의, 계약심의 등 사전절차
(사업담당자, 사전심의 담당 부서)

↓

발주계획 〈서울계약마당〉 등재
(사업담당자)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작성 (부당계약 문구 검토)
(사업담당자)

↓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사전규격 〈나라장터〉 공개 (신규사업은 모든 금액)
(사업담당자)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3배수),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사업담당자)

↓ 재무과 계약의뢰 (재정합의 필수)

입찰공고
(계약담당자)

↓

가격투찰(나라장터)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사업담당자) **제출**
(입찰자)

↓

제안서 평가
(사업담당자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계약마당〉 등록
(사업담당자)

↓

협상 실시 ①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② 가격 협상(사업담당자)

↓

낙찰자 결정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 자격요건

- 위원회는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더 알아보기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위〉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 서울시 본청·사업소 공무원	: 제안서평가위원 위촉 불가
· 서울시 시의원(정무직 공무원)	: 제안서평가위원 위촉 불가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 제안서평가위원 위촉 가능

② 정부투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더 알아보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제척 대상

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기피 대상

·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불가)

③ 회피 관련

· 위원이 제척·기피 규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

2) 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해야 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

- 위원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30인 이내)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①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고,

  ※ 외부 기관 등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

  ②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함 (예비명부는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필요)

  ③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 2명 이상 추가선정을 의무화

-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하며,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3. 입찰공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2) 입찰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원칙,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병행 가능
- (취소 후 신규공고)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변경 시에는 원래 입찰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 (정정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시 공고 기간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3)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구 분	세부 구분			기 간
일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원칙	일반사업	10일
		예외	신규사업	15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긴급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6항)			10일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1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1일) = 12일

4) 입찰공고 내용

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차등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부여기준), 제안요청서에 필요한 서류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에 명시된 사항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③ 하도급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의무
-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 하도급 규정 위반 또는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을 수 있다는 사항 명시
-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 과업지시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의 규격 등
- 업체 식별정보(상호, 대표자명 등) 비공개 여부 명시

6) 제안요청서 설명 시기(필요시)

기 준	제안요청서 설명 시기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10일 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20일 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

〈제안요청서 설명 시기 및 공고일자〉

공고게시일	←공고 7일→	제안요청서 설명일	←10일, 20일, 40일→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5.31	6.1, 2, 3, 4, 5, 6, 7	6.8	6.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19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구 분	제 출 방 법
가격제안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통해 가격입찰서 제출하고, 밀봉한 가격입찰서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 가격제안서상 금액은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제 안 서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2)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름
-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함

《 더 알아보기 》

〈사례를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방식 알아보기〉

*제안서 평가위원 : 7명 (따라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7명의 3배수인 21명 구성)
- 평가위원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고유번호만 부여됨
*입찰 참가업체 : 4개(㈜서울사랑, ㈜서울소통, ㈜서울혁신, 서우리대학교)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첨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경우, 최종 제안서 평가위원 수가 7명이므로, 입찰 참가업체마다 7번 추첨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참가업체인 ㈜서울사랑은 1-②, 1-⑦, 1-⑧, 2-②, 2-③, 2-⑥, 2-⑫ 번의 위원을 추첨했고, 그 뒤를 이어 나머지 업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7번을 추첨합니다.
위원 순위는 각 위원별 추첨 다빈도 수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표의 경우 1-⑧ 위원은 입찰 참가업체에게 가장 많이 추첨된 위원이므로 1위가 됩니다.
2-⑥ 위원과 2-⑨ 위원의 경우 각각 3개의 업체에게 동일한 수로 추첨이 되었지만, 2-⑥ 위원이 나이순으로 더 연장자이므로 순위가 더 높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 7명의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면 됩니다.

전문분야	평가위원 순번	입찰 참가업체				순위
		㈜서울사랑	㈜서울소통	㈜서울혁신	서우리대학교	
A분야전문가 (3명 선정)	1-①			박서울	최공감	3
	1-②	김희망				4
	1-③					8
	1-④		이소통			5
	1-⑤		이소통			6
	1-⑥		이소통	박서울	최공감	2
	1-⑦	김희망				7
	1-⑧	김희망	이소통	박서울	최공감	1
	1-⑨					9
B분야전문가 (4명 선정)	2-①					8
	2-②	김희망				5
	2-③	김희망	이소통	박서울	최공감	1
	2-④					9
	2-⑤					10
	2-⑥	김희망	이소통	박서울		2
	2-⑦				최공감	6
	2-⑧			박서울		7
	2-⑨		이소통	박서울	최공감	3
	2-⑩					11
	2-⑪					12
	2-⑫	김희망			최공감	4
입찰참가자 추첨결과 확인 및 추첨방식 동의	업체명	㈜서울사랑	㈜서울소통	㈜서울혁신	서우리대학교	
	직위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대리	교수	
	성명	김희망	이소통	박서울	최공감	
	서명					

5.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 사업담당자는 하단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

※ 세부평가기준 마련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입찰참가업체의 순위에 따라 차등 평가점수 부여 가능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 초과 불가
	정성적 평가분야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에 안전보건 평가항목 추가 가능(발주사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 판단에 따름)

<안전보건 평가항목(예시)>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기술능력(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1) 정량적 평가방법

① 평가주체 : 사업담당자

②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량적 평가를 수행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정량평가는 구성원별 평가 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2) 정성적 평가방법

①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 방법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 사업담당자는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미리 배부 가능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을 사전 교육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② 제안서의 내용을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평가위원 간 자유롭게 토론하되 자신의 의견을 다른 위원에게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제안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평가점수로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⑤ 위원회가 종료할 때까지는 자신의 평가 내용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 기타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내용 추가 가능

③ 정성적 평가 실시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다만, 필요시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 가능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가격 평가방법

① 평가주체 : 사업담당자

②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6. 회의록 작성 및 제안서평가결과 등록

1) 회의록 작성

- 사업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발언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포함)

2) 제안서평가결과 등록

- 사업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익일까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 '계약정보관리' ⇒ '협상에 의한 계약' ⇒ 양식(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 후 업로드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가격)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능
  (만약, 협상적격자 대상점수 조정 필요시, 입찰공고문 통해 미리 알려야 함)

2) 협상적격자 제외대상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재공고 가능 사유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가능

4) 협상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5) 협상적격자 통지

- 사업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함

8. 협상 실시

1) 협상 절차

〈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담당자** 〉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 **가격협상 : 사업담당자** 〉
-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되는 과업 내용에 따라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기술협상, 가격협상)를 첨부하여 재무과로 계약 의뢰

2) 협상 시기

- (원칙)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예외)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9. 낙찰자 결정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제4절 수의계약

※ 계약의 분류체계상 수의계약은 '경쟁형태별 분류'에 해당하며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편의상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다루고자 함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서울시, 2015)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서울시, 2017)
-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울시, 2020)
-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서울시, 2020)
- 수의계약 업체선정 과정 개선계획(서울시, 2021)
-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서울시, 2024)

2) 개념

- (1인견적 수의계약) 1인견적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 더 알아보기 》

〈1인견적 수의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차이는?〉

1인견적 수의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 모두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명칭은 '수의'지만 발주부서에서 특정한 계약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고 제출된 견적서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쟁입찰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다만,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적격심사 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공고기간이 경쟁입찰보다 짧다는 점 등입니다.

3) 적용범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table>
<tr><th>구분</th><th>유형</th><th>공사</th><th>용역</th><th>물품</th></tr>
<tr><td rowspan="3">1인견적
수의계약</td><td rowspan="2">금액
기준</td><td colspan="3">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td></tr>
<tr><td colspan="3">·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모든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물품)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청년창업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td></tr>
<tr><td>법적
기준</td><td colspan="3">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공법,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한 경우
· 해당 물품 제조·공급한 자가 그 물품 설치·조립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판로지원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상이를 입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용역, 물품 등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재공고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계약 해제·해지된 경우
▸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td></tr>
<tr><td>2인 이상
견 적
수의계약</td><td>금액
기준</td><td>·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td><td colspan="2">추정가격
1억원 이하</td></tr>
</table>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 가능

-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제 5호는 제외), 제26조제1항, 제27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등

4)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5) 퇴직공무원 고용업체·유착비리 적발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체결 금지

(1) 관계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서울시, 2017)
-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계획(서울시, 2023)

(2)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확인

- 고용범위 : 대표이사, 주주참여(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 근로자
- 확인시기 : 계약 체결 전 발주부서에서 관련 자료 확인, 첨부하여 발주

>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주식명부 또는 변동사항명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 조회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 계약정보관리 - 계약정보 - 퇴직공무원조회 - 양식 내려받기 - 엑셀양식 작성 - 자료업로드 - 확인

- 배제기간 : 퇴직 직전 2년이내 발주 실·국·본부·사업소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업체와 퇴직일로부터 2년간

(3) 유착비리 적발업체 확인

- 배제기간 : 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
- 조회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 사업체이력 - 수의계약 배제사유 조회 - 유착비리 적발업체 조회

《 유권해석, 행안부(2016) 》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 하에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함

○ 그러나 본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1인견적 수의계약

1) 가격비교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최종 계약금액 결정

《 수의계약 공개견적 요청 시스템 》

○ 발주부서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 「서울계약마당」에 공개견적을 요청, 사업 수행을 원하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비교 검토한 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하여 계약체결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발주관리>견적요청관리

※ 견적요청내용은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에 게시⇒ 업체 견적서 제출

공개견적 요청 (발주부서) ▶ **견적서 제출** (업체) ▶ **견적서 비교 검토** (발주부서) ▶ **수의계약 체결** (업체-발주부서)

2) 가격협의(수의시담) 〈예가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획(서울시, 2009)〉

(1) 개념

- 사업부서에서 산출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 가격협의를 하는 제도

(2) 결정기준

- 계약심사를 받은 계약건에 대하여는 계약심사금액을 존중하되, 단가·계약상의 오류 등 검토하여 계약담당자가 적의 판단하여 가격 결정

(3) 비대상

-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금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 제13호>

-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3.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1)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안내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2) 안내공고 기간

구 분	결정기준
원 칙	3일 이상 (공휴일, 토요일 제외)
예 외	신규사업의 경우 5일 이상 (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고일은 안내공고 게시일과 견적서 제출마감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예) 안내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5일) + 견적서 제출마감일(1일) = 7일

(3) 안내공고시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 기준

- '지역' 중 하나의 기준과 '지역 외' 중 하나의 기준은 중복 제한할 수 있음

(예시) 서울시에 소재한 자 + 1천만원 이상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구 분	결정기준
지 역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지역 외	·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특수한 기술 요구되는 경우 한함 · 규격 · 재질·품질 ·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장비·시설 보유상황 · 시공 여유율 · 제조공장·처리장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4) 안내공고시 첨부서류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 시방서(과업지시서)
- 설계서, 물량내역서, 설명서 등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 안내공고문에 명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견적서 제출

(2) 개찰

- 안내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아래 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구 분		기 준
공 사		**89.745%** 이상
용역・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88% 이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90% 이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90% 이상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 체결 가능

-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5절 2단계 입찰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2) 개념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규격평가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3) 적용대상

구 분	적 용 대 상
용역·물품	물품 제조 · 구매 또는 용역(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종류

구 분	내 용
2단계입찰 (원칙)	1단계로 규격(기술)입찰 실시 후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 실시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 규격(기술)입찰의 개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

2.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3절〉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준용

3. 입찰공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2) 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원칙
- 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변경 시에는 기존 공고 취소 후 새로 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잘못 표기 등) 인 경우는 공고 기간 남은 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3) 입찰공고 기간

구 분	세부 구분		기 간
일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일반사업	10일
		신규사업	15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긴급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6항)		10일

4) 입찰공고 내용

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평가방법, 규격입찰서에 필요한 서류 등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③ 하도급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의무
-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 하도급 규정 위반 또는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을 수 있다는 사항 명시
-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5) 공고시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 규격(기술)제안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제 출 방 법
규격(기술)입찰서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가격입찰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 제출

4. 규격(기술)서 평가 및 가격입찰

1)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에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12)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

2) 가격입찰

- 2단계 입찰 : 규격(기술)입찰을 우선 진행하고, 규격 평가 적격자만 대상으로 가격입찰 진행
- 동시입찰 :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규격 평가 적격자의 가격 입찰서만 개찰

5. 낙찰자 결정

- 규격(기술) 평가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 체결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순 서

제1절 계약의 체결

제2절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제1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제48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2) 준수기한

-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계약문서의 종류

① 계약서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계약서 작성해야 함
〈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

② 입찰유의서

③ 계약 일반조건

④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용역계약 특수조건

※ 필요시 사업에 대한 특수조건 첨부 가능

⑤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⑥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기관용 1부, 계약상대자용 1부)

⑧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⑨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

2)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1) 산출(계약)내역서 확인

처리주체	처 리 사 항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계약금액에 따라 산출(계약)내역서 조정
사업담당자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조정한 산출(계약)내역서 확인
계약담당자	계약담당자는 ① 계약상대자에게 내역서를 직접 받거나(이 경우 반드시 사업담당자의 경유 확인 필요) ② 사업담당자에게 내역서를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

- 이 경우, 사업·계약담당자가 유의해야 하는 것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산출(계약)내역서 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임금 반영 확인

(2) 계약서 초안 송신

- 계약담당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서 초안 송신

※ 계약서 초안 송신 시 '계약서류 무방문 온라인 제출' 문구 기재

> 서울시는 계약서류 무방문 전자제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착공(착수)신고서, 선금신청서,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 등 계약서류는 별도 방문 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서·인지세 등 제출, 계약서 초안 응답서 제출

- 계약업체는 계약 목적물별·금액별 보증서 및 인지세 등 제출하고,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3) 계약의 체결

- 계약문서 첨부 여부, 산출(계약)내역서 확인, 보증서·인지세 등 징구하여 전자계약서 송부
- e-호조 계약대장 등록 및 원인행위 실시

《 판례 체크 》

〈계약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78.12.26. 대통령령 제9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1983.3.28. 대통령령 제11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제2절 보증서 · 채권 등 제출방법

1. 보증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종류</th><th>대상</th><th>보험가입기간</th><th>보험가입금액</th><th>제출시점</th></tr>
<tr><td>입 찰
보증서</td><td colspan="3">입찰공고</td><td>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td><td>입찰금액의
5% 이상</td><td>입찰참가
신청시</td></tr>
<tr><td>계 약
보증서</td><td colspan="3">공사·용역·물품</td><td>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td><td>계약금액의
10% 이상</td><td>계약
체결시</td></tr>
<tr><td>선 금
보증서</td><td colspan="3">공사·용역·물품</td><td>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상</td><td>선금액+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td><td>선금
신청시</td></tr>
<tr><td rowspan="16">손 배
보증서</td><td rowspan="2">공사</td><td colspan="2">300억 이상 대형공사,
대안입찰, 일괄입찰,
200억원 이상 18개 공사</td><td>공사 착공일부터
발주기관 인수일까지</td><td rowspan="2">공사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비 포함)
부가세+손해보험료
제외한 금액</td><td>계약
체결시</td></tr>
<tr><td>전기</td><td>전기공사</td><td>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td><td>공사
착공전</td></tr>
<tr><td rowspan="14">용역</td><td rowspan="4">소방</td><td>소방시설공사</td><td>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td><td>공사 계약금액</td><td>계약
체결시</td></tr>
<tr><td>소방시설설계 용역</td><td rowspan="2">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날까지</td><td rowspan="3">용역 계약금액</td><td>용역
완료전</td></tr>
<tr><td>소방공사감리 용역</td><td rowspan="2">계약
체결시</td></tr>
<tr><td>소방시설관리 용역</td><td>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td></tr>
<tr><td rowspan="2">건설기술</td><td>건설사업관리용역</td><td rowspan="3">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완공일까지</td><td rowspan="6">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손해보험료
제외한 금액</td><td>계약
체결시</td></tr>
<tr><td>실시설계용역</td><td>용역
완료전</td></tr>
<tr><td>건축</td><td>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td><td>계약
체결시</td></tr>
<tr><td rowspan="2">엔지니어링</td><td>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td><td>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td><td>용역
완료전</td></tr>
<tr><td>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가능성 검토,
시스템 분석 및 관리, 보수</td><td>용역 착수일부터
완수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td><td>계약
체결시</td></tr>
<tr><td>전력</td><td>전력시설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td><td>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완공일까지</td><td>공사
착공전</td></tr>
</table>

하 자 보증서	공사	모든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공종별로 상이	준공시
	용역	학술, 정보통신용역		계약금액의 2/100	
	용역 물품	그 외 용역 및 물품	계약의 성질상 필요시 계약서류에 기재하여 적용 가능		

※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 분할 납부가 원칙.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 가능

1) 입찰보증서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 제51조 ~ 제62조

(2) 적용대상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 서울시의 경우 입찰보증서 제출은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입찰공고문에 명시)

(3) 보험가입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4) 보험가입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는 2.5% 이상(~'26.6.30.종료)

(5) 제출시점

- 입찰참가 신청시

2) 계약보증서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1조~제62조, 제64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 적용대상

- 모든 공사·용역·물품 계약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단, 면제된 경우라도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3) 납부방법

구 분	적용계약	계약상대자가 불이행시	
		1차	2차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납부 (현금 또는 영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	통상적인 방법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②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 (보증기관이 계약금액의 40% 이상 납부하겠다는 내용 포함한 보증서)	300억 이상 공사 일괄·대안입찰	보증서 발급기관이 책임시공	책임시공 불이행시 보증서상 금액 귀속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기간(~'26.6.30.종료)에는 계약보증금 5%,공사이행보증금 20%

- (변경계약) 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해 추가 징구
- (단가계약)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경우,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징구
- (장기계속계약) 총 기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징구해야 하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를 반환

(4) 보험가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5)제출시점

- 계약 체결 시

3) 선금보증서 (제5장 제4절 선금 및 대가지급기준 참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 적용대상

- 선금이 지급된 모든 공사·용역·물품 제조 계약

(3) 보험가입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상

(4) 보험가입금액

- 선금액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4) 손배보증서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구 분	관 계 규 정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200억 이상 PQ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12조의7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용역 소방공사감리용역, 소방시설관리용역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제20조의2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건축사법 제20조, 시행령 제21조
엔지니어링 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전력기술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5

(2) 보험가입기간 및 제출시점, 가입금액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가 입 기 간</th><th>제출시점</th><th>가입금액</th></tr>
<tr><td colspan="2">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200억 이상 PQ</td><td>공사 착공일부터
발주기관 인수일까지</td><td>계약체결시</td><td rowspan="13">계약금액에서
부가세
+
손해보험료
제외한
금액</td></tr>
<tr><td colspan="2">전기공사</td><td>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td><td>공사착공전</td></tr>
<tr><td colspan="2">소방시설공사</td><td>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td><td>계약체결시</td></tr>
<tr><td colspan="2">소방시설설계 용역</td><td rowspan="2">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날까지</td><td>용역완료전</td></tr>
<tr><td colspan="2">소방공사감리 용역</td><td rowspan="2">계약체결시</td></tr>
<tr><td colspan="2">소방시설관리 용역</td><td>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td></tr>
<tr><td rowspan="2">건설
기술
용역</td><td>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td><td rowspan="3">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완공일까지</td><td>계약체결시</td></tr>
<tr><td>실 시 설 계 용 역</td><td>용역완료전</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td><td>계약체결시</td></tr>
<tr><td rowspan="2">엔지니어링
사 업</td><td>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td><td>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td><td>용역완료전</td></tr>
<tr><td>감리, 시험운전, 검사, 보수
안전성검토, 관리, 유지,
사업관리, 설계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 분석 및
관리</td><td>용역 착수일부터
완수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td><td>계약체결시</td></tr>
<tr><td colspan="2">전력기술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td><td>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완공일까지</td><td>공사착공전</td></tr>
</table>

5) 하자보증서 (제6장 제3절 하자담보 제도 참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2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7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0조~제62조, 제70조~제71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특수조건 제15조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1) 도시철도공채

(1) 관계규정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

(2) 적용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건설공사만 해당하며,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등 그 외 공사는 제외

(3) 기준가액

- 대금 청구 금액의 2%
  - ▸2,500원 이상 절상, 2,500원 미만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매입
  -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

(4) 징수시기

-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

2) 인지세

(1) 관계규정

- 인지세법 제3조

(2) 적용대상

-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 물품 단순구매 및 보험용역은 인지세 비과세

(3) 매입기준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비고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 유권해석, 국세청(2012) 》

〈질의〉 물품 구매계약 인지세 과세 여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를 인지세 과제 문서로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통하여 도소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인지 여부

〈답변〉

○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단순한 물품 구매는 인지세 비과세이지만, 물품에 ‘서울특별시’ 라는 표시를 새겨서 납품하거나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 구매는 인지세 과세 대상.

제 2 절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제5장 계약진행 단계

순 서

제1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제2절 주민참여감독제

제3절 하도급 관련 제도

제4절 계약의 변경

제5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6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제1절 사업의 관리 · 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1. 사업의 관리 · 감독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2) 주요내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 9. 기재부·행안부·노동부 합동)〉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단순노무용역에서는 사업담당자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적용(지방계약)

2) 주민참여감독제도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7조~제63조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개념

-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제도

(3) 적용대상

-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 근로자 권리보호

1)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2) 주요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1) 관계규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2) 주요내용

-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함

3) 근로자의 적정 노동시간 준수

(1) 관계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2) 주요내용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68시간 또는 60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별개로 해석 68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휴일이 2일인 경우) 60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 (휴일이 1일인 경우)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52시간** *1주 = 휴일을 포함한 7일 52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포함)

(3) 시행 시기

-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

대 상	시 기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8. 7. 1. '19. 7. 1.
50~300인 미만	'20. 1. 1.
5~50인 미만	'21. 7. 1.

(4) 특례유지 및 제외 업종

① 특례유지업종 : 5개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특례제외업종 : 21개

-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제2절 주민참여감독제

1. 개요

1)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63조

> **제16조(감독)** ①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1) 감독대상(시행령 제60조)

ㅇ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2) 감독 사항(시행령 제61조)

(1)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사항

- 해당 공사 관련 주민들 건의사항 서울시 전달
-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감독

(2) 건의 사항의 반영

-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위촉 및 관리

1) 위촉 자격(법 제16조, 시행령 제57조)

(1) 자 격

- 주민대표자(통장)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2) 인 원 : 1명(사업 소재지가 광범위한 경우 다수 지정가능)

(3) 임 기 :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필요시 조정)

(4) 감독자 최초 위촉 시 서약서 징구

2) 감독 수행

(1) 감독일수

- 공사기간 중 주 1회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특수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 가능

(2) 감독결과 제출(시행령 제62조)

-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3) 실비 지급 및 교육

(1) 실비 지급 기준

-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가능(**필수 X**, 발주부서에서 편성)
- 기준지급금액 : 1일 20,000원(시설부대비로 편성, 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장활동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1회 20,000원)에 준하여 산정

- 기준지급횟수 : 공사별 5회 이내

* 발주부서에서 판단하여 지급금액 및 횟수 상향 가능

- 지급방법 : 감독조서(날인본) 확인 후 지급

(2)감독자 대상 교육(시행령 제63조)

- 착공 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가능

4) 위촉 해제(시행령 제58조)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 또는 타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지방계약법 제38조)

〈주민참여감독자 서약서〉

주민참여감독자 서약서

공사명 :

본인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감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본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관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주민참여공사 감독조서〉

주민참여공사 감독조서

공 사 명			
공사위치			
발주부서		담 당 공 무 원	
계약기간 (공사기간)	~	감독일자	

감 독 내 용		
시공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여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시정 및 건의사항

주민참여 감독자로서 위 공사에 대한 감독활동을 실시하고
본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민참여 감독자 : (서명)

확인자(공사감독공무원) : 소속 과 직급 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3절 하도급 관련 제도

1. 하도급 제도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법

(2) 개념

- 하도급이란 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제도

2) 개별법상 하도급 제도

구분	세부구분	개별법
공 사	건 설 공 사	건설산업기본법
	전 기 공 사	전기공사업법
	정 보 통 신 공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소 방 시 설 공 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용 역	소 프 트 웨 어 용 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안 전 진 단 용 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공사의 하도급 제도 〈서울시 감사위원회 건설공사 하도급분야 담당자 교육 자료 참고〉

1) 건설공사

(1) 관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장,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2) 주요내용

① 직접시공 의무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원칙)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함

구분	비율
도급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절차)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 포함)에게 통보해야 함
  단,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통보 생략

②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원칙)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와 같이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 공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건산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③ 동일한 업종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 (원칙)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 (예외)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

④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 (원칙)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 불가
-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 가능
  ·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 및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고, 하도급 받은 공사의 20% 이내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 등에 한하여, 하도급인의 재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또는 직불)과 재하도급인이 사용한 자재·장비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합의서를 작성·제시하는 경우

⑤ 하도급 제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음,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함
-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함(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2) 전기공사

(1) 관계규정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2) 주요내용

① 동일한 업종 하도급 금지

- (원칙)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 이 경우, 공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② 재하도급 금지

- (원칙)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불가
- (예외)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 가능
  → 이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3)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제도

(1) 관계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2) 주요내용

①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금지

- (원칙)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

자에게 하도급 불가

※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 :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공정별·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

-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가능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 이 경우, 공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

② 재하도급 금지

- (원칙)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불가
- (예외)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하도급을 받는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을 재하도급 가능

→ 이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

4)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제도

(1) 관계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2) 주요내용

- (원칙) 도급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불가
- (예외) 다만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

3. 용역의 하도급 제도

1) 소프트웨어 용역

(1) 관계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2) 주요내용

①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금지

- (원칙)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불가
-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 100분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가능
  -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

    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 이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재하도급 금지

- (원칙)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 불가
-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 재하도급 가능(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 불가)
  -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내용과 같음
  - · 그 밖에 하도급 받은 사업 수행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으로 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2)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

(1) 관계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2) 주요내용

- (원칙)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 불가
- (예외)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하단) 1회에 한해 하도급 가능
  →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함

《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비파괴재하시험, 지반조사 및 탐사, 지형·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계측 및 분석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수중조사,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콘크리트 재료시험,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은 제외한다)
토양부식환경 조사·시험,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 분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0 참고

3) 건설기술 용역

(1) 관계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2) 주요내용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유권해석, 행안부(2016) 》

〈질의〉

○ 홍보물 인쇄 및 부착 물품계약의 계약상대방이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되어 위법한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면제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계약목적물을 직접 납품하여야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4-라"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됨

○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제4절 계약의 변경

1. 계약의 변경

1) 제도 개요

(1) 관계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2) 계약의 변경 구분

구 분		세 부 구 분	
공사	설계 변경	설계서의 정정·보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상태 상이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
		발주기관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추가공사 발생, 특정공종 삭제 등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관급 → 사급, 사급 → 관급
	계약 금액 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전쟁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
용역	과업 내용 변경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계약 금액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전쟁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

구 분		세 부 구 분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소, 검침,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물품	수량 조절	(원칙)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 (예외)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 동의 얻어 100분의 10 범위 초과	
	계약 금액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전쟁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변경계약 처리 절차

(1)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 1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금액 범위(소액수의 2,200만원, 여성기업 등 수의 5,500만원) 내에서 변경계약 가능

(2) 합의각서 작성

- 발주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 변경계약에 대한 합의각서 작성

(3) 변경계약 의뢰

- 방침서, 합의각서
-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기간 변경 시)
- 산출내역서 등 (금액 변경 시)

(4) 변경계약서 초안 송신

- 계약담당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서 초안 송신

(5) 보증서·인지세 등 제출, 계약서 초안 응답서 제출

-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업체는 계약 목적물별·금액별 보증서 및 인지세 등 제출하고,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인지세 등 추가 징구 여부 확인해야 함

(6) 변경계약 체결

-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 시 e-호조 계약대장 등록

2. 공사의 설계변경

1) 설계서의 정정·보완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 이행하기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발주)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함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등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 일치시킴

2)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발주)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함

3)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 요구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서 및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기타사항 등

4)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 계약(발주)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가능
  ·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 이행을 위한 변경

5)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계약(발주)담당자는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

(2)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 계약(발주)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변경 가능

3. 계약금액의 변경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조정요건 : ①과 ② 동시에 충족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 계약의 체결을 의미함)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율(품목 또는 지수)이 100분의3 이상 증감

(2)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 계약 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함
- 다만,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 또는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증액 불가

3)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4)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

5)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청소, 검침, 경시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제5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선금 지급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 개념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 청구에 따라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선금 지급

(1) 지급대상(다음 요건 모두 충족)

-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물품구매는 제외)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2) 지급범위

-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30%)은 의무적으로 지급. 다만, 계약상대자가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최초 선금 신청시 일정률(30%)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선금 지급 기준금액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됨

(3) 지급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
-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적정하게 완료한 경우,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면제 가능

-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지급의 예외

-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 지연될 경우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3) 선금 신청

(1) 신청 서류

- 선금신청서, 각서
- 선금사용계획서(발주부서 경유)

  ※ 일정률(30%) 초과 신청 시 불가피한 사유 작성
- 선금보증서

  ※ 보증기간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 선금전용계좌 사용확약서
- 대가청구서
- 세금계산서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2) 공동수급체 선금 신청 및 지급

- 제 출 자 : 공동수급체 대표자
- 제출서류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선금 신청서류
- 지급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4) 선금 정산

(1) 선금정산방법

- 선금정산은 지급된 선금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것으로, 선금 사용 내역에 따라 지출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결의서 등)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확인

(2) 선금정산식

- 기성(부분준공)·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 이미 선금이 지급되었다면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기성 부분의 대가지급이 가능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 (예시) 총 계약금액이 100원인 계약에서, 선금이 40원 지급되었고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8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선금정산액 = 40 × (80/100) 이므로, 산식에 따라 선금정산액 최소 32원 이상 정산해야하며, 만약 32원 정산 시 선금정산액을 제외한 금액 48원(=80원 - 32원) 대금 지급

5) 선금 반환

(1) 반환 청구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판례 체크 》

〈선급금의 법적 성격〉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금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41다1386 판결)

〈선급금의 충당 여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2. 검사 및 대가지급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7조~제1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8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장)

(2) 진행절차

(부분) 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사업담당자(경유)→계약담당자)

↓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

↓

검사 : 14일 이내
(사업담당자)

↓

(부분) 준공검수조서 발송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

대가지급 : 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계약담당자→계약상대자)

2) (부분)준공신고서 제출

(1) 제출일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준공기한 전까지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부분)준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의미함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함

(2) 제출서류

- (부분)준공신고서 (발주부서 경유)
- (공사의 경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 》

○ **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대상: 추정가격 2억 초과 종합공사, 1억 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시행일 '25.9.29. 이후에 공고한 공사계약 대상)

○ **업무절차**

공사계약 기성·준공 신고서 제출시
건설기계 사용확인서 제출 및 징구

↓

검수 및 대가 지급

↓

계약상대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 지급

↓

계약상대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서 제출 및 징구

※건설기계 미사용 시 건설기계 사용확인서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후 제출

3) 검사원 지정 요구

-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계약담당자 → 사업담당자 검수 요구)
- e-호조 상 검사(수) 요청 등록 (선금정산 내역이 있다면 정산 금액 기재)

4) 검사 실시

(1) 준수기한

- (원칙)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예외) 다음의 경우 검사기간 연장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연장 가능
  ·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대가 포함)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시 7일 연장 가능

(2) 검사내용

- 사업담당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함
-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함
  ·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검수기간을 계산하며, 만약 시정조치로 인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함

5) (부분)준공검수조서 송부

(1) 기관별 검사 공무원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공사·용역		물품	
	금액	검사	금액	검사
본 청	2억원 미만	·주관담당자 6급이하 2명	2천만원 미만	·주관담당자 6급이하 2명
	2억원 이상	·주관담당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2천만원 이상	·주관담당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본 부	1억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하 2명	2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하 2명
	1억~10억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상 1명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2천~5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상 1명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10억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담당주사 ·주관부서 6급이하 1명	5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직속기관·사업소	2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직원 2명	1천만원 미만	·주관부서 직원 2명
	2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 ·주관부서 직원 1명	1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 ·주관부서 직원 1명
시의회 사무처	2억원 미만	·주관과 담당자 6급이하 2명	2천만원 미만	·주관과 담당자 6급이하 2명
	2억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2천만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2) 검수조서 발송 및 e-호조 등록

- 사업담당자는 준공검수조서(기성부분검사조서)를 계약담당자에게 발송
- e-호조 상 검사(수) 등록 및 다중분개 실시

《계약업체 평가 이력관리제》

○ **관련 근거** : 수의계약 업체선정 과정 개선계획(서울시, 2021)〉

○ **업무 절차**

·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업완료 후 계약수행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 이력관리 시스템에 발주자가 직접 등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 평가결과 데이터를 차후 수의계약 발주시 업체 선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 계약부서에 검수조서 제출시 과업수행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 등록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계약업체 평가관리**

수의계약 수행 (업체)	▶	업체 수행능력 평가 (해당 발주부서)	▶	유사사업 검색 (발주부서)	▶	우수업체 선정 (발주부서)

6) 대가지급

(1) 준수기한

- (원칙)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예외) 다음의 경우 대가 지급기간 연장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대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 존속 기간과 해당사유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가 지급 기간 연장 가능한 특약 정할 수 있음

《 **더 알아보기** 》

〈기존에 선금이 지급되었던 경우에는?〉

기존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이 지급되었던 경우에는,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 후에 (부분)준공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분)준공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대가청구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부분)준공신고서에는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는 결과물만큼의 금액을 기재하고, 대가청구서에는 (부분)준공액에서 선금정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총 계약금액이 100원인 계약에서 선금이 40원 기지급된 경우, 부분준공신고 금액이 80원이면, 선금 정산액이 32원이므로 대가청구 금액은 48원임

(2)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 대가청구서
- (부분)준공검수조서(사업담당자에게 징구)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하자보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서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 필요한 채권 확보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하도급의 경우)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
  · 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3) 공동도급의 경우 대가 신청 및 지급

- 제 출 자 : 공동수급체 대표자
- 제출서류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대가 신청서류
- 지급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험료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 적용제외 대상 》

①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 시 협의 후 보험료 사후정산 반영 가능)
②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③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④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⑤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청구서류

-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아래 서류를 통해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② 정산범위

- 사업담당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함(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 후 총차 기준 정산)
-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음.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불가

③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

·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임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함.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상기 조항을 준용함.

《 **판례 체크** 》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 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도급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단지 도급계약에 있어 중도금의 지급의무와 일의 완성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수급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지체가 있음을 들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자신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제6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서울특별시)

(2) 개념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사업담당자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등 노무비의 미지급·지연지급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3) 처리방법

- 서울시는 공사의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 지급

2) 시행 대상

(1) 공사

① 대상

- (원칙) 모든 공사
- (예외)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임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 (선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선지급 수기등록' 후 승인 및 출력하여 감독관 날인 후 재무과 제출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담당자는 업체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공문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내역서를 확인한 후 재무과 제출

②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 직접노무비 : 직접 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 - 보조작업자 및 현장감독자 인건비)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2) 용역

① 대상

- (원칙)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단순노무용역
- (예외)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임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업담당자 승인)

② 지급 방법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구해야 함.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 확인하고 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해야 함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2) 개념

-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방지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주가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 우리시는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3) 처리방법

- 서울시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조의5 서식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담당자를 경유한 후 재무과로 제출

2) 시행 대상 및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대 상</th><th>처리방법</th></tr>
<tr><td rowspan="3">임의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td><td rowspan="2">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td><td>하도급대금
1회이상 지체
(가목)</td><td>① 하수급인 → 발주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② 발주자 → 수급인
: 하도급대금 지급할 것을 권고
③ 발주자 → 하수급인
: 권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도
미지급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td></tr>
<tr><td>공사 예정가격
대비 82/100
미달 금액으로
도급계약 체결
(나목)</td><td>①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
시공 부분 명시하여 청구하되,
하도급대금 수령인을 하수급인으로 지정
② 발주자 → 하수급인
: 하도급대금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td></tr>
<tr><td colspan="2">수급인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2호)</td><td>① 발주자 → 하수급인
: 사유 확인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금액 통보
② 하수급인 → 발주자
: 15일 이내에 직접지급 청구
③ 발주자 → 하수급인
: 하도급대금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td></tr>
<tr><td rowspan="6">의무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td><td colspan="3">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 그 뜻과 지급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td></tr>
<tr><td colspan="3">하도급 대금지급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td></tr>
<tr><td colspan="3">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td></tr>
<tr><td colspan="3">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td></tr>
<tr><td colspan="3">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td></tr>
<tr><td colspan="3">공사 예정가격 대비 82/100 미달 금액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td></tr>
</table>

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1) 제도 개요

(1) 관계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2)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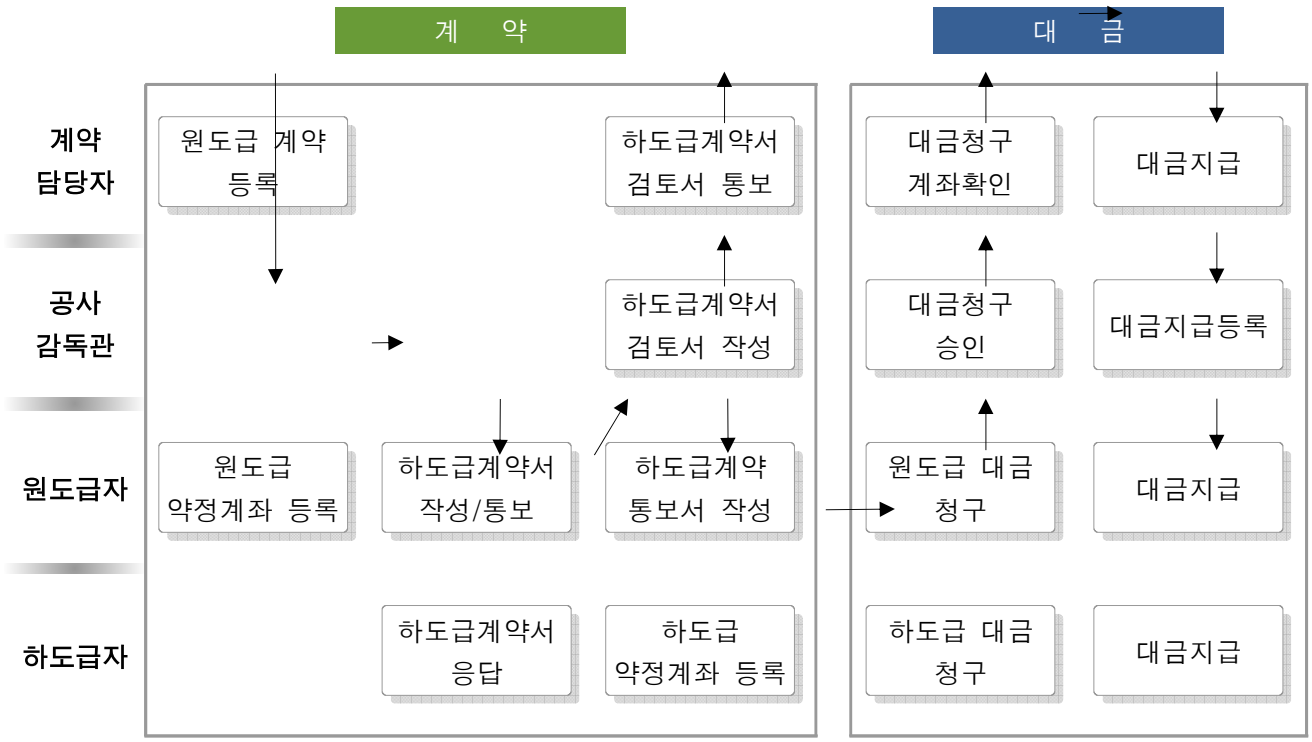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3) 대상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이용방법

(1) 처리절차



① 계약담당자

-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사업의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지킴이」에 다음 각 호의 원도급 계약내용 등록
  · 계약정보, 공사 시행 부서, 공사감독관, 연락처, 공동도급정보
  · 나라장터계약일 경우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등록, 자체계약은 수기 등록

② 원도급자

-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회원가입하고 계좌개설신청서를 출력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전용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 개설
- 개설한 전용계좌번호를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 하도급계약(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 등록

③ 하도급자

- 원도급자가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후 승답
-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하도급지킴이」 회원가입 후 전용계좌 등록

④ 원도급자

- 하도급계약정보 확인 후 계약체결서 송신, 하도급계약통보서 작성 및 기관통보

⑤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 원도급자가 통보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확인 후 하도급계약서 검토서 등록

⑥ 계약담당자

- 하도급계약서 검토서 최종확인 후 승인 또는 부적격 통보

⑦ 원/하도급자

- 기성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대금 신청 내역을 등록하고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

⑧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 원도급자가 기성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구분 청구 여부와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
- 원도급자가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청구내역서와 현장

인명부를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

⑨ 계약담당자

- e호조 등 회계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출할 때에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공사의 경우 해당 계좌가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인지를 확인한 후 처리

⑩ 공사감독관(사업담당자)

- 대금청구서 승인 후 대금을 입금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지급내역등록

⑪ 원/하도급자

- 고정계좌로 수령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지급 확인 절차를 이행한 후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4. 노임 압류 금지 제도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시행령 제84조

(2) 개념

-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

《 판례 체크 》

〈노임 압류의 효력〉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대법원 2000.7.4. 선고 2000다21048 판결)

5.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제도개선 계획(서울시, 2015)

(2) 개념

- 계약·발주담당자가 선금 정산 및 대가 지급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월별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기적으로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3) 적용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사업기간 2개월 이상 용역 (학술용역 제외)

2) 처리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입찰공고문에 임금체불시 제재조치 사항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안내문자 개별 발송	⇨	매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확인	⇨	선금정산·대가 검수시 월별 임금지급내역 확인
계약 및 발주부서		**발주부서**		**발주 및 계약부서**

① 1단계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단계

- (계약부서) 입찰공고문상 계약업체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준수와 매월 임금지급 내역 발주부서 제출 및 미이행시 고용노동청에 통보 내용 명시
- (발주부서)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 명단을 받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② 2단계 : 사업 수행 단계

- (발주부서) 선금 정산·대가 검수 시에만 확인하던 근로자 인건비 지급 내역

매월 의무 확인

※ 근로자 통장사본, 지출내역서 등으로 확인하며, 임금 미지급시 즉시 시정조치 요구하고 조치요구사항 불응 시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③ 3단계 : 검수·대가지급 단계

- (발주부서) 선금정산서 및 기성·준공대가 검수 시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및 보험료 지출내역 확인 후 계약부서로 서류 제출
- (계약부서) 임금체불 여부 확인 후 대가 지급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순 서

제1절 계약정보 공개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활용

제3절 하자담보 제도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제1절 계약정보 공개

1. 계약정보 공개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4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 개념

- 발주 사업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발주계획부터 공고, 계약, 대금지급, 검사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제도

2) 주요내용

(1) 공개대상

-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
- 입찰공고(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 공고 포함)
- 개찰의 결과
-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 계약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명,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리·감독·검사 현황
- 대가 지급 현황

(2) 공개위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우리 시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3) 공개기간

-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2.「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1) 추진개요

(1) 시스템 주소 : http://contract.seoul.go.kr

(2) 추진목적

- 조달청, 이호조, 기관별 홈페이지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제공하던 서울시의 계약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공개
- 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 대금지급, 검사, 하도급 정보 등 계약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

2) 공개정보

- 서울시 기관별 발주계획 정보 제공 (매 분기별)
- 입찰정보 (사전규격, 입찰공고, 개찰결과)
- 계약정보 (계약명, 금액, 기간, 업체명, 낙찰률, 착수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유, 검수 및 대가지급, 하도급 등)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결과
- 기관별·월별·계약종류별 통계 현황
- 희망기업 위치 및 주요 취급품목 정보
- 수의계약 공개견적 요청 프로세스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활용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2) 개념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활용하여,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업무수행 내용에 대하여 우수내용과 미비사항을 기록 및 차기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고 사례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유사사고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

  * One-PMIS : 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http://pmis.eseoul.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3) 평가시기

- 공정률 30%, 60%, 준공 전, 필요시 추가평가 가능

2) 평가내용

(1) 일반 기재사항

- 공사업체의 행정처분사항, 경영상태, 신용도 등 정량적 기록
- 사고처리 행태, 관계자의 역량 등 정성적 기록

(2) 단계별 기재사항

- 설계 : 내역·도면 불일치, 각종 조사 미흡 등
- 시공 : 우수 및 부실시공, 공기단축, 예산절감, 디자인개선 및 신공법 등
- 감리 : 부실시공 방지, 하도급관리 부적정, 발주처 허위보고 등

2. 준공도면 전산화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2) 개념

- 준공도면 전산화는 기관별 분산 관리되던 시설공사 준공도면에 대한 전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면 분실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제도

2) 처리절차

계약상대자	⇒	사업담당자	⇒	계약담당자
준공검사 요청 시 One-PMIS에 준공도면 입력		준공조서 행정정보연계 결재 후 계약부서에 통보		준공도면 확인 후 준공금 지급

제3절 하자담보 제도

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20조~제2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2) 개념

- 계약상대자가 목적물을 준공한 후 일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1) 검사주체

- (원칙) 사업담당자
- (예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86/10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2) 시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함

3) 존속기간

(1) 기준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
- 공종 간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함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기간을 정함.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차 계약 체결시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함

(2) 계약 목적물별·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구분	세부 구분	내 용	규 정
공사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	1년(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1년	
용역	학술용역	1년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정보통신용역	1년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은 X)	
	그 외	(원칙) 없음 (예외) 사업담당자가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	
물품		1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2. 하자보수보증금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20조~제2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2) 개념

-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준공한 후 일정한 담보책임 존속기간동안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비율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2) 주요 내용

(1) 기준

-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2/100 이상 10/100 이하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고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
- 공종 간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함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함. 다만,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함

(2) 납부면제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의 자와 계약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

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사업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 면제된 경우라도 하자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

(3) 하자보수보증금률

구 분	내 용	보증금률
공 사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5/100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4/100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3/100
	기타 공사	2/100
용 역	모든 용역	2/100
물 품	제조	3/100
	수리, 가동, 구매	2/100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1. 계약의 이행지체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2) 개념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징구하게 하는 제도

2) 지연배상금

(1) 산출방법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률

① 계약금액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의미함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해 검사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 산정

② 지체일수

-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다만, 준공기간 이후 준공검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시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에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③ 지연배상금률

구분	세부대상	지연배상금률
공사	모든 공사	0.5/1000
용역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 제외)	1.3/1000
물품	물품의 제조·구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0.8/1000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자체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	0.5/1000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1.3/1000
기타	운송·보관·양곡가공	2.5/1000
	기타 계약	1.3/1000

※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가능

(2)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함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않은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지연배상금 면제사유

- 불가항력(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해당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상기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사업담당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함(계약변경)

2. 계약의 해제 · 해지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해제·해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계약해제·해지하는 경우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2) 개념

- 계약담당자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는 제도

《 더 알아보기 》

〈해제와 해지의 차이〉

○ 해제 :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해지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예) 당해 계약목적물이 일부 납품 완료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조치

2)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table>
<tr><th>구 분</th><th>책임소재</th><th>해제·해지 사유</th><th>후속조치</th></tr>
<tr><td rowspan="2">계약담당자의 판단</td><td>계약상대자</td><td>·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세입조치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입찰시 거짓서류 제출하여 부당한 낙찰
· 청렴계약서 내용 위반(금품 제공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 지시 불이행
·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계약이행 곤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
· 장기계속계약에서 2차 이후 계약 미체결
·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보완하지 않거나 계획서대로 미이행
· 선금 사용내역서 확인 결과, 반복적으로 선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 상당한 지장 명백
· 그밖의 부정행위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td><td>· 계약담당자
: 기성 인수시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
: 자재철거·반환
선금 반환(이자가산)
※ 부정당업자 제재 필요</td></tr>
<tr><td>발주기관</td><td>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td><td rowspan="2">· 계약담당자(14일이내)
① 기성 인수시 대가지급
인력·장비 철수비용
② 계약보증금 반환
· 계약상대자
: 선금 반환(이자미가산)</td></tr>
<tr><td>계약상대자의 청구</td><td>없 음</td><td>· 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이 30/100 이상 감소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을 말함
·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40/100 초과</td></tr>
</table>

제5절 부정당업자 제한 제도

1.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31조~제31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9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2) 개념

- 경쟁의 공정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2) 제한기간 및 사유

(1) 제한기준

① 제한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② 가중사유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 가능

③ 경감사유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단, 제한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④ 제척기간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뇌물은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가

(2) 주요 제한사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부실벌점)
-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하자비율, 보수비율)
-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하도급 거짓 통보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등

(3) 제한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

사전통지

심의요청부서에서 계약상대자 등에게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실시

※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1조

↓

청문 실시

심의요청부서에서 계약상대자 등에게 청문 완료 후 계약심의 요청

※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심의요청부서는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제안설명서 내용 : 제안이유, 사업개요, 계약상대자 인적사항, 추진경위, 제재 요청기간, 청문 증빙자료 등)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심의요청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한기간 심의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심의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 등에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재 통보

〈본청〉
심의요청부서에서 부정당업자에 제한처분 통지 공문 시행 및 G2B 직접 게재 **(제재 처분서에 반드시 시장 직인 날인하여 통지)**
⇒ **제한처분 통지 및 G2B 게재 후 결과를 본청 재무과로 통보**

〈사업소〉
심의요청부서에서 부정당업자에 제한처분 통지 공문 시행 및 G2B 직접 게재 **(제재 처분서에 반드시 시장 직인 날인하여 통지)**
⇒ **제한처분 통지 및 G2B 게재 후 결과를 본청 재무과로 통보**

※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서울시장)이나 재결청(행안부장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제기

※ 근거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 과징금 부과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31조~제31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93조

(2) 개념

- 계약상대자 등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2) 과징금 부과

(1) 부과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별표3, 별표4〉

- 부과금액 : 제재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
- 경감금액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감경가능

(2) 부과사유

구 분	세부 구분	과징금 제외 사유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 책임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 담합 · 사기, 부정행위로 입찰·계약 관련 지자체 손해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참가자격 제한 요청 ·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부 참가자격 제한 요청 · 금품·재산상 이익 제공 · 법 제33조 위반하여 계약 · 입찰·계약서류 위·변조 · 고의로 무효입찰 · 입찰참가, 계약체결 등 방해 · 조사설계(원가계산) 용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액산정 부적정 · 타당성조사 부실 수행으로 손해 · 감독 또는 검사시 직무 방해 · 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주자에 의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 오류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책임 있는 경우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 적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지 않는 경우로 책임이 경미, 재위반 위험성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액담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 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 미체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부과 절차 (시 본청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과징금 제도 안내)

발주부서 → 계약상대자 등
※ 근거법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부정당업자 조치계획 수립

발주부서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방침 수립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심의요청부서는 제안설명서 작성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들이 심의요청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한기간 심의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상정여부 판단

발주부서에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상정이 타당한지 판단

→ 타당 X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타당 O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심의신청

발주부서 → 재무과 → 행정안전부

→ 기각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인용

과징금 부과 통지

발주부서 → 부정당업자

↓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1.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34조~제3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23조

(2) 개념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하도록 하는 제도

2)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제기 사유 발생
※ ① 사유 ② 규모 모두 충족

〈사유〉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자체 계약 범위와 관련된 사항
②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④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⑤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시행령 참고)
〈규모(추정가격 기준)〉
① 공사 : 종합 10억원, 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② 용역·물품 : 5천만원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4조, 시행령 제110조

↓

이의신청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장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4조

↓

심사 후 결과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 신청인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4조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재심청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인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4조

↓

심사·조정 후 결과 통지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 청구인, 해당 지자체장
※ 근거법 : 지방계약법 제34조

제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등

순 서

제1절 유권해석

제2절 감사지적사례

제3절 자주하는 계약 질문

제1절 유권해석

1. 입찰참가자격, 발주방법 결정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입찰** (행정안전부, 2021.4.)

〈질의〉

○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 공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로 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다른 법령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규정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할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확인이 필요함

○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인 견적 수의계약 견적제출 자격 및 계약체결** (행정안전부, 2020.11.)

〈질의〉

○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대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을 함께 견적서 제출 대상으로 제한이 가능한지와 견적서 제출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1순위자인 중기업인 여성기업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다·마목 및 제3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여성기업은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⑧"에서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 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대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으로 제한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담당자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견적서 제출자로 제한한 경우라면 중기업인 여성기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비교)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시 여성·장애인기업으로 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6.4.)

〈질의〉

○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전자견적)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견적서 제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6)"에 따라 견적서 제출 대상을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함

○ 2인 견적 공고 시 견적서 제한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9.7.)

〈질의〉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를 위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매일 배송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반품 및 긴급발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급식의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와 창고를 갖춘 업체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중복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3)-가)"에 따라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음)으로 제한이 가능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나-6)"의 각호의 실적, 규격, 재질·품질, 제조공장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1-나-7)"에서 "3)"의 각호와 "6)"의 각호의 사항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2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제한과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창고 소재지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복하여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허통상실시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에 따른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7.9.)

〈질의〉

○ 공사 발주 전 발주부서와 기술보유자(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내용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낙찰자(원도급자)간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후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와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제외)와 〈별첨양식 1〉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 기술보유자(기술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에 특허공법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기술보유자의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의 허락을 얻어 일정범위에 한하여 여러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특허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시 통상실시권자는 협약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특허기술보유자가 낙찰자와의 사용협약에 따라 하도급을 받을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자는 하도급을 포함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 **본점·지점의 업종등록 인정 범위** (행정안전부, 2017.2.)

〈질의〉

○ 입찰참가자격이 환경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인 입찰에 환경측정대행업을 지점에서 등록한 법인의 본점이 참가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본점의 대표자이므로,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업종 등록이 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지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할 사항임

※ (비교)

○ **경기도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4.7.)

〈질의〉

○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과거 본점 소재지인 동시에 현재 사업자 및 옥외광고업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및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여부

- 본점은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 및 영업행위는 서울지점에서 계속 수행 중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제2절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 미만 계약의 경우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 여기서 주된 영업소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본사 소재지를 말함

○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서울특별시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위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나-4)"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점의 견적서 제출도 가능할 것임

○ 발주기관과 인접한 시·도에 위치한 사업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기준 (행정안전부, 2016.5.)

〈질의〉

○ 지자체 산하 사업소 시설의 보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소가 인접 시·도에 소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 공사현장 및 해당 지자체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나

-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발주기관과 인접한 시·도에 위치한 사업소의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이 있는 시·도와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지역제한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차선도색 차량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안전부, 2016.5.)

〈질의〉

○ 지자체에서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제한했으나 해당 공사 시공에 필수적인 융해기 부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보유업체로부터 장비·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 차선도색 공사 발주 시 차선도책 차량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사항으로 보아 제한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건설기계 또는 장비의 보유상황(소유 또는 임차)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7-나-18)"에 따르면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는 입찰 및 계약 시 계약담당자가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2015.6.)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5관에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용역 노임계산을 보통인부 노임보다 높게 원가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단위당 가격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장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과 다르게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입찰 및 개찰

○ **재공고 수의계약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2020.8.)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또는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 행령 제 108조제1항에 서 시·도 및 시·군·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규모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 계약인 경우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개찰 후 예정가격 작성 및 새로운 입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0.6.)

〈질의〉

1)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 결정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개찰된 상황에서 개찰 후 예정가격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2) 개찰 이후 예정가격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해 입찰 전체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입찰가격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한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개찰 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 「지방계약법」 제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3-가"에서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예정가격에 관한 착오·오류 등으로 인한 입찰 취소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찰이 완료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조달청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 (비교)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 건 계약체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4.12.)

〈질의〉

○ 입찰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은 86.745%이나, 계약담당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시스템(g2b)에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잘못 입력하여 개찰을 완료한 경우

-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 또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입찰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하며,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해야 하며,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입찰공고의 내용을 공고기간 중에 변경하거나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라면 입찰공고문의 내용대로 입찰결과를 수작업으로 계산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행정안전부, 2020.6.)

〈질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 지방계약법상 입찰인지 여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술용역 PQ 재공고의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비교)

○ **사전심사를 거친 후 가격입찰 유찰에 따른 재공고입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4.8.)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실시설계용역PQ)하여 적격자(A, B사)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사만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되었을 경우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라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사전심사단계와 가격입찰공고단계 중 어느 단계부터 진행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최초 공고 시 사전심사 통과자 2개 업체 중 1개사만 가격입찰을 한 경우 사실상 유효한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재공고시 사전심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계약정보 공개 대상 (행정안전부, 2018.12.)

〈질의〉

○ 2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4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발주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의 개정(2014. 2. 5.)으로 공개대상 수의계약금액 하한선이 폐지되어 모든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비교)

○ **입찰공고 시 단가공개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5.6.)

〈질의〉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총액)물품입찰 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기한 물량내역서를 게재하여 공고하고 있으나, 품목별 단가가 기재된 가격조사서를 공고문에 게재하여 업체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액입찰에서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공개한 기초금액과 물량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인 가격조사서를 입찰공고시 공개하는 것은 입찰금액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입찰자들의 선의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8.11.)

〈질의〉

○ 학교 공사는 학습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방학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3조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부에서 통보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요령 통보」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 PC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임차, 복구·보수 사업, 기타 1월부터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의 대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신규 발주되는 시설공사의 경우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대표자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법제처, 2017.4.)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서는 입찰무효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고(전단),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改名)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

○ 대표자의 변경 없이 그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른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입찰은 무효

○ **법인 주소변경 등기 관련 입찰무효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2016.7.)

〈질의〉

○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당일에 주소변경 등기가 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 무효인지 여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가"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한편, 같은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8), 15)"에 따르면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11장 입찰유의서"를 준용하고,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업체 해당 여부는 입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

○ 지역제한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 변경 시점에 관하여는 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 입찰 시 복수 예비가격 추첨의 유효성 여부 (행정안전부, 2016.7.)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3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PQ 대상)을 동시에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가격입찰을 실시하면서, 중복 낙찰을 피하기 위해 1건 용역의 낙찰 시 다른 용역의 입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공고문에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든 업체의 투찰은 허용하고 순차적으로 개찰하면서 전 입찰의 1순위자는 다음 입찰의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개찰하여 1순위자의 복수예가 추첨번호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두 번째 입찰은 첫 번째 입찰의 1순위자를 제외하지 않고 개찰하고, 세 번째 입찰은 첫 번째, 두 번째 입찰의 1순위자를 제외하여 개찰한 경우에, 동일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찰한 두 번째, 세 번째 가격입찰이 유효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5-다"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르면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의 추첨은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가 추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부 입찰참가자의 추첨번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바, 모든 업체의 투찰을 허용하였다면 전 입찰의 1순위자가 추첨한 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외시킨 추첨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계약담당자는 같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건의 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먼저 개찰한 입찰에서 1순위자로 결정되었다 하여 그 이후 입찰에서 해당 1순위자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예정가격의 효력 여부

(행정안전부, 2016.4.)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일부 참가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있는지?

-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 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재22조에 따라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복수예비가격 추첨은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결정된 예정가격도 효력이 있는 바,

- 해당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음

○ 10억 미만 기술용역 PQ 전 가격입찰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5.)

〈질의〉

○ 용역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을 실시할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 단서조항(가격입찰 선행)은 건설사업관리 용역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제외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시가 질의한 10억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발주처의 재량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명입찰 가능 여부(행정안전부, 2025. 10.)

〈질의〉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공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 품질 향상 등의 사유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발주기관이 5인 이상을 지명할 수 있는 경우 지명입찰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호가목에서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로서 용역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등의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술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5천만원 이하의 설계용역 발주 시 특수한 기술 등이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라면 지명입찰에 부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입찰 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적격심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실적평가(행정안전부, 2021.4.)

〈질의〉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경우의 실적평가는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를 따르는데 발주기관이 현장여건에 따라 전문업종의 특정 시설물유형의 실적으로 제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1-가'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라면 전문공사에 참여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실적 중 특정 시설물유형의 실적만을 인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시설공사 적격심사 접근성 평가방법 (행정안전부, 2021.4.)

〈질의〉

○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현장이 서울시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7〉에 따른 접근성 평가 시 해당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서울특별시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7〉 '1-다'접근성 평가기준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2-라'에서 시·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의미함

○ 질의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은 발주기관이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는 시·군에 포함되지 않음

○ 즉, 서울시가 발주했을지라도 서울시 업체는 접근성 가점을 받을 수 없고 공사현장이 소재한 인접시가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거짓실적증명서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2020.12.)

〈질의〉

○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입찰과정에서 거짓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3호에서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3-가-3)"에서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토록 한 규정은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여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계약상대자가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인 경우라면 해당 거짓 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함

-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당해 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비교)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허위서류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15.10.)

〈질의〉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가격입찰 공고 후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서류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업무 중복도 관련 자료를 누락하였으나,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적용하여도 PQ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에 해당되므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절 "1-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바,

○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업수행능력평가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사서류의 부정·허위 제출자에 해당되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사실관계는 해당용역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내용 및 평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인할 사항임.

○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 중 일부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시 인정 여부(행정안전부, 2020.11.)

〈질의〉

○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2018년도 실적 중 일부를 누락하여 관련협회에 신고하고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도 포함하여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Ⅱ'에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 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평가 시 공사실적 인정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 중 1회계연도 내의(2018년도) 실적에 일부 누락신고분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당일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의 인정 여부(행정안전부, 2020.9.)

〈질의〉

○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당일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가 적격심사서류로서 유효한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다. 경영상태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기간계산은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초일은 제외하고 기산하므로, 입찰공고일 당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는 적격심사서류로서 유효한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없음

※ (비교)
○ **입찰공고일 전일로 만료되는 신용평가 등급의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2020.10.)

〈질의〉
○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평가 시 입찰공고일 전일로 만료되는 신용평가등급을 유효한 평가자료로 보아 적격심사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다. 경영상태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전에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유효한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인정 여부(행정안전부, 2018.7.)

〈질의〉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적격심사대상업체 입사일이 입찰 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책임연구원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 입사일로 기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및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4대 보험 등이 미신고 된 경우 책임연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2"에서 각 평가요소의 판단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의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입찰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책임연구원을 평가하며, 책임연구원의 재직여부는 실제 입·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재직증명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정기준 및 경영상태 평가 방법** (행정안전부, 2017.4.)

〈질의〉

1) 석면해체·제거업의 경우 실적을 관리하는 관련협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인정 여부

2) 석면해체·제거업은 공사업종이 아닌 용역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위의 평가방법과 별개로 경영상태 평가에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 〈별표3〉 'Ⅲ-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신용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 'Ⅲ-9'에 등재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관련협회가 아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과-2168(2016. 7. 19.)호에 따라 "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경영상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 "Ⅰ-1"의 단서에 따라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해당업종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세부기준 〈별표 3-1〉 '주1)-가)'에 따라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품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 방법** (행정안전부, 2016.7.)

〈질의〉

○ △△자치단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인 A업체와 A업체에게 그 물품을 유통·공급한 B업체가 동일한 입찰에 동시 참여하였으나,

- A업체는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물품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B업체의 실적인정 금액은 A업체와 △△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범위 내 이행금액인지, 아니면 B업체와 A업체 간의 민간거래 실적금액인지 여부

〈답변〉

○ 물품 적격심사의 이행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3-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하며,

- 〈별표 1〉 "1-가-주6)"에 따라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사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A업체는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납품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B업체의 경우는 A업체와 계약하여 납품 완료된 금액을 민간거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납품실적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2016.6.)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 평가기준의 이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 1순위자가 민간실적으로서 관련협회에 하도급 신고를 한 공사 중 소요되는 사급자재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원도급자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을 경우 물품 납품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물품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적이 아닌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사급자재를 납품한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에 대한 민간거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 사급자재를 포함하여 해당공사 계약상대자와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건설공사 실적으로 관련협회에 등록한 경우라면 해당 실적은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며, 공사에 포함된 사급자재를 다시 물품 납품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16.6.)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입찰에 있어서 최종 계약이행자(C)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중간 유통단계에 참여한 업체들(A,B)이 본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 동일 실적에 대하여 A의 B에 대한 납품실적과 B의 C에 대한 납품실적을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의 실적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일, A의 납품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적격심사에 통과하지 아니하여 차순위자인 B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였으나 B가 제출한 실적이 A의 납품실적과 동일한 실적이 아닌 별개의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다시 A사의 실적을 인정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가-주5)"에 따라 동일한 발주기관에 납품·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함.

○ **시설공사 적격심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행정안전부, 2015.9.)

〈질의〉

○ 토목공사업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관련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입찰공고일 현재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협회에 신고가 지연된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5"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10점을 감점하는 평가항목임.

○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는 〈별지 2〉 "5-나-3)"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함. 다만,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함.

○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별지 2〉 "5-나-2)"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거나 일부 기술자를 관련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전산망으로 확인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상 해당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감점 처리하며, 별도로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지 아니함.

○ **양도·양수 계약 시 양수업체 실적 인정 범위** (행정안전부, 2014.11.)

〈질의〉

○ 물품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다른 업체의 사업을 양수했을 경우 양도업체의 물품이행 실적을 양수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사업 양수·양도 시 실적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사업 양수·양도에 따라 양도업체의 관리·의무가 양수업체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양도업체의 실적을 양수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적격심사 평가 중 기술능력의 일반기술자 평가** (행정안전부, 2024. 7.)

〈질의〉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 적격심사 평가 중 기술능력의 일반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

술인 보유증명서에 등재된 인원만 일반기술자 평가 인원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없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인원도 평가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1-나-주)-가)’에서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의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해당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유 인원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부채 ·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 평균비율 산정방법 (행정안전부, 2024. 10.)

〈질의〉

○ 입찰참가자격이 2개의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경우 부채·유동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업종 평균비율 산정방법

〈답변〉

○ 경영상태 평가에 대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2-나’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갖추어야 하는 공사가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심사서류의 보완·추가 서류 제출 횟수 관련 (행정안전부, 2025. 1.)

〈질의〉

○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추가 서류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계약담당자의 보완 요구 횟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가 제출 가능한 횟수를 규정한 사항인지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제3절 ″6″에서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당초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만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자기평가한 점수와 달리 적격심사 대상자의 단순 실수로 서류 미비, 오류, 미제출해 통과점수가 미달할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 차원에서 보완·추가 제출 기회를 부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입찰의 공정성 및 타 입찰참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보완·추가 제출 기회는 1회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4.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기한** (행정안전부, 2019.12.)

〈질의〉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3-나”에서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절 “4-사-6)”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순위를 발표해야 하나,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동시에 제출 가능할 것이며,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행정안전부, 2017.11.)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위원회 구성원에 계약 당사자인 당해 지자체 공무원은 배제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1-나’ 및 ‘1-바’의 규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구성하여야 함

○ **물품 또는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시 공사계약 포함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7.4.)

〈질의〉

○ 지자체가 물품 또는 용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위 규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보완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6.8.)

〈질의〉

○ □□교육청에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관련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 확인서)를 발주기관이 요구한 증빙자료(관련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확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진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 "4-마"에 따른 제안서의 보완 요구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보완 요구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의 판단 기준 및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기재된 자격증 보유상태를 발주기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발주기관이 작성한 입찰공고문에 '제안서 접수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접수를 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답변〉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4-마"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4-바"에 다라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엿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완요구를 하도록 정한 것은 발주기관에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한 강행 규정이며,

- 보완 요구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안서의 본직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기존 제안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자격증 보유 상태에 대한 보완 요구가 당초 제안서의 참여인력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보완 요구가 가능할 것임
- 또한, 발주기관에서 제3절 "1-다"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제안서의 제출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출 서류의 보완 요구를 통하여 평가가 가능할 것임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변경 가능 범위 (행정안전부, 2016.6.)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가 조형물 제작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

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서의 내용을 차 순위 협상적격자가 제출한 제안 내용으로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8-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술제안서 협상은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일부를 추가, 보안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하고,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모두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질의의 경우 우선협상적격자가 제출한 제안내용을 차 순위 협상적격자가 제출한 내용 중 일부로 상호 협상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차순위자 제안서로 본질을 모두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능한 학술연구용역범위 (행정안전부, 2016.3.)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에 따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단순노무용역과 학술용역을 예시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적정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노무용역·학술용역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26)"에 따라 부적정한 사례임을 예시한 사항인 바,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예가 초과 시 나머지 협상적격자 1개 업체만으로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는지 (행정안전부, 2016.3.)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진행한 경우에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1개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나머지 협상적격자 1개 업체만으로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각 호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이 참가하여 1인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1인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해당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5-나"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시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지역업체(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항목의 배점부여 여부 (행정안전부, 2014.9.)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4-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별표1〉, 〈별표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 또는 정성적 평가항목에 지역업체(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에 배점(3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이므로,

○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평가와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의 배점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협상계약 체결 전 발생한 업체의 실비 보상 기준 (행정안전부, 2014.9.)

〈질의〉

○ 자치단체 홍보관 설치·운영 용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 중에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협상 진행 중 발생한 협상대상자의 비용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을 근거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나, 용역으로 발주한 질의의 사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협상 진행에 따른 발생 비용의 보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해당 규정은 2016.9.13.일자 삭제)

○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다"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의 경우 발주기관은 전체 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질의의 사안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협상 진행에 따른 발생 비용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시 평가 실시 의무** (행정안전부, 2021.11.)

〈질의〉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1-가"에서 입찰공고 시 협상계약의 기준과 절차,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명시하고, "5-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시 평가 방법 등 결정** (행정안전부, 2025. 4.)

〈질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적격 여부 판정을 위한 평가에 있어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정과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준수해야 하는지?

- 위에 따른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평가방법, 평가위원 수 등 운영기준과 절차를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1-다"에서 입찰공고에 협상계약의 기준과 절차,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명시하고, "5-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한 세부기준을 충족한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당초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방법 등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명시된 근로자 인정기준에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가 동일한 자만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 2020.12.)

〈질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업체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한 규정 관련,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근로자 인정기준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로 규정한 것은 동일한 근로자인 경우만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정시 취약계층근로자를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자로 한 것은 취약계층근로자의 장기고용을 촉진·유도하려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취약계층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된 경우'만을 의미함

○ 다른 법령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0.3.)

〈질의〉

○ ○○도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 ○○농식품유통진흥원과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 학교급식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명시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해당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대상 등의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례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견적제출 후 계약 포기자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2018.2.)

〈질의〉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1~4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모두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1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지 새롭게 견적서 제출한 자로 결정할 지는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나, 2순위부터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비교)

○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이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2016.4.)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 하에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

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됨.

○ 수의계약 결격사유 (행정안전부, 2016.4.)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 서울시교육청의 계약포기 업체에 대하여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참가제한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 적용의 타당성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의 법령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가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량을 행사하여 해당 목적 사업의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므로 수의계약 절차를 정한 법령을 준수하는 한 계약상대자 선정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 그 지위를 법적으로 구하거나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견적서 제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성립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수의견적서 제출 무효 여부** (행정안전부, 2015.11.)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15)"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따라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해당 견적서 제출자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적용** (행정안전부, 2015.7.)

〈질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동법 제4조를 근거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제3항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할 것임

6.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0.6.)

〈질의〉

○ 계약상대방이 착수계 제출 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참여연구원이 아닌자를 참여연구원으로 사칭하여 과업 수행회의에 참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가-10)"에서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허위 증명서 발급, 참여연구원 사칭 등을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로 보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의 목적·성질, 입찰공고문, 계약문서, 관련법령 및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교)

○ **계약체결 이후 적격심사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4.9.)

〈질의〉

○ 일반용역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을 취소한 경우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차"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적격심사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체결 한 후에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계약이행보증금 귀속주체 (행정안전부, 2019.8.)

〈질의〉

○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려는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아닌 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및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사항의 경우는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 상태로 계약체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9.3.)

〈질의〉

○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문에 계약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일부 제조사에서 낙찰자에게 확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라-2)”에 따르면,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낙찰 이후 이를 실제 이행하는 자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이므로 실질적인 협약은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낙찰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그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7-나-21)”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체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 바, 발주부서에서는 낙찰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낙찰자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 물품공급·기술지원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협약변경 또는 분리발주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보증금 추가 산정 여부** (행정안전부, 2018.11.)

〈질의〉

○ 계약상대자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 받아야 하는 계약보증금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여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나,

-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낙찰자가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된 자)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절차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교)

○ **낙찰자의 계약이행보증 미이행에 따른 입찰제재 기준** (행정안전부, 2015.1.)

〈질의〉

○ 적격심사 실시 후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 통보를 하였으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차 순위자를 심사하는 지 아니면 해당입찰을 종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1-가"에 따르면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1-라"에서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제6절 "4-가"에서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해당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낙찰자가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된 자)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절차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계약 체결과정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7.6.)

〈질의〉

○ 낙찰자 선정(6. 19.) 후 계약체결 과정 중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업체 패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0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다른 법령인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비교)

○ **장기계속계약 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연차별 계약체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5.1.)

〈질의〉

○ 자동연장 조건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황일 경우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0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경우라면 연차별 계약이 가능함

○ 총액 물품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한 기준 (행정안전부, 2016.10.)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물품입찰(총액) 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기한 물량내역서를 게재하여 공고하고, 낙찰자가 착수신고서 제출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품목별 가격조사서를 기준으로 품목당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절 “1-가”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함.

-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6절 “1”과 “2”에 따른 수량조절·물량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8절 “3-라”에 따른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 질의와 관련하여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품목별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로 발주기관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단가가 기재된 품목별 가격조사서를 제공하여 품목당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 금지** (행정안전부, 2016.1.)

○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일부 기관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시방서, 과업내용 등에 따라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정 또는 정산하여 문제 제기.

○ 관련 법령에서 정산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항목을 명시한 경우라면 정산 가능.

○ **개인과 계약 체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5.11.)

〈질의〉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개인과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임

7. 공동계약

○ **공동계약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단독계약으로 변경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0.7.)

〈질의〉

○ 공동이행방식으로 A업체(대표사 지분율 80%), B업체(지분율 20%)와 용역계약 중에 B업체가 경영난으로 사업자 폐업(부도, 파산은 아님) 및 중도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A업체가 B업체의 지분율 20%를 흡수하여 A업체와의 단독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5-가-1)"에서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2)"에서 계약담당자는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존 구성원이 1개사인 경우 발주기관과 구성원이 모두 탈퇴구성원의 탈퇴를 동의하고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잔존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모두 이전받아 잔여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임

※(비교)

○ **일부구성원 중도 탈퇴의 경우 공동계약 해지 여부** (행정안전부, 2015.4.)

〈질의〉

○ 장기계속공사로서 2015년도 차수분에 대하여 계약체결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부도상태에 있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일부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변경 협의가 우선이라는 사유로 계약체결을 지연하고 있어 다른 구성원 연명으로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탈퇴 요구가 있는 경우 일부 구성원의 중도탈퇴가 가능한 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연대 책임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로 보아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총 공사를 분할하여 연차별로 이행할 것으로 약정한 계약이므로 발주기관에서 1차 공사 이후 차수계약 체결 통보를 받은 즉시 차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구성원의 중도탈퇴조치가 가능함.

○ **공동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행정안전부, 2018.8.)

〈질의〉

○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사 집행 중 주계약자 중도탈퇴 및 새로운 주계약자 선정 후 계약이행 중 지연배상금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의 주요 책임이 있는 前주계약에게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및 계약 보증금 세입조치 가능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넘겨서 공사를 완성한 경우라면 지체를 야기시키고 중도탈퇴한 구성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이는 공사준공 이전에 해당 구성원이 탈퇴하였더라도 준공지연을 야기시킨 책임이 해당 구성원에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함임
-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교체를 통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 세입조치는 어려울 것임

※(비교)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인정 범위** (행정안전부, 2015.10.)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사부분(건축공사)이 지연되어 부계약자 분담부분(기계설비공사)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요령 제2절 "3-나"에 따라 주계약자는 종합 조정·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고,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3-다"에 따라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의 분담 부분이 지연되어 다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라면 해당 공사의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금액은 해당 공사의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의 분담 부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동계약 탈퇴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 귀속** (행정안전부, 2017.6.)

〈질의〉

○ A시와 공동수급체(a사 전기, b사 전기, c사 소방)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방식

(분담이행)으로 과업을 수행하던 중 b사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b사의 지분을 새로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d사에서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동수급체로부터 중도 탈퇴한 사안에서 b사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A시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중도탈퇴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의 계약이 불이행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

※(비교)

○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 (행정안전부, 2014.11.)

〈질의〉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부계약자가 중도탈퇴한 경우 부계약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관리 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중도탈퇴 하였더라도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해당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수급체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구성원을 추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은 유지되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기준 (행정안전부, 2016.4.)

〈질의〉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지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타사의 보증금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대표사(B사)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현황 -

대표사(B사)는 소속 공제조합과 거래정지상태로 인해 전자보증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회생절차에 있어 보증금 현금 납부도 어려운 상황으로 공동수급체 다른 구성원인 C사의 계약이행보증서에 B사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보증서를 납부함.

〈답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4-가-1)"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

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종별 분담 이행하는 구성원별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합산하여 제출하면서 보증기관이 이를 보증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분담 부분에 대한 계약사 이행의무 및 책임한계,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구체적인 효력 등 보증 내용을 해당 보증기관에 확인하여 일괄납부도 가능할 것임.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범위 (행정안전부, 2016.3.)

〈질의〉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재정악화와 채권압류 등으로 인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5-가-1)"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 공동도급에 따른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4-가-1)"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해야 함.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일부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 하자 보증금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재정악화와 채권 압류 등으로 현금 또는 하자보증서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하자보증금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하자보증금에 대한 일괄납부가 가능함.

○ 공동계약의 최소지분율 위반의 경우 입찰무효 여부 (행정안전부, 2016.3.)

〈질의〉

○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혼합방식을 허용한 공사 입찰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 중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전체금액의 5% 미만인 경우에 최소지분율 위반으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찰무효인 경우라면 해당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는지 아니면 유효한 입찰로 보아 잔존구성원의 지분율을 새로이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0)-다)”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미만으로 구성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다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이 업종 출자비율(전체지분율이 아닌)의 5% 이상이라면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율 조정 기준 (행정안전부, 2015.4.)

〈질의〉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 없이 출자 비율을 조정하여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대표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8-가”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다른 구성원보다 적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계약담당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대표자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동수급체 입찰 참가 제한 (행정안전부, 2024. 12.)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 발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의 공동수급체 입찰 참가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서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공사에만 적용하여야 함

○ **주계약자의 공동수급체 탈퇴 후 주계약자 신규 선정 관련** (행정안전부, 2025. 5.)

〈질의〉

○ 주계약자가 계약이행 중 중도 탈퇴하여 새로운 주계약자 선정시 ① 최초 입찰공고시 지역제한을 한 경우 해당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② 당초 적격심사 평가에 따른 시공실적을 충족해야 하는지 ③ 판단 기준을 입찰공고일로 해야하는지 주계약자 변경시점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제3절 “7-다-5)”에서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 구성원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잔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주계약자가 탈퇴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① 입찰 공고시 지역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선정이 가능할 것이며, ② 입찰공고시 적격심사 시공실적 평가 기준이 아닌 잔여이행에 필요한 시공실적을 충족하면 될 것이고, ③ 주계약자 변경 현재일 기준으로 잔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8. 선금 및 대가 지급

○ **준공대가 지급 후 학술용역 경비 사후정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9.7.)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학술용역의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산출내역서 명시된 수질분석 등을 일부 미실시되어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정산한 후 준공처리 및 대가지급을 완료한 경우

- 계약서류 등에 사후정산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과업내용서에 따른 계약이행은 완료한 경우, 산출내역서상 미이행된 일부항목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은 타당한지 및 감액 정산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형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른 확정계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개산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사후원가조건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과업 내용 변경 없이 일부항목을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사", "2-다", "3-다"에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기한은 준공대가 지급 이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준공대가 지급 후 감액정산분의 청구 및 지급가능 여부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비교)

○ **확정계약 시 용역비 정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5.7.)

〈질의〉

○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용역에서 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에 별도로 정산한다는 조건 없이 용역업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일반관리비(주차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함.

○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의거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 한해 정산이 가능할 것임.

○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행정안전부, 2019.5.)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통학차량 임차용역계약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사후정산 시 해당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2-다-2)"에서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용근로자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는 확인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계약기간 1년 미만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안전부, 2015.9.)

〈질의〉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승계 없이 계약 체결된 신규 청소용역 건에 반영된 퇴직충당금 지급 가능 여부

* 계약서에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퇴직충당금을 지급할 것을 명기함.

〈답변〉

○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용역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예정가격 작성 시 퇴직충당금을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산출내역서(도급내역서) 상 퇴직충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서도 계약기간 1년 미만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금 반환 청구 시 이자 청구의 타당성 등** (행정안전부, 2025. 2.)

〈질의〉

1.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후 하수급자 선금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선금 반환 청구 시 선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2. 반환 예정인 선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기성대금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 1〕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5-가-1)'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 같은 절 '5-다-1)-다)'에서는 선금을 지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라면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 신청 시 제출한 사용계획에 하도급 부분의 배분 계획 없이 선금을 수령하고 선금 사용계획에 하도급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하수급자가 선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이 경우 선금잔액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신청내역 및 선금 수령 및 하도급계약 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질의 2〕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5-다-3)'에서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선금 반환 청구 시 선금잔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대금의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해당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함이 타당함

○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범위 (행정안전부, 2025. 10.)

〈질의〉

○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가 아닌 유도자, 신호수 등 경비 대상 근로자의 임금도 구분관리(청구내역을 제출 및 전용계좌로 지급) 가능한지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가, 9-나"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을 제출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노무비 구분관리는 직접노무비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직접노무비 외의 근로자도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6. 3.)

〈질의〉

○ 지방계약 집행특례 내용 중 선금 관련 “사용내역 제출 생략”은 의무 규정인지, 특례를 적용하여 사용내역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계약담당자가 선금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답변〉

○ 선금과 관련된 지방계약 집행 특례(’25.12.31. 종료)에서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 계약의 계약금액 및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는 재량행위로, 특례에 따라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이 확인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확인 결과 선금의 사용과 배분 등이 명시된 선금지급조건 을 위반한 경우는 지급한 선금을 반환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계약 변경

○ **조사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변경 방법** (행정안전부, 2016.7.)

〈질의〉

○ 지방공기업이 체결한 조사설계용역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비목 단가를 계약 당시 낙찰률보다 낮게 협의·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9항에 따라 제조 용역 등의 계약서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 시 설계서의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비목의 단가를 낙찰률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턴키공사에서 설계서 누락·오류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6.6.)

〈질의〉

○ 턴키공사(일괄입찰)에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가"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임.

○ 장기계속공사 미발주 차수분에 대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6.4.)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2차수 공사 준공 이후 택지예산 미확보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잔여 차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단 등 별다른 조치 없이 5년이 경과한 현재 잔여 차수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당초 계약상대자와 잔여 차수분 계약을 진행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입찰 등에 의하여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되,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는 계약방식으로 장기계속계약은 총 공사를 분할하여 연차별로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임.

○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으로 예산 미확보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잔여 차수분 공사에 대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잔여 차수분 계약에 대한 중단 또는 향후 발주할 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후 현재 차수분 공사에 대하여 발주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이 아닌 장기계속공사 계약으로 잔여 차수분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조정 관련 (행정안전부, 2024. 7.)

〈질의〉

1-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었으면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로 인해계약금액 조정 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더라도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품셈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 1-1.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7절 '1-가-1)-가)'에서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

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를 제외하고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계약단가로 하여야 함

〈질의 1-2. 답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7절 '1-가-2)'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적용단가(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협의된 단가가 표준시장단가인 경우에는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로 하여야 함

○ 통상임금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변경계약 (행정안전부, 2025. 12.)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기 대법원 판례에 의거 판결 선고일 이후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재산정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계약문서(산출내역서 등), 관련법령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0. 계약 이행지체,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 제한

○ **입찰 전 상호변경 등록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계약보증금 처리 및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0.9.)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전 상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입찰 무효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간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관한 질의

-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계약상대자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로 판단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나목에서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이나,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입찰 전 상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입찰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포기각서를 징구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관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 여부와 구체적 제한사유는 입찰자의 고의·위조·변조 등 사실 관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교)

○ **공동도급 계약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5.9.)

〈질의〉

○ 공동도급에서 분담사로 입찰에 참여한 설계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와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호에 따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나 기존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라면 그 입찰은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질의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처분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할 사항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 (행정안전부, 2020.8.)

〈질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구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 명의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의회 사무과장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부정당제재 처분이 가능할 것임

※(비교)

○ **조달청 의뢰 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 주체** (행정안전부, 2016.2.)

〈질의〉

○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처분 주체

〈답변〉

○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1항과 제1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며 조달청에게 처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타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사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0.8.)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정지기간 중 시공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로 보아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방계약법」은 입법취지와 목적, 적용범위 및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임

※(비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5.1.)

〈질의〉

○ 계약상대자인 A 건설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무면허 업체인 B 건설사에 일괄하도급을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과 「지방계약법령」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됨.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척기간 적용 여부** (행정안전부, 2019.8.)

〈질의〉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31조제6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담합, 뇌물의 경우 7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

○ 「지방계약법」 부칙(2018.12.24.) 제1조에 따르면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일지라도 처분 당시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과징금 부과시 금액 산정기준** (행정안전부, 2019.8.)

〈질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 과징금을 전체 계약금액과 하도급한 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 행위가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일부의 계약금액과 관련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안별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부정당제재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여부** (행정안전부, 2019.5.)

〈질의〉

○ 대표사와 분담이행사간에 계약이행에 관한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공동계약에서 대표사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잔여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 공동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제한 대상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심의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결과가 지방계약법령을 반하는 등 적정성·적법성을 벗어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재 처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경영난을 사유로 해당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2019.3.)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회생 인가 결정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정당한 이유'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계약의 내용, 진행상황, 계약상대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9.2.)

〈질의〉

○ 1) 자재승인을 받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시험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명시된 '계약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및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면, 이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고,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은 특정 공법시공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제품의 시험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1) 관련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에 관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나"에 따라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간 행한 통지문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도 계약문서에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시험보고서가 위 기준의 계약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 · 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반의 경중 및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계약의 목적·내용, 계약상대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2)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계약상대자, 입찰

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업체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부정당업자 제한 사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면 계약상대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가능함

○ 국세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8.11.)

〈질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계약상대자가 국세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2-나'에 계약문서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이행 완료단계의 주요 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2-나-15)'에서 정한 그 밖의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에 해당되므로 준공대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내용, 이행상황,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계약체결 시 존재한 위반사유를 계약 이행 완료 후 제거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사유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2018.11.)

〈질의〉

○ 계약체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를 위반하였으나, 계약 이행 완료 후 지분매각 등을 통하여 법 제33조를 위반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경우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의회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 중 또는 이행 완료 후 지분매각 등을 통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위반행위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당시의 위반행위까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지방계약법」 제33조의 규정은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당제재 처분 면제 또는 유예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8.2.)

〈질의〉

1) 청문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진술과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정당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의 시기를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예 : 1년)까지 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문 결과 부정당 제재처분 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을 경감할 수는 있을 것이나, 처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당 제재처분의 시기를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유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비교)

○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중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 (행정안전부, 2015.9.)

〈질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진행 절차에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중 먼저 수행해야 하는 절차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견적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청문절차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절차상으로 보아 청문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재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심의한 후 심의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았을 때 청문절차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포기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2017.8.)

〈질의〉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시 협상적격 1순위자는 입찰무효 처리하였고, 2순위자가 협상 전 "협상 포기서"를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가 곤란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로는 다른 협상적격자보다 최우선순위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협상이 성립되어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입찰절차를 통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 낙찰자의 지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가 어려울 것임

※(비교)

○ **발주자 요구로 적격심사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2014.6.)

〈질의〉

○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적격심사 전 입찰자 및 발주기관이 상호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안이 종료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에서 입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4절 "3"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시행령 규정 상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또는 예기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히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자의 점수가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에서 인지(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적격 통과 점수 미달을 확인한 경우)하고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을 요구하여 입찰자가 이에 따라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러한 경우 입찰자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하여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시 기납 부분 인정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17.3.)

〈질의〉

○ 일괄납품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물품 일부가 발주기관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물품 전체를 반려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에 통과한 잔여 물품을 발주기관에 단순 보관한 것을 물품의 기납 부분으로 보아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일괄납품 조건으로 납품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보관만 한 경우라면 그 일부에 대하여 검사 및 인수(또는 관리·사용) 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지연배상금 계산 시 물품의 기납 부분으로 보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계속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행정안전부, 2016.7.)

〈질의〉

○ 장기계속공사에서 시공 완료 후 시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 사고 책임이 없는 분담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5"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였으나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에게 지체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지체사유를 야기한 구성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행정안전부, 2015.6.)

〈질의〉

○ (질의 1)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제작설치를 위하여 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를 통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설계를 분담하는 구성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범위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자는?

○ (질의 2)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성실 시공을 담보할 수 없어 공사 중이나 준공 후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

○ (질의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계약에 있어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를 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임.

○ (질의 2)「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할 것임.

○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귀속 여부**
(행정안전부, 2025. 5.)

〈질의〉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의 폐업으로 중도탈퇴한 경우 해당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질의1),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지(질의2)

〈답변〉

〔질의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 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5항에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4절 "2-가-1)"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으로 실제 계약 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라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절 감사 지적사례

1. 입찰참가자격, 발주방법 결정

○ **음향기기 구매계약 부적정** (감사원, 2019)

〈사건개요〉

○ □□군에서 2009. 2. 25. 입찰공고하여 적격심사 등을 거쳐 2009. 3. 12. 관내에 있는 XXX주식회사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메인스피커 구입" 계약(금액: 74,250천원)을 맺고 같은 해 4. 24. 메인스피커 외 2종의 음향기기를 납품받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장의 규정에 따르면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Ⅳ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그리고 위 집행기준 제2장 Ⅲ. 2. 마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포함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사전 협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특정회사의 제품규격에 맞추어 규격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 특정회사의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다면 국내 공급사인 주식회사 YYY로부터 협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낙찰예정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메인스피커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XXX대표이사 ccc에게 동 업체가 취급하지도 않던주1) 음향스피커의 견적가격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위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가격(74,25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2009. 2. 25.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위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서 ZZZ사 스피커(모델명) 사양으로 규격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함

○ 또한 위 입찰공고에서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서도 사전에 ZZZ사 또는 ZZZ사의 국내 공급회사인 (주)YYY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낙찰예정자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업체가 ZZZ사 또는 (주)YYY와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포기함

○ 반면 5순위 업체였던 XXX도 (주)YYY와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주식회사와 (주)YYY간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위 관서에서는 2009. 3. 12. ☆☆☆☆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

○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감사원, 2018)

〈사건개요〉

○ □□시는 "ㄷㄴ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3. 4. 26. 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공고를 한 후 2013. 5. 24.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

○ 그리고 △△군은 "ㄷㄱ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 6. 5. 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공고를 한 후 2015. 6. 22.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는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는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하수관거정비공사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데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ㄷㄴ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와 "ㄷㄱ단지 조성사업"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할 때에는 지역제한 외에 실적 제한까지 하여서는 아니 되고,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감사원, 2020)

〈사건개요〉

○ □□군은 "ㄷㅌ 농어촌도로 ㄷㅍ호선 차선 도색공사" 등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노면표지용 페인트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 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구매예산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 위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군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1억 원 이상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다수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함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군은 10건의 공사에 소요되는 160,729,890원 어치(관급자재대)의 노면표지용 페인트 구매 의뢰를 받고도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채 기준금액인 1억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매 시기를 분할하여 2018. 6. 11. 주식회사 ◔◔로부터 7건의 공사분 98,012,080원 그리고 다음 날인 같은 해 6. 12. 주식회사 ⊠⊠으로부터 나머지 3건의 공사분

62,717,810원의 노면표지용 페인트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그대로 구매함으로써 2단계경쟁으로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받아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잃게 됨

○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방법 (SLA) 적용

(서울시 감사위원회, 2013)

〈감사결과 요지〉

○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계약방법을 자체 제도로 시행하여 특혜시비 우려

〈세부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용역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시설관리 용역 등 10개 용역사업(총 217억 원)을 추진하면서 용역기간 동안 수행실적을 3회 평가 후 평균 85점 이상 평가를 받은 용역업체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제도를 법적근거도 없이 추진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우려되고
- 평가지표 설계에서도 객관성, 공정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도 용역업체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

○ 동일구조물 공사 분리발주 (감사원, 2015)

〈감사결과 요지〉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분할하여 공사를 진행

〈세부내용〉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 서울시에서는 기초, 교각, 거더, 상판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동일 구조물 공사에 해당하는 도림교 확장공사를 2012.6.1. 기초 및 교각 등(포장 및 난간공사 포함)은 △△과 '도림교 확장공사' 계약을 맺어 2014.4.30. 준공하였고, 거더 및 상판은 2013.1.8. □□과 수의계약을 맺어 2013.8.31. 준공하는 등 동일구조물인 도림교 확장공사를 구조별로 분할하여 계약 및 준공하였음

○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서울시 감사위원회, 2014)

〈감사결과 요지〉

○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공종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세부내용〉

○ 전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에도

- SH공사에서는 2011.3.23.~2014.3.31.까지 「2011년 강남권역 시설물 보수공사」

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총 21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공사의 공종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등록되어 있던 계약상대자(▲▲▲ 외 31개 업체)에게 통합발주하여
- 그 결과 전기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의 우려를 발생시키고 전기공사의 품질을 저하시켰음

○ **입찰참가자격(실적) 없는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감사원, 2015)

〈감사결과 요지〉

○ '2014년 서부지사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의 사실여부를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기관에 문의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시공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 업무 처리

〈세부내용〉

○ 공사의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실적심사기관은 실적내용에 모순·오류·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SH공사에서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공사의 시공실적이 얼마인지 사실 관계를 조회하지 않은 채 2014.6.3. 공종이 복합된 위 시공실적증명서 2건의 전체 시공실적 595,432천 원을 각각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공사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하여 □□이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위 2건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점검 결과 □□이 수행한 전체 시공실적은 각각 329,719천 원과 265,713천 원이나 이 중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공사 시공실적은 각각 약 72,110천 원과 약 75,099천 원에 불과하여 단일공사로서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공사 2억 원 이상의 실적으로 되어 있는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그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업체가 위 설치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2. 입찰 및 개찰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행정안전부, 2017)

〈감사결과 요지〉

○ 사설전자입찰로 공고하는 등 입찰공고 방법 부적정

〈사건개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시 소재 사회복지재단에서는 동 법인 산하 요양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지정정보처리장치 (G2B)에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사설전자입찰전문 업체에서 운영하는 http://○○○.○○○.○○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2개 업체만 응찰

○ 이와 같이 동 공사의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 법령에 어긋나게 입찰 공고를 함으로써 동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입찰 및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또한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2호)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多 추첨된 4개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 그런데 위 법인은 기초금액을 근거로 사설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함으로써 2개 입찰참가업체 중 ㈜○○○○건설에 낙찰 하한율을 훨씬 상회하는 99.68%에 낙찰결정함으로써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될 수 있는 낙찰 예정가 87.745%보다 최대 약 12%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공원시설 내 편익시설 위탁계약관련 규정 불합리** (감사원, 2012)

〈감사결과 요지〉

○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일반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여 지방재정에 손실 초래

〈세부내용〉

○ 「지방계약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치단체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중 전문성 등을 요하는 공사나 물품·용역계약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서울특별시에서는 '10.7월 도시공원 내 매점 등 수익시설의 위탁 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 서울숲공원 편의점 등 14개 편익시설('10년~'11년)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 그 결과 최고가 낙찰방법 대비 744백여만 원 상당의 수익 기회를 상실
- 또한 실적, 경영상태 및 제안서 작성 등에 있어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한 개인사업자의 낙

찰 비율이 조례 개정 후 크게 감소(78% → 27%)

○ **국외공급 용역 입찰공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
(서울시 감사위원회, 2014)

〈감사결과 요지〉

○ 국외 공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공고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여 예산 낭비

〈세부내용〉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12년부터 '14년까지 해외에서 개최한 총 4건의 국외 게임수출 상담회, 게임퍼블리싱 현장운영 용역에 대해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공고하고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한 용역수행비 지급을 요청한 데 대해 이를 전부 인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17,322,727원을 과다 지출하는 결과 초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한다는 내용 누락한 채 시설공사 입찰공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2012)

〈감사결과 요지〉

○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설사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입찰공고 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업체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 낭비

〈세부내용〉

○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설사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공사업체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함에도

- □□□본부에서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서울지하철 ○호선 2단계 ▲▲▲공구 및 ▼▼▼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입찰설명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된다는 내용을 누락한 상태로 2008.3.27.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여,
- ▲▲▲공구 공사업체에 6회에 걸쳐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337백만 원을, ▼▼▼공구 공사업체에게도 같은 이유로 7회에 걸쳐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190백만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527백만 원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 **낙찰 후 계약 미체결한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처리 미실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2013)

〈감사결과 요지〉

○ 낙찰자가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수입조치 하여야 함

에도 이를 불이행

〈세부내용〉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당해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 등은 수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서울의료원에서는 위생재료 구매계약(낙찰자 70,326천 원) 입찰 건의 낙찰자인 ㈜□□□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입찰포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공고상 면제되었던 입찰보증금(3,516,310원)을 납부하도록 낙찰업체에 지시하지 않는 등
- '10년부터 '13년 감사일 현재까지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에 대해 총 5건, 3,902,950원의 입찰보증금을 귀속조치하지 않았음

3. 적격심사

○ 시설공사 계약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업무 처리 부적정 (감사원, 2020)

〈사건개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그리고 선순위 낙찰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위 18건의 시설공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공사업 면허, 시공실적 등)하여 입찰 공고

○ 따라서 위 본부에서 위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일정 순위 업체까지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에 따라 순서대로 평가하되 부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

○ 그런데 위 본부에서는 위 시설공사의 입찰결과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후 적격심사대상 업체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139개 업체는 "입찰 공고된 참가 자격·실적에 미달하거나 미등록 업체라는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 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14개 업체는 "자체평가 결과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이라는 등의 사유로 단지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만을 제출하자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그리고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청하지 않고 이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등 적격심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

○ 그 결과 18건의 시설공사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공사 계약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선순위 업체로서 적격심사 포기서 등을 제출한 153개 업체(●●●●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포기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9개 업체 포함)가 부도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서만을 제출하였는데도 규정에 따라 업체를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입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5개 업체는 2, 3차례 반복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실정임

○ 특히 공사 실적 등이 없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2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복수예정가격을 추첨한 후 적격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정당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낙찰자가 변경될 수 있는 등 공정한 경쟁 입찰의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고 정당한 입찰업체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 결과를 초래

4. 수의계약

○ **협잡물 제거장치 구매·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감사원, 2015)

〈감사결과 요지〉

○ □□시에서 "εε처리장 협잡물 제거장치 구매·설치" 계약을 2012. 3. 8.부터 2013. 12. 26.까지 4회에 걸쳐 협잡물 제거장치 구매·설치 계약을 주식회사 δδ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직접 체결하거나 ○○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체결되도록 함

〈사건개요〉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한편, δδ은 협잡물 제거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의 경우도 δδ의 제품과 유사한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 위 제품에 대한 대용·대체가 가능

○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협잡물 제거장치 구매·설치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지방조달청에 의뢰할 때에는 시방서에 위 특허사항을 그대로 포함시키지 않고 필요로 하는 기능만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계약을 하여야 했음

○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특허제품에 대한 대용·대체품 유무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2. 3. 8.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3회에 걸쳐 위 특허를 보유한 δδ과 "εε처리장 협잡물 제거장치 구매·설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2013. 11. 19. ○○지방조달청에 "◎◎펌프장 협잡물 제거장치 구매·설치" 계약을 의뢰하면서도 시방서의 제품규격에 위 특허등록번호와 특허내용 일부를 포함하고 수의계약 사유서에 해당 특허제품 외에 대용·대체품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같은 해 12. 26. δδ과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함

○ 그 결과 특정업체가 경쟁입찰 절차 없이 위 4건의 계약을 수주하게 되었고 같은 물품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박탈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게 함

○ **지방의회의원 관련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감사원, 2019)

〈사건개요〉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와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위 관서들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관련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점검한 결과 □□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3항"과 같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관련 사업자와 32차례에 걸쳐 공사 및 물품 구매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감사원, 2017)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사건개요〉

○ □□시가 2013. 1. 1.부터 2016. 6. 30.까지 2,000만 원 이하라는 사유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내용을 확인한 결과, "ㄴ 배수로 정비공사"와 "ㄷ 배수로 정비공사"는 U형 개거 설치 등 공사내용이 유사하고 공사기간(2013. 3. 12.~4. 30.)이 같아 통합발주를 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 그런데 위 관서 관하 ◇읍은 2013. 3. 8. 현장사정을 잘 알고 검증된 업체라는 등의 사유로 ◕◕로부터 위 2개 공사의 견적서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같은 날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계약금액 1,463만여 원, 계약금액 1,357만여 원)으로 체결

○ 이를 비롯하여 위 관서는 계약체결일이 같고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가 가능한 16건의 공사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37건의 공사로 분할한 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 등 13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

○ 그 결과 다수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기회 상실

○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감사원, 2017)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발굴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낙찰자로 하여금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도록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건개요〉

○ 그런데 ○○군은 "△△(영화루)복원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위한 조사기관을 선정하면서 임의로 재단법인 □□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게 하였고, 이후 발굴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발굴허가를 받은 기관이 위 기관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건의 발굴조사용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그 결과 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였고,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

○ **중소기업자가 건설신기술 지정 받은 지 3년 경과하였음에도 수의계약 체결** (감사원, 2015)

〈감사결과 요지〉

○ 중소기업자가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직접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시방서에 규정된 신기술의 설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

〈세부내용〉

○ 중소기업자가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직접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없고, 수의계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성, 준공검사 시 시방서에 규정된 신기술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가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CFT거더에 대해 CFT거더 신기술 지정일이 '09.4.10으로 3년이 경과하였고, □□□이 직접 해당물품을 생산하지 않아 수의계약할 수 없음에도 □□□과 '13.1.8 '도림교 확장공사 CFT 거더 제작 및 설치'를 위법하게 수의계약(계약금액 1,171백만 원)하였을 뿐 아니라
- '13.3.27과 '13.5.7 기성검사 등을 위해 □□□ 공장방문 시 ▲▲▲가 CFT거더를 일괄 제작·납품·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과 계약해지 등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등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함

5.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데도 계약보증금 각서로 대체** (서울시 감사위원회, 2014)

〈감사결과 요지〉

○ 용역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업체로부터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받아야 하나, 용역업체의 현금지급각서로 대체

〈세부내용〉

○ SH공사에서는 27개 단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업체로부터 총 계약금액의 15%를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받아야 함에도

- '11.9.1~'15.8.31 기간 동안 □□□ 아파트 등 27개 단지(총 계약금액 : 3,821백만원)의 '공동주택 관리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업체에게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고,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572백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겠다는 현금지급각서만 제출받음

6. 선금 및 대가 지급

○ **국제농식품박람회 용역계약 정산 및 관리·감독 불철저** (감사원, 2015)

〈사건개요〉

○ 2014년 박람회 "업무추진 협약서"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르면 행사 대행업체가 정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위 관서의 정산검사 결과 통보에 의하여 정산이 완료되며, 위 관서에서 정산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20일 이내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위 업체에 정산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14년 ○○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를 대행한 주식회사 ▣▣와 ◆◆에서는 박람회와 관련하여 설치한 전시장텐트의 경우 조성물량은 12,650㎡로 계약물량인 13,250㎡에 미달하는데도 정산요청 내역에 23,700㎡로 잘못 기재하고 계약물량에는 없는 연결통로도 9개소 설치한 것으로 정산요청하는 등 조성한 물량과 다르게 정산요청 물량을 기재한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5. 2. 16. 위 업체가 제출한 정산서를 최종 정산결과인 것처럼 그대로 시의회에 제출

○ 그 결과 정산요청 물량과 실제 조성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산물량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공익 감사 청구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위 정산서가 제출된 후 5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6. 26.까지도 정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감액대상에 해당하는 미이행 물량 및 승인없이 설치한 물량에 상당하는 금액 계 111,148천 원이 정산시 반영되지 못하여 과다지급될 우려

○ **선금 지급한도 초과 및 정산 부적정**
(서울시 감사위원회, 2014)

〈감사결과 요지〉

○ 용역에 있어 선금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할 수 있고, 용역업체가 선금을 사용한 이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허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

〈세부내용〉

○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1.10.3 계약금액 24,998천 원에 ■■■과 '2011년 정신보건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은 계약금액의 70% 까지만 지급할 수 있음에도 '11.11.7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 계약업체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에 계약업체가 허위로 제출한 숙박비 및 세미나실 임대료 3,190천 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선금을 집행 및 관리하였음

7. 계약 변경

○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설계변경계약 부적정** (감사원, 2017)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별관의 추가 4개 공사는 북쪽 별관이 남쪽 별관과 50m 이상 떨어져 있어 기존 4개 공사의 일부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고, 북쪽 별관의 4개 추가공사 중 건축·기계설비, 통신, 전기공사는 도급액이 각각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방공사의 경우 도급액이 3,700만여 원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했음

〈사건개요〉

○ 위 관서는 2015. 2. 23. 공사변경 내용이 당초의 공사 규모나 내용 등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북쪽 별관에 대한 4개의 추가공사에 대해 기존 4개 공사를 시공하던 ▨▨ 등 4개 업체로 하여금 각각 설계변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청사 증축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고 그대로 결재하였으며, 와 같이 같은 해 2. 24.부터 같은 해 3. 17.까지 기존 4개 공사를 진행하던 ▨▨ 등 4개 업체와 각각 북쪽 별관에 대한 4개의 추가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

○ 그 결과 각각 새로 입찰에 부치거나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하여야 할 북쪽 별관 4개의 추가공사를 설계변경계약을 통해 기존의 4개 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 하는 특혜 제공

8. 계약 이행지체,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 제한

○ 제3자 뇌물공여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소홀 (행정안전부, 2018)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상기 공무원이 위법한 사실을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징계 요구 등을 조치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또는 징계 등의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체 없이 회계부서에 통보하여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업체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야 했음

〈사건개요〉

○ 위 관서에서는 검찰 처분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징계 의결요구서 및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에 따르면 ○○○는 2013. 7. 5.부터 도로과장을 시작으로 징계 처분일 기준(2017. 9. 13.)까지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관련자인 ㈜○○○○○○○으로부터 2차례 걸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주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경조금을 수수한 사실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징계(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11,500천원)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에게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 및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검토 및 조치를 하지 않았음

○ 공사계약 기간 부당 연장하여 지연배상금 미징수 (감사원, 2015)

〈감사결과 요지〉

○ 서울보증보험 속초생활연수원 신축 공사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연장에 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연장 처리하여 지연배상금 미징수

〈세부내용〉

○ 공사가 지연될 경우 면책되는 지연사유를 제외하고 준공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에 부과하여야 함에도

- ◆◆이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도급공사 계약기간 연장요청' 공문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공사도급일반조건」 제14조제3항에 따른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기상 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면책되는 지연 사유가 아님에도 2차례 걸쳐 59일, 31일 연장하였고
- 그 결과 ◆◆에 준공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음

제3절 자주하는 계약 질문

1. 사업발주

○ 사전규격 공개 방법?

- 발주부서별로 발급받은 나라장터 인증서로 나라장터(www.g2b.go.kr) 로그인 〉 (상단) 용역, 물품 〉 (좌측) 입찰공고 〉 사전규격관리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게시 (5일)

○ 사전규격 공개 대상 금액?

- 용역, 물품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입니다. (부가세 포함 5천5백만원)

○ 이호조 지출품의는 언제 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지출품의를 해야하고, 금액은 배정예산 (부가세 포함한 금액) 을 등재하면 됨.

○ 내년도 사업을 올 연말에 미리 발주할 수 있는지?

- 유지보수 등 성질상 중단이 불가한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발주할 수 있음.

○ 재무과로 계약 의뢰 시 협조결재(재정합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계약의뢰 공문을 기안시 '계약의 종류(공사·용역·물품), 금액'에 따라 재무과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속한 팀의 팀장(계약1·2팀) 협조를 받으면 됨.
  - ▸공사 : 10억 이상 과장·팀장, 10억 미만 팀장
    용역 : 5억 이상 과장·팀장, 5억 미만 팀장
    물품 : 2억 이상 과장·팀장, 2억 미만 미만 팀장
- 또한 녹색제품 구매심사를 위해 금액에 관계없이 기후환경정책과(기후환경산업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함.

○ 용역사업은 얼마 이상부터 계약심사(원가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2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심사과의 원가심사를 받아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 계상이 가능한지?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

○ 발주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의 거래실례가격은 업체의 견적서를 의미하는지?

- 거래실례가격은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한 세금계산서 또는 납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견적서와는 다릅니다. 견적서는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대급부로 수령할 희망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

○ 재공고 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도 되는지?

- 변경 불가하며 변경하는 경우 신규공고가 됨.

○ 공사 현장설명 참가자만 투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야 하나, 그 미만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만 투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할 수 없음.

3. 제한경쟁

○ 용역, 물품제조의 경우 실적제한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 재정경제부 고시금액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용역, 물품제조의 경우에만 실적제한 가능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규모와 금액으로 이중 제한 가능한지?

- 이중 제한은 불가함.

○ 실적제한시 입찰업체의 최근 몇 년간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의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와 계약하려는 경우, 업체의 직접생산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직접생산증명서 필요
- 경쟁입찰 : 금액에 상관 없이 직접생산증명서 필요
- 수의계약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필요

※ 참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는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 정보조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부쳐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나 추정가격 2.3억원 미만의 용역,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하여야 함.

○ 서울시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인접 시도(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음.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4. 협상계약

○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 서울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 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본청, 사업소의 공무원은 위촉 불가. (자치구는 기관이 다르므로 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외 기준을 위원별로 하는 게 맞는지, 항목별로 하는 게 맞는지?

- 위원별 정성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면 됨.
  다만, 필요 시 항목별로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항목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여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입찰가격평가분야 20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면 됨.
  단,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량 20, 정성 70, 가격 10으로도 가능)

○ 제안서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 위원회 개최 후 행안부 예규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5. 수의계약

○ 여성기업과 5천 5백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 가능함. 장애인기업,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도 5천 5백만원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 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시 과업의 조건 등을 변경 가능한지?

- 불가함

○ 수의계약시 반드시 일정비율을 네고해야 하는지?

- 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사 10%, 용역·물품 5% 내외로 네고가 가능하나, 원가심사 결과, 예산 편성액 등을 고려하여 그보다 적게 네고하는 것도 가능함.

6. 공동계약

○ **공동도급시 계약보증서는 업체들이 각자 분할 납부해야 하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게 원칙이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 가능

○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입찰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구성원이 모두 실적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는지?**

-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면 입찰 참가 가능

○ **공동계약 체결 후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안 됨.

○ **공동도급시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5인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 규정 준수해야 하는지?**

- 예외적으로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의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이 가능.
  또한 최소지분율 규정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공동도급의 경우 대가 각각 지급하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7. 계약체결

○ **서면으로 계약 체결 가능한지?**

-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

○ **계약보증증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지급각서로 갈음 가능

○ **계약체결시 인지세 부과 대상은?**

- 계약금액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계약

○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계약상대자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여야 계약이 가능

8.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은 업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지급?**

-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됨.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선금사용계획서'를 검토한 후 하단에 서명하면 됨.
  (선금서류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재무과로 직접 함)

○ **선금은 최대 몇 %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능

○ **공사의 경우 노무비에 대해 선금 지급이 불가한지?**

-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선금 정산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 영수증,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이체증 등을 확인하면 됨

○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대가에서 지연배상금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 가능한지? 지연배상금과 대가가 상계 처리 가능한지?**

- 지연배상금과 대가 지급은 상계 처리 가능합니다.

○ **대가지급 소요 기간**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면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준공기한까지 아래의 서류를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함
  1. 준공신고서
  2. 대가청구서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 만약 기존에 선금이 지급되었다면, 발주부서에서 업체의 선금사용내역을 정산한 후 정산 결과 (선금사용확인서) 를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함.

○ **계약보증금은 대금과 상계처리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은 대금과 상계처리되지 않음.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등)는 상계처리 가능.

○ 과업 도중에 기성금(부분준공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업체-재무과) (부분)준공신고서 제출
2. (재무과-발주부서) 검사원지정요구서 송부
3. (발주부서) 14일 이내 검수
4. (발주부서-재무과) 기성(준공)검사(수)조서 송부
5. (업체-재무과)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6. (재무과) 5일 이내 대가지급

9. 계약일반

○ 추정금액과 추정가격은 무슨 차이인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금액
  추정가격 =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 서울시 분임재무관이 누구인지?

- 재무관은 재무국장, 분임재무관은 재무과장

○ 이호조에서 계약현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 이호조 〉 계약관리 〉 결산관리 〉 계약현황 〉 계약맞춤형조회에서 계약현황을 확인 가능

10. 계약변경

○ 변경계약 시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송부해야 하는 서류는?

- (필 수) 계약변경에 대한 방침서, 합의각서
  (필요시) 변경된 과업지시서, 변경된 산출내역서,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되어야 함.

○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담당자가 업체로부터 징구해야 하는 서류는?

- 계약금액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된 경우, 계약보증서와 선금보증서를 징구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됨. (선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보증서만 징구)

11. 계약 후속조치

○ **계약체결 후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지?**

- 모든 공사, 용역, 물품계약정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다만, 서울시(본청, 사업소, 자치구)의 경우 이호조에서 관리하는 계약현황이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자동으로 공개하고 있음.

○ **발주부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후속 절차는?**

1. 계약보증금 반환
2.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지급 (14일 이내)
3. 전체 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지급
4. 지급된 선금 중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받기 (이자는 가산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가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한지?**

-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지 해제가 가능

○ **물품도 하자담보기간이 있나요?**

- 납품 후 1년

○ **용역계약도 하자담보 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지?**

- 일반, 기술용역 : 없음 (단 사업담당자가 계약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
- 학술용역 : 1년
-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은 없음)

12. 부정당업자

○ **계약업체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해야 하는지?**

- 해당 업체가 현재는 폐업 상태이지만 향후 영업 재개를 할 수도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법인의 대표자 및 그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력이 미치므로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있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에게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과징금 제도는 계약상대자 등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동시에 할 수 없음.

○ **업체가 계약 미이행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1. 제재사유(계약 미이행) 발생

2. (심의요청부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3. (심의요청부서)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4. (심의요청부서)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위원회는 월 1회 재무과에서 개최)
5.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제재의 적정성 및 제재 기간 심의)
6. (재무과) 심의요청부서로 심의 결과 통지
7. (심의요청부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재 시작 시점 정하여 부정당업자에 제재 통보
8. (심의요청부서) 직접 G2B 게재 후 재무과로 결과 통보(시장 직인 날인하여 통지)

부 록 편

순 서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제3절 용어 정리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1) 발급 개요

(1) 발급 주체

- 해당 사업담당자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해당부서의 사업담당자가 발급해주어야 함 (서울시 조직도 참고)

(2) 발급 방법

① (전자) 서울계약마당시스템(http://contract.seoul.go.kr)

② (수기) 민원인이 공사(시설·전기)·용역·물품 실적증명서 작성 및 방문·확인
→ 전자발급방법이 원칙임

2) 처리 절차

(1) 전자발급

계약마당 사이트 접속하여 업체 인증서 등록 후 실적증명 신청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① 계약마당 〉 실적증명 〉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② 실적목록에서 신청건명 선택 및 실적 신청 ③ 조직도 참고하여 현 담당부서, 담당자 선택
↓	
사업담당자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	사업담당자는 ① 행정포털 민원사항 알림 〉 계약마당 접속 ② 실적증명 신청목록에서 해당 건 선택 ③ 승인 / 반려 / 담당자변경 중 선택
↓	
실적증명 신청에 대한 승인문자 수신 확인	사업담당자가 승인하면 계약담당자 문자(SMS) 알림
↓	
실적증명서 발급	계약상대자는 ① 계약마당 〉 실적증명 〉 발급목록 〉 출력하러가기 ② 서울시 홈페이지로 화면 전환 〉 실적증명민원 〉 민원신청 〉 신청하기 〉 수수료납부 〉 발급

※ 실적증명 신청·발급 상세 매뉴얼은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 참고

(2) 수기발급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실적증명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계약상대자의 신청 ①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접속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 검색창에 '실적증명서' 검색 ② 실적증명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단,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법정서식에 작성)
↓	
사업담당자 방문	계약상대자는 사업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적 확인
↓	
실적증명서 확인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확인
↓	
직인 날인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적증명서에 직인을 받도록 민원실 안내(본청의 경우 신청사 1층)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1. 서식 확인

1) 행정포털 (서울시 본청·사업소 직원)

- 접속방식 : 정보공유 - 계약 - 계약 관련 서식 모음

2)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

- 주 소 : http://contract.seoul.go.kr
- 접속방식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2. 서식 목차

계약 의뢰 시 공통서식	계약 체결 시 공통서식
· 산출기초조사서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용)
·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계약 의뢰 시 (1인견적 수의계약)	·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 기안문	· 착수(착공)신고서
· 수의계약 사유서	**선금 지급 시 공통서식**
· 수의계약 각서	· 선금신청서, 각서, 선금사용계획서 등
계약 의뢰 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변경계약 의뢰 시 공통서식**
· 기안문	· 합의각서
계약 의뢰 시 (적격심사)	·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 기안문	**선금 및 대가지급 시 공통서식**
· 긴급공고 사유서	· 준공신고서
· 제한, 지명경쟁 사유서	· 부분준공신고서
계약 의뢰 시 (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검사원
· 기안문	· 검사원지정요구서
· 긴급공고 사유서 (상동)	· 준공검수조서
· 제한, 지명경쟁 사유서 (상동)	· 대가청구서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결과	**기타서식**
· 협상가격서, 협상입찰조서	· 공동계약이행협정서
· 제안서평가위원 등록신청서, 보안각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서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홈페이지 게시)	

※ 제2장 제6절 계약 맞춤형 매뉴얼 참고하여 서식 구비

〈산출기초 조사서〉

산 출 기 초 조 사 서

계약건명 :

계약금액 : *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출기초근거		산 출 가 격	
				A업체	B업체	단 가	금 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20 . .

조사자 : (인)

확인자 :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00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 위 공사(용역, 물품)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취업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 . . .

서울특별시 (분임) 재무관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발주부서) □□ 과장 ○○○ (서명 또는 날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발주부서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건 명					
부 서 명		작 성 자		연 락 처	
제출일자	년 월 일				

연번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 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산 항목 외에 사업비 전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산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표면상 경쟁계약으로 발주했으나,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상에 소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한 내용은 없는가?	Y/N □□

※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 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 (해당 유무에 √표시)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뢰 기안문 샘플 : 1인 견적 수의계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 용역 수의계약 의뢰**

1. 재무과-000(2024.3.4.)호*(사업시행방침서 문서번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00 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 용역

나. 소요예산 : 금15,000,000원(금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라.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 유 :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이하 소액이며, 00 관련 용역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많아 우리시 시정 이해도가 높은 업체 선정

마. 업 체 명 : ㈜□□□

- 주 소 : 서울시 중구 △△로
- 담당자 : 김서울 (010-0000-0000)

바. 예산과목

사. e-호조 지출품의번호 : 00번

붙임 1. 사업시행 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 1부.
4. 수의계약 사유서 1부.
5.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등. 끝.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협조자　계약2팀장

시행　재무과-20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부분공개(6)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 예산	
계약 업체	
수의계약 근거	
수의계약 사유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 공무원(퇴직 직전 2년 이내 발주 실·국·본부·사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2년간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및 행정포털 e-인사마당에서 확인
유착비리 적발업체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가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서울계약마당 공개일로부터 2년간) : ☐ **확인**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서 확인
동일업체 계약확인	○ **확인사항** 1.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연 10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확인** 2. 계약상대자에게 우리시와의 수의계약 체결 횟수 확인 : ☐ **확인** – 예외적으로 연간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및 시 전체 10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 (http://contract.seoul.go.kr) 〉 계약정보 〉 조회.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각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의뢰 기안문 샘플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의뢰**

1. 총무과-000(2017.3.4.)호*(사업시행방침서 문서번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00 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자공개 수의계약 체결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 공사

나. 소요예산 : 금53,000,000원(금오천삼백만원) (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전자공개) 수의계약

마. 견적서 제출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바. 예산과목

사. e-호조 지출품의번호 : 00번

붙임 1. 사업시행 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 1부.
4.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끝.

〈계약의뢰 기안문 샘플 : 적격심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 공사 계약 의뢰**

---

1. 총무과-000(2024.3.4.)호*(사업시행방침서 문서번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00 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 공사

나. 소요예산 : 금580,000,000원(금오억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마.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사. 예산과목

아. e-호조 지출품의번호 : 00번

붙임 1. 사업시행 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 1부.
4. 제한입찰 사유서 1부.
5.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긴급공고 사유서〉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 용역*	
소요예산	*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본 사업은 최초 입찰공고가 단독응찰로 1회 유찰되어 재공고하는 건으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유찰로 인해 사업 시행 기간이 촉박하여 긴급공고로 진행하고자 함*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제한경쟁 사유서〉

제한경쟁 사유서

계약건명	*계약백서 디자인 용역*	
소요예산	*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제한경쟁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참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 요구되는 용역·물품제조	
	2. 기술보유상황 -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물품제조	
	3.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4. 지역 -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종합공사,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 기술 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3.5억원 미만 일반용역·물품	V
	5. 설비 :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부	
	7. 물품납품능력 :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 받은 물품	
	8. 중소기업자 - 추정가격 2.3억 미만 1억 이상인 물품·용역 -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9. 소기업·소상공인 : 추정가격 1억 미만인 물품·용역	
	10.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직접 기재)	
제한경쟁 사 유	*서울 지역에 소재한 업체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실시*	
실적제한시 제한범위	○ **실적인정기간 : 최근 ___ 년 이내** - 최근 10년 이내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 ○ **실적인정기준 : 규모·양, 금액 명시** - 사업 규모의 1/3 이내(금액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사유 기재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제한경쟁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지명경쟁 사유서〉

지명경쟁 사유서

계약건명	*계약백서 디자인 용역*	
소요예산	*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지명경쟁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참고	1.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	V
	2. 추정가격 3억원 이하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기타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용역,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물품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 매입	
	4. 예정임차료의 연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 임차	
	5. 제1호~제4호 규정 외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지명경쟁 사 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입찰 가능 업체가 10인 이내이므로 지명경쟁 실시*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지명경쟁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의뢰 기안문 샘플 : 협상에 의한 계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 용역 계약 의뢰**

---

1. 재무과-000(2017.3.4.)호*(사업시행방침서 문서번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 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 용역
나. 소요예산 : 금280,000,000원(금이억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사. 예산과목
아. e-호조 지출품의번호 : 00번

붙임 1. 사업시행 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등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빙 1부.
5.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결과

계약건명	*계약백서 디자인 용역*
소요예산	*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구 분		㈜서울사랑 (123-45-67890)	아이서울유 (234-56-78900)	희망서울(주) (345-67-89000)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소 계 (80)			
입찰가격평가	평점 (20)			
	입찰가격	원	원	원
종합평점 (100)				
협상대상자 순위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기술협상 결과 1부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협상가격서〉

협 상 가 격 서

건　　명	
협상금액	*금4,200,000원(금사백이십만원) / 부가세 포함*
준공기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협상하며, 이 협상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과업내용 및 지침) 및 현장설명사항 등에 따라 위 협상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협상가격서를 제출합니다.

20 . .

협상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협상입찰조서〉

협 상 입 찰 조 서

건 명			
입찰일시	20 . . ( )		
협상대상 1순위자	성 명	제 안 가 격 (기 준 가 격)	비 고
			협상대상 1순위자

○ 추 정 금 액 : 금25,000,000원

○ 기 준 가 격 : 금25,000,000원 (추정금액대비 100%)

○ **협 상 가 격 : 금24,250,000원** (기준가격대비 97%)

※ 낙찰율(추정금액대비 협상가격) : 97%

위와 같이 낙찰되었기에 계약체결 하고자 합니다.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table>
<tr><th colspan="8">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th></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전문분야</td><td></td></tr>
<tr><td rowspan="2">자 택</td><td>주 소</td><td colspan="6">(우편번호)</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직 장</td><td>직 장 명</td><td colspan="2"></td><td>직위(직급)</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우편번호)</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팩스번호</td><td colspan="3"></td></tr>
<tr><td>e-mail</td><td colspan="6"></td></tr>
<tr><td></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학력사항</td><td>취득년월</td><td colspan="2">학 교</td><td>학 위</td><td colspan="3">전 공</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경력사항</td><td>근무기간</td><td colspan="2">근 무 처</td><td>직 위</td><td colspan="3">주요업무</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자격증
보유현황</td><td>취득년월</td><td colspan="2">자 격 증 명</td><td>인가 · 관리기관</td><td colspan="3">비 고</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r>
<tr><td>저서 및
논문</td><td colspan="7"></td></tr>
<tr><td>그 밖의
사항</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td></tr>
</table>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과장(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 홈페이지 게시용〉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계약건명								
위 원 명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F위원	G위원	....
소 속								

평가위원	평가부문*	입찰참가 업체			비고
		1업체	2업체	...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F위원					
G위원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

○ **계 약 건 명 : ○○ 용역**
○ **계 약 금 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 **계약보증금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 **계 약 일 자 : 2024. 5. 6**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31 까지**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이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귀 시가 납부지시하는 기일까지 어김없이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인)
대 표 자 :
주 소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착수(착공)신고서〉

착수(착공)신고서 · 공정표 · 현장대리인신고서

○ 착수(착공)신고

계 약 명 :

계약금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착공일자 : 20　　년　　월　　일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 공 정 표

공 정 별	수 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비고
			월				월				월				월				

○ 현장대리인 신고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면허기술증별 :

첨　　부 : 이력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 · 수행공정표 · 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감독 확인	
소　속	
직　급	
성　명	㊞

위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선금신청 제반 서류〉

상 호 명

우편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재무과장

선람			지시		
접수	일시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선금 신청서

본인과 귀 시와 체결한 다음 공사(용역,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계 약 명 :
나. 계 약 기 간 : 20 . . . ~ 20 . . .
다. 계 약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라. 선금신청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계약금액의 %

붙임 1. 각서 1부
2. 선금보증서 1부
3. 선금지급신청서 1부
4. 선금사용계획서 1부
5. 청구서 1부
6. 통장계좌 사본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각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선금신청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1. 수령한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해당 증빙자류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귀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2.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으며(단,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3. 선금을 지급한 이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각각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귀 기관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전적으로 따르겠으며, 특히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말미암은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겠으며, 만약 본인이 선금 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5.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선금보증서를 통하여 선금환수절차가 진행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발주기관의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상기 내용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선금 및 대가지급의 규정을 준수하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습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선금지급 신청서

1. 계약현황

계약번호	계 약 명	수량	계약금액	기 한
			₩	

2. 선금 지급 신청내역

선금 신청액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비 고
₩		

3. 선금 지급 신청사유

본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서울시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선금 사용 계획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3. 선금신청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구 분	공 종	단 위	수 량	단 가	계 약 금 액	선금신청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발주부서 감독 확인 : 000 과 (인)

하도급사 선금 지급 계획서

공사명	*00 도로 확장 공사*			
원도급사	*00건설사*			
계약금액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계약기간	*2017.00.00.~ 2017.00.00*			
선급금액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하도급사 지급계획	하도급사	공종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사 선금 지급 금액
	합계			
	00건설 (대표 : 000) (3708-1111)	*철근*		
	00건설 (대표 : 000) (3709-1112)	*포장*		

상기 계약상대자(원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변경계약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1. 계약건명 :
2. 계약업체 :
3. 계약금액 : *금20,000,000원정(금이천만원)*
4. 계약연월일 :
5. 계약기간 :
6. 변경사항

계약금액	당 초	*금20,000,000원정(금이천만원)*
	변경후	*금23,000,000원정(금이천삼만원)*
	증·감액	*금3,000,000원정(금삼백만원)*
계약기간	당 초	2024.1.1.~2024.4.30
	변경후	2024.1.1.~2024.5.10

본 계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약기간(금액)을 변경하여 계약내용과 같이 무위 준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관과 경유	
소 속	
직 급	
성 명	

계약상대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주 소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약건명

   나. 계약업체

   다. 계약금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라. 계약년월일

   마. 착공년월일

   바. 준공기한

2. 위 공사(용역, 물품)의 준공(납품)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다. 지체상금 부과여부(부과, 미부과)

   라. 연기사유

첨부 : 연기사유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부분)준공신고서〉

(부 분) 준 공 신 고 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3. (부분)준공금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4. 계 약 일 자 : . . .
5. 착 공 일 자 : . . .
6. 준 공 기 한 : . . .
7. (부분)준공일자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현 장 감 독 공 무 원 경 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납품검사원〉

납 품 검 사 원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3. 납 품 금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4. 계 약 일 자 : . . .
5. 납 품 기 한 : . . .
6. 납 품 일 자 : . . .
7. 납 품 장 소

위와 같이 납품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현 장 감 독 공 무 원 경 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검사원지정요구서〉

검 사 원 지 정 요 구 서

담 당 자 명 :

계 약 명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준 공 금 액 : 금 원정 (₩ -)

계 약 일 자 : 20 . . .

준 공 기 한 : 20 . . .

준 공 일 자 :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공사(용역)에 대하여 귀 기관 소속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검사하신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검사조서 제출기한 : 20 . . .

※ 준공검사조서는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전자결재→결재→기안(전체서식)에서 양식 선택 후 작성

20 . .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준공(기성)검사조서〉

준 공 검 사 조 서

문서번호	재무과-@N
수 신 자	내부결재
접수번호	

결재			

공 사 명			
계 약 자			
계약금액	금 원정	준공금액	금 원정
계약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검사일자	년 월 일	참고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검 사 자 과 직 성명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물품검사조서〉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⑤계약체결년월일	20 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	20 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	20 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	20 년 월 일			
⑨검사(수) 장 소				
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등록 □ , 미등록 □)			물 품 출 납 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분임물품 출 납 원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 규격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대가청구서〉

대 가 청 구 서

건　　명 :

청구금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계좌)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통 장 명 의	

20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지출담당공무원　　귀하

위 청구서의 입금정보 등에 대한 SMS(문자정보)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핸드폰 번호 :

※ 제공하신 핸드폰번호는 대금입금 안내 자료로 사용합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

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5">청문실시</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부서명</td><td>담당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일시</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시간)</td><td>장소</td><td></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td></tr>
<tr><td>성명</td><td colspan="4"></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서〉

서 울 특 별 시

수 신: 계약업체명

제 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1. 귀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재대상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계약내용	계 약 명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제재내용	제 재 원 인	예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 재 근 거	예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8호 가목		
	제 재 기 간	. . . ~ . . .(00개월)		

20 . . .

서울특별시장 직인

기안자 (직위)(성명)	검토자 (직위)(성명)	결재권자 (직위)(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2026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발 행 일	2026년 5월 27일 개정판 발행
제 작	재 무 국 장 박 경 환 재 무 과 장 최 선 혜 계 약 총 괄 팀 장 심 동 길 주 무 관 김 대 현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 의 처	02-2133-3265, 3223
인 쇄 처	새론앞길 02-6213-2777
I S B N	979-11-7177-705-1 13350

〈비 매 품〉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본 책자의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